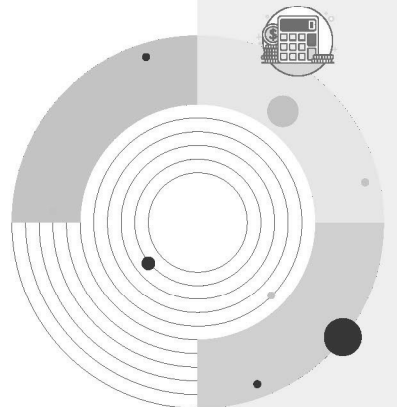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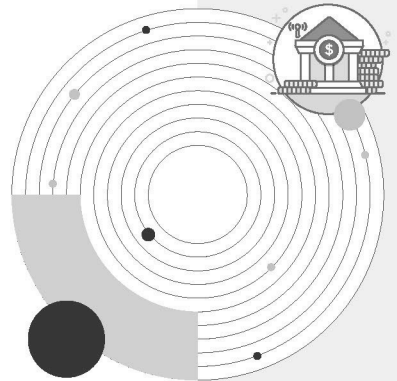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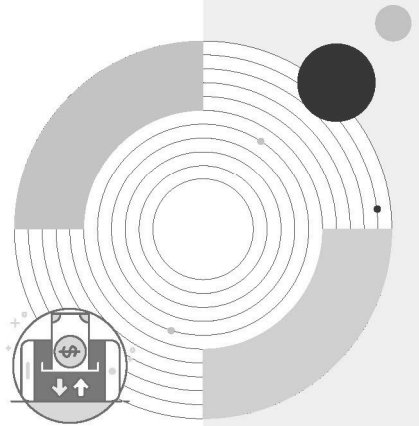


2017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재정통계는 국가의 예산, 집행, 결산 등 다양한 국가의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로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정통계 매뉴얼(GFSM) 등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정부의 자산부채 및 재정수지 등 각종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분석의 기초 제공 및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9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GFSM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해 왔으며, 국제적 수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1년에는 발생주의 회계 등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1회계연도부터 GFSM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2012회계연도부터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해서 국제기구(IMF, OECD)에 제출하고, 재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정부와 함께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제공 및 지속적인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1회계연도부터 GFSM 2001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 개편작업과 새로운 국제기준인 PSDS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부채통계를 산출하는 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또한 산출결과를 분석하여 재정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처음 산출한 2011회계연도 이후 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재정통계 산출과정의 투명성과 재정통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 GFS 및 PSD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우리나라 발생주의 재정통계의 도입경과와 GFSM 2001, PSDS 체계에 대한 해설 및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각종 재정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이 국민, 국회,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이 정부재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 [차례]

<b>제1부</b>	<b>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소개</b>	
제1장	GFS 및 PSDS의 개념 및 의의	3
제2장	우리나라의 도입경과	14
제3장	재정통계 포괄범위	43
<b>제2부</b>	<b>GFS 체계 및 구성항목</b>	
제1장	GFS 체계와 회계규칙	57
제2장	GFS 연차보고서	64
<b>제3부</b>	<b>PSDS 체계 및 구성항목</b>	
제1장	PSDS 체계와 회계규칙	91
제2장	PSDS 연차보고서	101
<b>제4부</b>	<b>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b>	
제1장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109
제2장	공공부문 부채통계 분석	117
<b>부록</b>		
부록1	계정과목 해설	125
부록2	재정통계 Q & A	154
부록3	2016년 공공부문 포괄범위 산정 결과	161
부록4	GFSM 1986과 GFSM 2001 비교	166
부록5	공공부문 부채통계 보고서	172

## [표차례]

표 1-1	■ GFSM 개정 과정	7
표 1-2	■ 주요 재정지표 항목	9
표 1-3	■ 총부채와 순부채	12
표 1-4	■ 부채의 유형별 분류	12
표 1-5	■ 정부와 한국은행 재정통계 산출비교	17
표 1-6	■ 일반정부 재정통계 추진과정	18
표 1-7	■ 공공부문 부채통계 추진 과정	25
표 1-8	■ 2016년 GFS 및 PSDS 포괄범위	53
표 2-1	■ 13종의 연차보고서	64
표 2-2	■ 재정상태표	69
표 2-3	■ 정부운영표	73
표 2-4	■ 거래의 경제유량표	78
표 2-5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79
표 2-6	■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명세	80
표 2-7	■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명세	82
표 3-1	■ PSDS 부채의 분류	91
표 3-2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지급보증 규모	100
표 3-3	■ 회계기준 차이(예시)	100
표 4-1	■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109
표 4-2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총수입	110
표 4-3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총지출	112
표 4-4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수지	113
표 4-5	■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115
표 4-6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자산과 부채	115
표 4-7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117
표 4-8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계정별 현황	118
표 4-9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119
표 4-10	■ 중앙정부 부문별 부채	120
표 4-11	■ 지방정부 부문별 부채	121

## [그림차례]

그림 1-1	국제기구별 국제통계기준	3
그림 1-2	주요 통계기준 제·개정 현황	5
그림 1-3	국제통계매뉴얼 포괄범위 비교	6
그림 1-4	GFS 체계	8
그림 1-5	GFS상 부채와 PSDS상 총부채 관계	11
그림 1-6	우리나라 도입경과	15
그림 1-7	국제통계매뉴얼 주요 차이	17
그림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34
그림 1-9	GFS 재정통계 공시현황	36
그림 1-10	열린재정 공시현황	37
그림 1-11	PSDS 공시현황	38
그림 1-12	국민경제의 제도단위	44
그림 1-13	공공부문과 다른 제도부문과의 관계	45
그림 1-14	공공부문 Decision Tree	46
그림 1-15	일반정부 포괄범위 판단 과정	52
그림 1-16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포괄범위	53
그림 1-17	GFS 포괄범위 및 대륙별 balance sheet 작성현황	54
그림 2-1	유량과 저량의 결합	57
그림 2-2	연차보고서의 연계구조	66
그림 2-3	GFS 주요 산출 보고서	68
그림 2-4	재정통계 산출체계	87
그림 2-5	Balance sheet 작성 변화	88
그림 3-1	GFS상 부채와 PSDS상 부채의 비교	92
그림 3-2	총부채와 순부채	94
그림 3-3	거시경제 통계상 부채 및 우발부채	99
그림 3-4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102
그림 3-5	OECD 제출현황 2015 General government debt	105

그림 4-1	■ 중앙정부 조세수입	110
그림 4-2	■ 지방정부 조세수입	111
그림 4-3	■ 2015년 총수입의 국제비교	111
그림 4-4	■ 2015년 총지출의 국제비교	113
그림 4-5	■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순융자·차입) 추이변화	114
그림 4-6	■ OECD 국가별 재정수지	114
그림 4-7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별 자산·부채	116
그림 4-8	■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주요국 현황	118
그림 4-9	■ D1의 현황 및 추세분석	119
그림 4-10	■ D2의 현황 및 추세분석	120
그림 4-11	■ D3의 현황 및 추세분석	121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  
제  
1  
부  
•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소개

제1장 | GFS 및 PSDS의 개념 및 의의

제2장 | 우리나라의 도입경과

제3장 | 재정통계 포괄범위



## 제1절 재정통계와 국제통계기준

### 1. 재정통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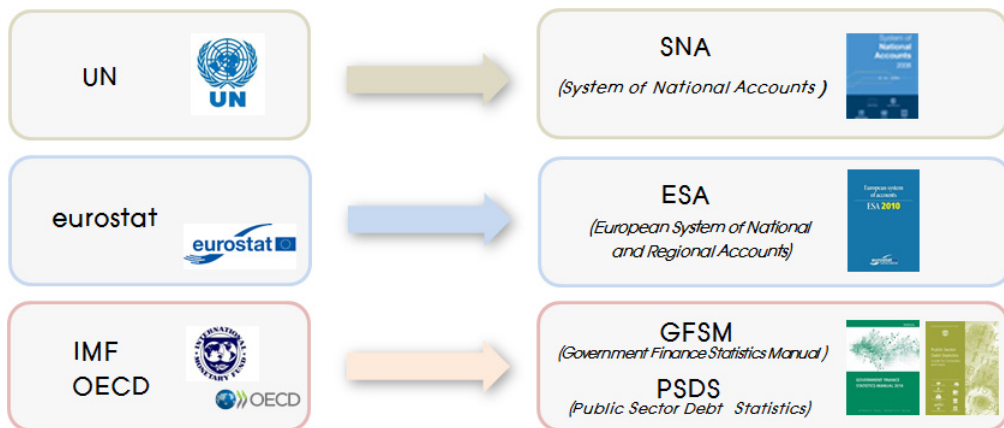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는 예산, 집행, 결산, 회계, 국가채무, 재정수지, 국고보조금, 성과평가 등 정부의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다양한 재정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재정통계를 공시하고 있다.

본 책자에서 주로 다루는 재정통계는 국제통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재정통계를 의미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정통계 작성 및 공시를 통해 국제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부문을 다루는 국제통계기준은 SNA 2008,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작성기준을 준수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다.

### 2. 국제통계기준의 소개

그림 1-1 | 국제기구별 국제통계기준



국제통계기준은 국제기구별로 통계작성대상 및 통계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에 발맞춰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여러 국제통계기준 간 동일한 개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SNA 2008

국제통계기준 중 SNA 2008(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은 본 책자에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으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매뉴얼로 1953년에 최초로 마련되어 1968년, 1993년, 2008년에 주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 낸 경제활동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국민계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흐름을 측정하고,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 및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SNA 2008에 따라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조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OECD 국민계정에 공시되고 있다.

### ② ESA 2010

SNA와 더불어 주요 국제통계기준 중 하나인 ESA 2010(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2010)은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 EU국가들이 SNA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통계작성기준으로 1970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95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 ③ GFSM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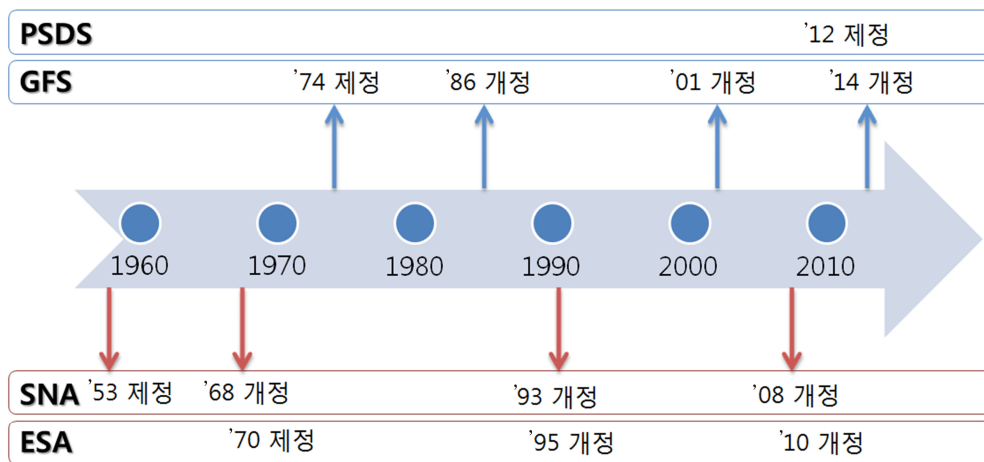
국제통계기준 중 정부의 재정통계를 다루고 있는 GFSM 2001은 일반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GFS 체계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지침으로 IMF에서 제정하였다.

④ PSDS

마지막으로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을 위한 지침서로, 부채상환능력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채정보 산출 및 국제비교를 위해 IMF, OECD 등 9개<sup>1)</sup> 국제기구에서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통계기준은 최초 발간 이후에 경제상황의 변화 및 산출된 통계 정보의 활용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적 협의를 거쳐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림 1-2 | 주요 통계기준 제·개정 현황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신 국제통계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재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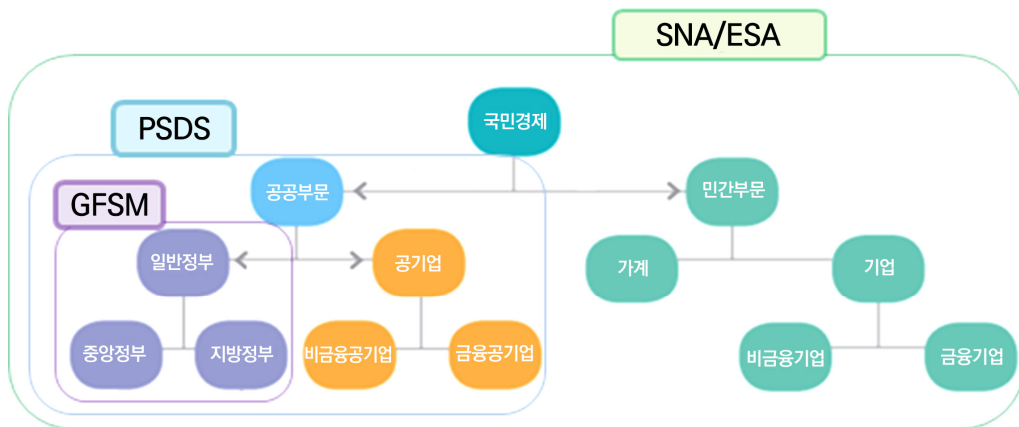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국제통계기준 중 SNA 2008, GFSM 2001, PSDS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SNA 2008에 따라 국민계정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GFSM 2001과 PSDS에 따른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다.

1)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BIS(국제결제은행), ECB(유럽중앙은행), Eurostat(유럽통계청), 영국연방 사무국, 파리클럽 사무국

본 책자에서는 국제통계기준 중 GFSM 2001과 PSDS에 대해 주로 다루려고 한다.

다음의 <그림 1-3>은 SNA 2008과 GFSM 2001 및 PSDS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 포괄범위 차이를 도식화한 그림으로, SNA 2008은 가장 넓은 범위의 통계를 다루고 있으며, 각 국제통계기준은 작성범위의 차이뿐 아니라 통계작성 목적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문이 상이하다.

그림 1-3 | 국제통계매뉴얼 포괄범위 비교



## 제2절 GFS 및 PSDS의 개요

### 1. GFS의 소개

#### (1)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이란?

GFSM(재정통계편람)이란 국제통화기금(IMF<sup>2)</sup>)에서 제정한 국제통계지침서로 재정통계 작성자 및 재정분석가, 기타 재정자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2) IMF의 통계부(Statistics Department of the IMF)는 통계의 방법론과 지침 개발 및 회원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GFSM 2001의 개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

비영리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GFSM에 따라 통합한 광의의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FS 체계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제공하여 일반정부부문의 재정운영·재정상태·유동성의 변화를 정책결정자와 정책분석가들이 종합적으로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1974년 IMF에서 최초로 GFSM을 제정한 이후 재정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개정(1986년, 2001년, 2014년)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GFSM 2001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GFS)를 산출하고 있다.

표 1-1 | GFSM 개정 과정

시기	GFSM(재정통계편람)
1974- 최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F에서 1974년에 재정통계편람 초안 출간</li> </ul>
1986-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년에 재정통계매뉴얼(GFSM 1986)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받아 재정분석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계작성지침 확립</li> <li>- IMF 회원국들에게 매년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li> </ul> </li> <li>■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임</li> <li>- 회원국 간의 국제적 비교 가능</li> </ul> </li> </ul>
2001-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통계 전면 개편으로 발생주의 기준의 GFS 체계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분석 목적에 부합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거시경제통계지침들과도 부합되도록 작성</li> <li>- 재정통계의 작성과 보고를 위해 발생주의로 기록된 모든 저량과 유량을 완벽하게 통합한 체제 도입</li> </ul> </li> <li>■ 우리나라는 현재 GFSM 2001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제출하고 있음</li> </ul>
2014-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7월 GFSM 2001 개정판인 GFSM 2014가 마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GFSM 2014 도입효과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li> </ul> </li> </ul>

## (2) GFSM 2001의 주요 특징

### 1) 발생주의

GFSM 2001은 모든 자원의 흐름이 통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제적 사건을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변환·이전·소멸될 때 이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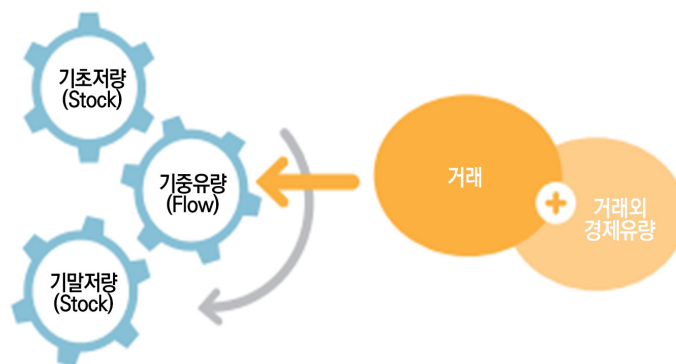
### 2)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대상은 일반정부이다. 일반정부에는 정부기능(소득과부의 재분배, 비시장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모든 실체가 포함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까지 정부범위에 포함된다. 참고로, 국가 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정부의 범위는 대부분 일반정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3) GFS 체계 - 유량과 저장

본 지침은 발생주의하에서 모든 저장과 유량을 재무제표에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량은 거래 및 거래의 경제유량으로 구분되어 기초(期初) 저장과 기말(期末) 저장의 변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초 저장에서 기중(期中) 유량을 반영하면 기말 저장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1-4 | GFS 체계



### 4) GFS 보고서

GFSM 2001에서 산출되는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거래의 경제 유량표’, ‘재정상태표’를 들 수 있다.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현금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외 경제 유량표’는 시장가격변동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 5) 다양한 재정지표

또한, GFSM 2001은 다양한 재정지표를 제공하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금주의에 기반한 GFSM 1986에서는 재정수지가 단순히 흑자인지 적자인지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GFSM 2001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수지와 자산, 부채 등 저량(stock)통계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표가 마련되었다.

GFSM 2001의 주요 재정지표와 산출식은 다음 <표 1-2>와 같다.

순운영수지는 정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격변동 및 기타 내용변화를 제외한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순운영수지는 정부가 정책집행 등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래에 따른 정부운영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순용자/순차입은 정부가 경제 내 다른 부문에 대해 금융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금융자원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정부활동이 경제 내 다른 부문에 미치는 금융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용자/순차입은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국제비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정수지 지표이기도 하다.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에서는 현금흑자/현금적자가 제시된다. 이는 정부운영과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수지를 나타낸다.

표 1-2 | 주요 재정지표 항목

주요 재정지표		산출식
유량 (Flow)	순운영수지	= 수익 - 비용
	순용자/순차입	= 순운영수지 -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 금융자산의 순취득 - 부채의 순부담
	현금흑자/현금적자	= 정부운영에 따른 현금 순유입 - 비금융자산 순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저량 (Stock)	부채	= 부채는 다른 단위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의무
	순부	= 총자산 - 부채
	순금융자산	= 총금융자산 - 부채
	총확정부채	= 총부채 - 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금융상품

## 2. PSDS의 소개

### (1)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란?

PSDS란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측정 및 표시를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MF, OECD 등 9개 국제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이하 PSDS)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채무지불능력 및 유동성위험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통계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2년 국제기구에서 PSDS를 발간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작성범위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2) PSDS의 주요 특징

#### 1) 채무상품

GFSM이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PSDS는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부채와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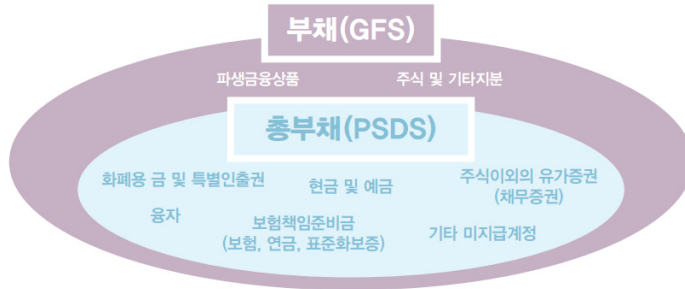


####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이란

미래 특정 시점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청구권(financial claim)을 의미함

PSDS에서는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GFSM상의 부채(liabilities)에서 주식 및 기타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주식매입선택권을 제외한 모든 부채(debt liabilities)가 포함된다. 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금융상품 등은 원금 혹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림 1-5 | GFS상 부채와 PSDS상 총부채 관계



## 2) 발생주의

PSDS의 주요 원칙은 GFSM 2001, SNA 2008 등 다른 거시경제 통계 매뉴얼과 대부분 동일하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고 있다.

## 3) 포괄범위

GFS 작성범위인 일반정부보다 확대된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해당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공공부문은 GFSM 2001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추가한 범위에 해당한다.

PSDS에서는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기 때문에, 포괄범위 안의 내부거래는 제거하여 작성한다.

## 4) 총부채와 순부채

PSDS에서는 총부채(Total Gross Debt Liabilities)와 순부채(Net Debt Liabilities)를 주요 지표로 하며,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총부채는 향후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불상환능력 및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총부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나타낸다.

순부채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총부채와 함께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재정지표이다. 예를 들어 부채 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순부채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부채에서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표 1-3 | 총부채와 순부채

총부채(A)	금융자산(B)	순부채(A-B)
특별인출권	특별인출권	
현금및예금	현금및예금	
채무증권	채무증권	
융자	융자	
보험연금표준화보증	보험연금표준화보증	
기타미지급금	기타미수금	

5) PSDS 보고서

공공부문의 부채정보를 세분화하여 보여주는 PSDS의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상품유형별로 총부채와 순부채의 명목가치와 시장가치를 보여주는 총부채와 순부채 요약표를 들 수 있다.

PSDS에서는 총부채와 순부채의 명목가치와 시장가치를 상품유형뿐 아니라,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유형별, 채권자의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험관리 목적의 다양한 재정분석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4 | 부채의 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고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		
	현금및예금(Currency and deposits)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융자(Loans)		
	보험·연금·표준화보증(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기타미수/미지급 (Other accounts payable/receivable)		
만기별	원만기별	단기	유동성 위험 파악 가능
		장기	
	잔존만기별	단기	
		장기	
표시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성 파악 가능	
	외화표시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 판단 가능	
	변동이자율		

대분류	중분류	비고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	대외 경제여건에 따른 위험도 추정 가능
	국외 채권자	
비망항목	우발부채, 정부보증채무 등	

또한 명시적 우발부채나 국민연금충당부채, 정부보증채무 등 실제 부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채정보에 대하여는 비망항목(memorandum items)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제2장 우리나라의 도입경과

### 제1절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경과

#### 1.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의 도입경과

우리나라는 1977년 5월에 IMF 조사단이 내한하여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함에 따라, 1979년 9월에 1970년부터 소급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IMF에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재정통계지침이 1차 개정된 이후에는 GFSM 1986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2011년까지 IMF에 제출해 왔다.

하지만 GFSM 1986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통계로 발생주의와 비교하여 비화폐성 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국가채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롭게 개정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산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2011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재정통계를 GFSM 2001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GFSM 2001을 기반으로 하는 GFS 일반정부재정통계를 산출하게 되었다.

#### 2.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의 도입경과

GFSM 2001의 도입에 이어 2012년 2월 WB, OECD, IMF 등 국제기구가 연합하여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에 대한 국제지침인 PSDS를 발표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적, 대외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의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일반정부에서 부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4년 2월 최초로 2011·2012회계연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였다.

최근에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 새로운 통계방법론의 개발 등에 따라 IMF에서는 GFSM 2001의 개정판인 GFSM 2014를 2015년 7월에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GFSM 2014

도입 준비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연구하고 있고 GFSM 2014에 따른 통계 산출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림 1-6 | 우리나라 도입경과

시 기	국제통계지침	시 기	우리나라 재정통계
1974	GFSM1974 제정	1979	IMF의 권고에 따라 GFSM 1974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및 제출
1986	GFSM1986 (1차 개정)	2012	IMF 직후 GFSM 1986(현금주의)에 따라 재정통계 작성 및 제출
2001	GFSM2001 (2차 개정) 발생주의 적용	2012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GFSM 2001(발생주의) 기준의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산출
2012	PSDS 제정 (공공부문/ 채무상품)	2014	PSDS에 따라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및 OECD 제출
2015		GFSM2014 (3차 개정)	GFSM 2001에 따라 '12회계연도 일반 정부 재정수지 작성 및 IMF 제출

## 제2절 GFSM 2001 도입에 따른 재정통계 개편

### 1. GFSM 2001 개편 이전의 문제점 및 개편효과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편은 GFSM 1986에서 GFSM 2001로 전환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GFSM 2001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연합(UN)의 SNA 1993, SNA 2008, 유럽연합(EU)의 ESA기준 그리고 주요국의 적용사례를 보조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효과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국제기준에 부합한 정부 포괄범위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 시 정부의 포괄범위가 최신의 국제기준과 달라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GFSM 1986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재정통계 작성대상으로 하는데 동 지침에서는 정부기능 수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정부기능 수행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GFSM 1986에 따라 국가채무 산정 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을 포괄범위로 하였고, 재정수지 산정 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포괄범위로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괄범위로 하여 국가채무를 산정하였고, 2005회계연도부터 재정수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함하여 재정통계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작성하는 재정통계의 포괄범위가 최신의 국제기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작성대상이 달라서 일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GFSM 2001에서는 SNA 1993의 분류기준을 수용하여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포괄범위가 설정되며, 일반정부부문은 정부단위 및 정부단위가 통제하고 주로 자금을 제공하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SNA에서 제시하는 시장성기준<sup>3)</sup>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도 일반정부의 포괄범위에 포함되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2)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

GFSM 1986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된 미래 지출부담액을 국가채무(debt)로 정의하며 지급시기 또는 지급금액이 불확실한 미확정채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확정채무만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GFSM 1986에 따라 산출된 재정정보는 현금주의이며, 포괄범위가 국제적 기준과 상이하여 해외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며, 재정상태와 재정수지를 연계할 수 없어 체계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GFSM 2001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발생주의의 도입이다. 발생주의는 채무(debt)보다 확장된 부채(liability)의 개념을 사용하며, 기존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의 등 발생주의 항목과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등이 부채에 포함되며,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거래도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3) 시장성기준이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즉 생산자의 판매가격이 생산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SNA 2008 및 ESA 2010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판매가격이 다년간 평균 생산원가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수준으로 판단함. 구체적인 공공부문 포괄범위 판단과정은 '제3장 재정통계 포괄범위' 참고

그림 1-7 | 국제통계매뉴얼 주요 차이

구분	GFSM 1986	GFSM 2001
제정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MF 제출)	IMF(국제통화기금) (IMF 제출)
명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1986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작성목적	정부의 재정운영, 재정상태 등에 대한 통계 제공	정부의 재정운영, 재정상태 등에 대한 통계 제공
포괄범위	일반정부(정부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위)	일반정부(정부단위 및 정부가 통제하는 비영리공공기관)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유량과 저장	유량과 저량을 결합해서 제시하지 못함	회계기간 초의 저장과 회계기간 중의 유량을 결합하여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계산

### (3)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부범위 일치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SNA 1993에 따른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등에 근거하여 정부 포괄범위를 결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계정의 정부부문통계와 정부에서 GFSM 1986에 따라 작성하는 재정통계(GFS)의 정부 포괄범위 산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재정통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GFSM 2001 도입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재정통계의 포괄범위가 일치되어 대내외적으로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표 1-5 | 정부와 한국은행 재정통계 산출비교

구분	정부	한국은행
■ 작성기준	GFSM 2001, PSDS	SNA 2008
■ 정부범위	일반정부	일반정부
■ 자료	발생주의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 공공기관의 경우 재무제표 등
■ 발표	잠정치	-
	확정치	다음해 3월
■ 배포 방식	다음해 12월(공공부문 부채)	다다음해 3월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배포 및 IMF, OECD 제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및 OECD 제출

## 2. 추진과정

2004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의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예산 및 회계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재정시스템 구축이 진행되는 한편, 2006년 정부의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재정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인 GFSM 2001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GFSM 2001에 따른 재정통계 개편작업은 2008년 재정통계 개편 민관합동 작업반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원가보상률 산출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었고, 재정통계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 재정통계자문위원회, 실무TF 등을 거쳐 2012년 12월 마침내 GFSM 2001에 따른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가 공표되었다.

표 1-6 | 일반정부 재정통계 추진과정

연혁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추진과정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통계 개편 <b>민관합동 작업반 구성 및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통계 개편 TF 구성('08. 11월~)</li> </ul> </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조세연구원('09. 7월~12월)</li> <li>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개국과 IMF, OECD, EU 출장조사 실시</li> </ul> </li> <li>OECD 회의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보고기관의 총부채 및 순부채를 규정하기 위한 "OECD Expert Meeting" ('09.10월 5일, Paris)</li> <li>재외공관 등을 통한 해외사례 파악</li> </ul> </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원가보상률 산출</b> 용역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10. 7월~12월)</li> </ul> </li> </ul>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통계 개편안 <b>공청회 개최</b>('11. 1월)</li> <li>재정통계 개편안 <b>국무회의 통과</b>('11. 9월)</li> <li>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b>공공기관 설명회</b>('11. 9월)</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b>재정통계 작성 설명회</b> 개최('12.3월)</li> <li><b>재정통계자문위원회 구성</b> 및 '11년 기준 <b>일반정부 포괄범위 확정</b>('12.4월)</li> <li>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 각각 산출 후 통합('12. 5월~11월)</li> <li><b>일반정부 부채 산출 및 공표</b>('12.12월)</li> </ul>

## (1) 재정통계 개편 토대마련

2004년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예산·회계정보 통합 운영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고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정혁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6년 4월 중앙일보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정부 재정규모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기사를 내며 정부 재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GFSM 2001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GFSM 2001 도입 결정 후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008년 11월 재정통계 개편 민관합동작업반을 구성<sup>4)</sup>하였으며, 총 15차례에 걸친 TF를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기준과 정부 포괄범위 설정 방안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정통계 산출 작업에 필요한 해외조사, 연구 및 국제회의 등을 추진하였는데,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파악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개국과 IMF, OECD, EU로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정부 보고기관의 총부채 및 순부채를 규정하기 위한 OECD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 되었다.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GFSM 2001, SNA 2008, ESA 1995 등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가보상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4)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고국장,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연구원, KDI 등으로 구성

## (2)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산출

### 1) 재정통계 개편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2011년 1월)

#### 〈공청회 개요〉

- 개최일시: 2011년 1월 26일(수) 15:00~18:00
- 주제: 재정통계 개편안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사회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발표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토론자:
  - 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
  - 김명기 국장(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김유찬 원장(경실련 재정세제위원, 홍익대교수)
  - 배상근 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 심상복 위원(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
  - 이주석 국장(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 정남기 위원(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홍동호 국장(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황성현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GFSM 1986 기준에 따라 작성해오던 재정통계를 GFSM 2001로 개편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2011년 1월에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GFSM 1986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기되어오던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최신 국제기준 및 선진국 사례에 발맞추기 위한 재정통계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통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기준상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항목이 포함된 것이며, 또 다른 효과로는 정부의 회계·기금뿐 아니라 일반정부 기준으로 정부포괄범위가 설정되어 비영리 공공기관도 정부포괄범위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기하기로 하고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정부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국제기준에서 내부거래를 재정통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도 내부거래로 보아 제외하되, 제외시킨 금액은 부기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2)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2011년 9월)

####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설명회 개요〉

- 개최일시: 2011년 9월 22일(목)
- 장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하 1층 국제회의실(서울 양재동)
- 참석대상: 재정통계 작성 범위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재무공시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행정안전부·교육부 재정통계 담당자, 한국은행 정부통계 담당자, 국가회계기준센터 정부재정통계 담당자 등
- 목적: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공공기관도 재정통계 작성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작성방식에 대한 교육 수행

재정통계 개편으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산출함에 따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공공기관도 재정통계 작성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해당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팀장이 재정통계 개편 배경 및 방향과 GFSM 2001의 기본 개념 및 구조,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이어 삼일회계법인에서 통계 작성 주기 및 자료 제출 방법 등 작성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 3) 공공기관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최(2012년 3월)

####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개요〉

- 개최일시: 2012년 3월 22일(목)
- 장소: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지하 대강당
- 참석대상: 재정통계 작성 범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재정통계 담당자
- 목적: GFSM 2001 재정통계 작성 방식에 대한 교육

2012년 3월에는 재정통계 개편으로 통계 작성범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재정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통계 작성방식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원가보상률 산정 용역을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서 원가보상률 산정기준 및 업종별 적용 방법, 적용 시 유의사항, 2011년 기준 시장성테스트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어 삼일회계법인에서 GFSM 2001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통계 산출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4) 재정통계자문위원회 구성(2012년 4월)

재정통계자문위원회는 재정통계 산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및 민간(한국은행, KDI, 조세연, 대학교수 등)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1차 회의(2012년 4월)

####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1차 회의〉

- 개최일시: 2012년 4월 12일(목) 15:00~17:00
- 장소: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604호)
- 참석자: 정부\* 및 민간위원\*\*(회의주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예산총괄심의관(대참),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대참), 통계청 경제통계국장(대참)
  -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김경호(홍익대), 원윤희(서울시립대), 박형수(조세연), 김동수(삼일회계법인), 최대규(성도회계법인)

2012년 4월 열린 재정통계자문위원회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원가보상률 산출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정사업본부 특별회계와 기금 중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일반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부의 회계·기금을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의 포괄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원가보상률과 상관없이 일반정부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일반정부 포괄범위 산정주기를 한국은행의 통계 산출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년 개편과 동일하게 5년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2011년 기준 일반정부 포괄범위가 확정되었다.

## 5) 일반정부 재정통계 작성 실무 TF 구성(2012년 6월~)

**〈일반정부 재정통계 작성 실무 TF 회의〉**

- 개최일시: 2012년 6월(이후 매월 1일 회의 개최)
- 참여: 기획재정부(재정관리총괄과, 민영화과, 재무회계팀), 행정안전부(재정관리과, 공기업과), 교육과학기술부(지방재정교육과), 한국은행(지출국민소득팀, 자금순환팀), 국가회계기준센터(GFS팀)
- 목적: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실무 쟁점사항 논의

또한 새로운 국제기준(GFSM 2001)에 따른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차질 없이 작성하기 위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 작성 실무 TF'를 구성하였으며, TF 논의사항 중 주요사항은 재정통계자문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일반정부 재무통계 작성 실무 TF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일반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포괄범위 설정 및 재정통계 작성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지방·비영리공공기관의 회계기준과 GFSM 2001 회계기준의 내용 중 상호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가회계기준과 GFSM 2001과의 차이내역 정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동 차이내역 및 대응방안을 기준으로 지방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회계기준과 GFSM 2001과의 차이내역 정리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지방(교육 포함)·비영리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제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 제거 방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계기준과 GFSM 2001과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6) 2012년 12월, 마침내 일반정부 부채 산출 및 공표(2012년 12월)

〈보도자료: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 보도일시: 2012년 12월 24일(월) 9:30
-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 주요내용: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발생주의 기준의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6조원(GDP대비 37.9%)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임
  - 통계작성 대상기관의 포괄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고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추가하여 산출함
  -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재정통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통계기준인 GFSM 2001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통계를 최초로 작성하여 2012년 12월 공표하였다.

7)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개

일반정부 자산과 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정보를 2012회계연도부터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IMF에 제출하여 IMF GFS Year Book과 IMF DATA에 각각 공시하고 있다.

### 제3절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 산출

#### 1.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배경

2012년 WB, OECD, IMF 등이 연합하여 새로운 국제지침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재정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공부문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계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GFSM 2001에 따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에 대한 부채는 발표하고 있었으나, 일반정부의 범위에 LH,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제외되어 국가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추진과정

재정통계자문위원회와 재정통계산출 실무TF, 공청회, dBrain(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2월 정부는 최초로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발표하게 된다.

표 1-7 | 공공부문 부채통계 추진 과정

연혁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추진 과정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운영('13. 1월 6월 9월, 총3회)</li> <li>▪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실무 TF 구성('13. 2월~7월, 매월 개최)</li> <li>▪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공청회 개최('13. 7월)</li> <li>▪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련 dBrain과 논의('13. 9월)</li> <li>▪ 공공부문 부채산출 설명회 개최('13.11월)</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및 공표('14. 2월)</li> </ul>

## (1)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및 재정관리협의회 보고를 통해 산출방안 확정(~2013년 9월)

### 1)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2차 회의(2013년 1월)

####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2차 회의〉

- 개최일시: 2013년 1월 11일(금) 16:00~18:00
- 장소: 재정정보과 대회의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위원장) 외 8명, 민간위원 국가회계기준센터 편호범 소장 외 7명

2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도 국제 추세에 맞춰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재정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정통계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하고 자문위원회 내에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실무 TF’ 추진을 계획하였다.

### 2)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3차 회의(2013년 6월)

####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3차 회의〉

- 개최일시: 2013년 6월 24일(월) 14:00~16:00
- 장소: 재정정보과 대회의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총괄과장, 재무경영과장,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안행부 지방재정과장,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편호범(국가회계기준센터), 김정훈(조세연구원), 김경호(홍익대), 김동수(삼일회계법인),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최대규(성도회계법인)

3차 회의에서는 7월에 있을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이 이루어졌다.

### 3)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4차 회의(2013년 9월)

####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4차 회의〉

- 개최일시: 2013년 9월 13일(금) 15:00~17:00
- 장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총괄과장, 재무회계팀과장,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민간위원)** 김경호(홍익대), 김동수(삼일회계법인), 문형표(KDI), 최대규(세일회계법인),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4차 자문위에서는 공공부문 포괄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간접지배기관까지 포괄범위를 확대하여야 할지가 논의되었다. KBS, EBS의 경우 정부의 직접지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공부문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MBC는 제외하였다.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울산과기대)의 경우도 정부의 지배성을 충족한다고 보아 공공부문에 포함하였다.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제지침에 따라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부기사항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재무제표에는 부채에 포함하지만 통계 목적에서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공부문 부채 범위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부채 전체를 제외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도 연금이 보유한 국채의 내부거래 제거 여부와 회계기준 차이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실무 TF 구성(2013년 2월~7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시 이슈가 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실무 TF회의’가 총 7차례 개최되었다.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실무 TF회의〉**

- 목적: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실무 쟁점사항 논의
- 개최일시: 2013년 2월~ 2013년 7월(총7차례)
- 참여: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총괄과, 제도기획과, 민영화과, 재무회계팀), 행정안전부(재정관리, 지방공기업), 교과부(지방교육재정, 교원정책), 통계청(지역소득통계), 한국은행(지출국민소득팀, 자금순환팀), 국가회계기준센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공공부문 재무통계 산출 실무 TF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범위(포괄범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KBS, EBS, 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통계작성 목적과 공공기관 관리 목적을 별개로 보아 해당 기관을 통계산출 포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채금액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효과와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후의 공공부문 부채금액인 ‘관리공공부채’ 개념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충당부채는 PSDS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직역연금 충당부채를 산출·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다른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산출·공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추세에 맞추어 연금충당부채 공개 여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가(중앙),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대한 차이 분석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회계기준 및 자산통계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심층논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발부채 산출방안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보증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평균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 후 공공부문 부채에 계상하기로 하였고, 공공부문 포괄범위는 한국은행 기준년 개편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채무(D1)나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다양한 부채의 포괄범위 및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3)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013년 7월)

#### 〈공청회 개요〉

- 개최일시: 2013년 7월 4일(목) 13:00~18:00
- 주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 장소: aT센터 세계로룸(3층)
- 사회자: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발표자: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토론자:
  -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 박성동 국장(통계청 경제통계국)
  - 백웅기 교수(상명대 금융경제학과)
  - 심충진 위원(경실련 재정세제위원)
  -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이태성 국장(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장경덕 위원(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정영택 부장(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 정정순 정책관(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새로운 국제지침의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부채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7월 공청회를 통해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논의되었다.

국제지침에 따른 정부의 '지배성' 기준을 만족하는 공공부문 포괄범위 선정이슈를 비롯한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현황 및 산출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이슈도 논의되었다.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국채도 내부거래로 제외하여야 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공부문 하위부문 간의 회계기준 차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재정통계자문위원회, 재정관리협의회 보고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

#### (4)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관련 dBrain 회의(2013년 9월)

##### 〈공공부문 부채 산출관련 dBrain과 협의〉

- 개최일시: 2013년 9월 24일(화) 15:00~17:00
- 장소: 과천 dBrain 2층 회의실
- 참석자: dBrain통계(홍정훈 파트장), dBrain예산(김철수 팀장), dBrain결산(류진동 차장), dBrain국가채무(우광일 수석), 국가회계기준센터(박윤진회계사, 정수진회계사)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dBrain에서 실무적으로 이용가능한 채무정보 수준 및 이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공공부문 부채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무항목별로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통화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므로, dBrain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무증권(부채)과 용자(부채)의 경우 국가채무 작성 시 사용되는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 외 계정의 경우 dBrain 원장정보를 활용하기로 논의하였다. 또한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연계기관의 경우 별도로 템플릿을 배포 및 회수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5)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2013년 11월) 및 '07~'12년 대상 공공부문 기초자료 수집

### 〈공공부문 부채 산출 설명회〉

- 개최일시: 2013년 11월 4일(월) 14:00~16:00
- 장소: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1층)
- 참석자: 공공부문 부채 작성 대상기관의 담당자
- 발표자: 국가회계기준센터 박윤진 회계사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 산출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지방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에 속하는 공기업의 부채 작성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6) 2014년 2월, 최초로 2011회계연도 및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및 공표

### 〈보도자료: 20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보도일시: 2014년 2월 14일(금) 10:00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요내용: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1조원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원임

정부는 2014년 2월 14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범위로 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및 공표하였다.

## 제4절 GFSM 2014 개정 배경 및 주요 변화

### 1. 개정 배경

GFSM 2001 도입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새로운 통계방법론의 개발 등에 따라 GFSM 2001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SNA 및 ESA가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 SNA 2008 및 ESA 2010로 개정되고 이와 더불어 국제통계매뉴얼인 BPM6(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 및 PSDS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GFSM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서 2015년 7월 GFSM 2014를 새롭게 마련하여 공개하였고, 국가별로 개정된 GFSM 2014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 2. GFSM 2014 주요 변화

#### (1) 정부 범위

(포괄범위) 과거 거주자, 제도단위, 지배, 시장/비시장생산자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SNA 2008, ESA 2010 등 다른 국제통계매뉴얼과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SNA 2008, ESA 2010 등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산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보장성기금 구분표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할수록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재정정책 운영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포함시켰던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분리하여 일반정부의 하위 섹터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자산 측면

(연구개발) GFSM 2014에서는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 다른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지식재산생산물)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회계에서 개발비(자산)로 계상한 금액을 재정통계에서도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가회계 기준과의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기존 GFSM 2001에서는 전비품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재화와용역의 사용으로 비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GFSM 2014 개정으로 무기체계를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비품의 경우에도 국가회계 기준과의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3) 부채 측면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처리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채와 우발부채의 분류를 체계화하였으며, 특히 소액·다수로 발행되는 표준화보증(수출신용보증, 예금보증, 학자금대여보증 등)에 한해서 설정된 총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진일보한 발생주의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계정 세분화

단일계정으로 관리되던 기타미수(미지급) 계정은 자산의 경우 매출채권 및 선급금, 기타 미수계정으로 세분화하고, 부채의 경우 매입채무 및 선수금, 기타미지급계정으로 세분화하였다.

### (5) 보고서 양식 변화

주요 재무제표에 ‘유량과 저량의 통합변동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추가되었고, 회수불능 용자의 명목가치와 공정가치 및 저리로 빌려주는 용자에서 발생하는 이전효과 등을 부기항목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3. 우리나라 도입 시기

IMF에서 GFSM 2014 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GFSM 2014 도입 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GFSM 2014 도입으로 인해 재정통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기대효과 등 연구가 진행 중이다.

## 4. GFSM 2014 개편

### (1) GFSM 2014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 6월~12월)

우리나라도 대내적으로 GFSM 2014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IMF 재정통계편람(GFSM) 2014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GFSM 2014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GFSM 2014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도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도입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GFSM 2001을 기본으로 GFSM 2014의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GFSM 2014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도입방안과 금액 효과 산출 및 과거 재정통계를 GFSM 2014 기준으로 소급하여 재작성함으로써 GFSM 2014 적용에 따른 효과를 증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2)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1차 회의(2017.12)

###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 개최일시: 17.12.14.(목) 10:30 ~ 12:00
- 장소: 서울대우재단빌딩 7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자문위원: 권혁대 교수, 박성환 교수, 박정규 팀장, 김숙진 사무관(기재부 고종안 과장 대참), 김성자 과장(한국은행 박용환 팀장 대참), 윤성주 센터장, 하세정 팀장, 정도진 소장
  - 기재부: 김영은 사무관, 서혜경 주무관
  - 센터: 박윤진 팀장, 윤성호 회계사, 김민정 회계사

GFSM 2014 적용과 관련한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GFSM 2014를 완전히 도입하였고,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에서는 도입을 진행 중에 있거나 도입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프랑스 등 유럽국가 18개국은 ESA 2010에 따른 재정통계를 GFSM 2014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GFSM 2001로의 개편이 지난 2011회계연도에 이루어진 만큼 GFSM 2014로의 개편은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해외동향 및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GFSM 2014 도입 시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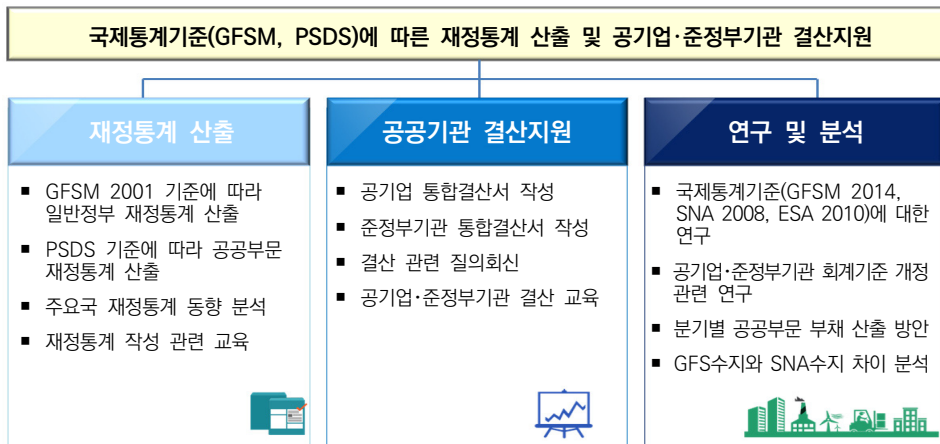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에서는 크게 2가지가 논의되었다.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 이후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GFSM 2014 도입과 관련하여 전환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제5절 재정통계 개편 이후 통계산출 및 관리업무(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 및 관련 연구와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8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 (1) 포괄범위 산정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되는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신규 공공기관은 원가보상률 템플릿에 재무정보를 기재하여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는지 또는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매년 정부 포괄범위는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은행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정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을 시장생산자(공기업) 혹은 비시장생산자(비영리공공기관)로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가격에 따라 생산자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여부임. 다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2008 SNA 22.33)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판매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있음

## (2) 재정통계 작성 설명회 및 공공기관 템플릿 검토

매년 재정통계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에게 재정통계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설명회 이후 각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에서 재정통계 템플릿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로 송부하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동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를 수행한 후, 개별 기관의 재정통계를 확정하게 된다.

## (3) 중앙회계·기금 재정통계 작성

중앙회계·기금의 재정통계는 국가재무제표 및 결산자료, dBrain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국가결산이 완료되는 5월말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GFSM 기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GFS에서는 거래처별이나 성격별로 손익을 구분하는 등 국가결산 계정과목과 세분화 정도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dBrain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 (4) 지방정부 재정통계 검토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영리공공기관, 지방비금융공기업의 재정통계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로 송부하고, 교육청의 재정통계는 교육부에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로 송부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송부한 지방정부 재정통계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의 내부거래 등을 비교하여 확정한다.

## (5) 재정통계 통합 및 분석보고서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가 확정되면 각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통계 산출업무뿐 아니라,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증감분석, 추세분석, 국제비교 등 재정통계 관련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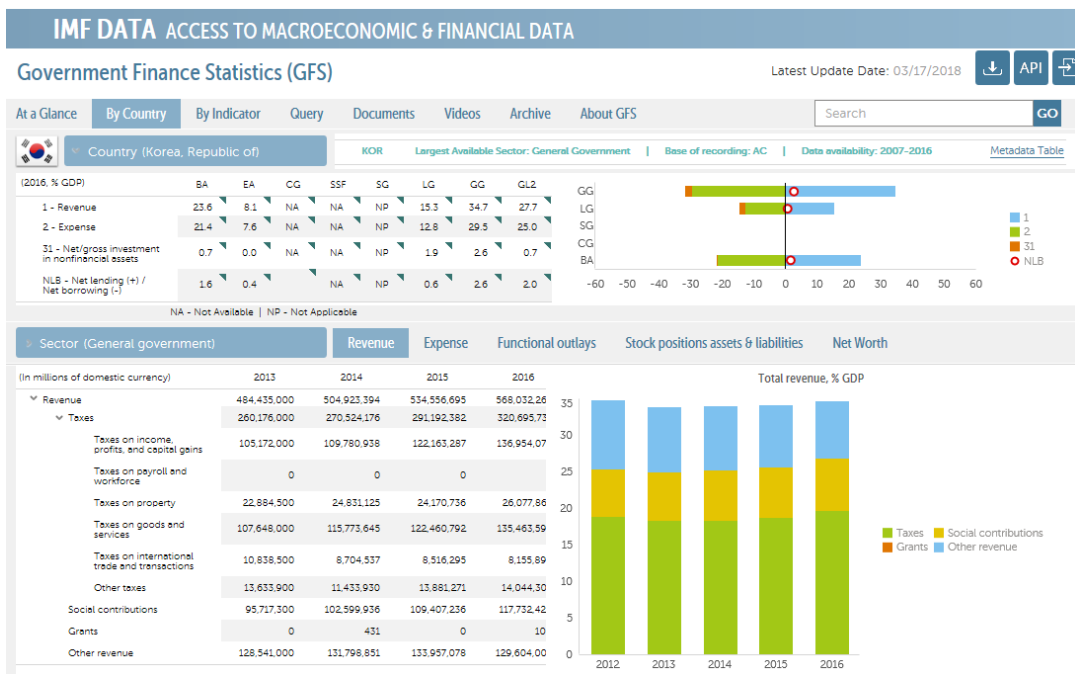
## 2. 우리나라 재정통계 공시

### (1) GFSM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우리나라 GFS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다. 동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경로: 통계>재정통계>한국통합재정수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자산, 부채, 재정수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FS 재정통계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8개 나라가 작성하고 매년 IMF에 제출되어 IMF GFS Year Book과 IMF DATA에 각각 공시되고 있다.

그림 1-9 | GFS 재정통계 공시현황



IMF 회원국에서 제출한 재정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등의 비교를 통해 재정건전성 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통계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국제신인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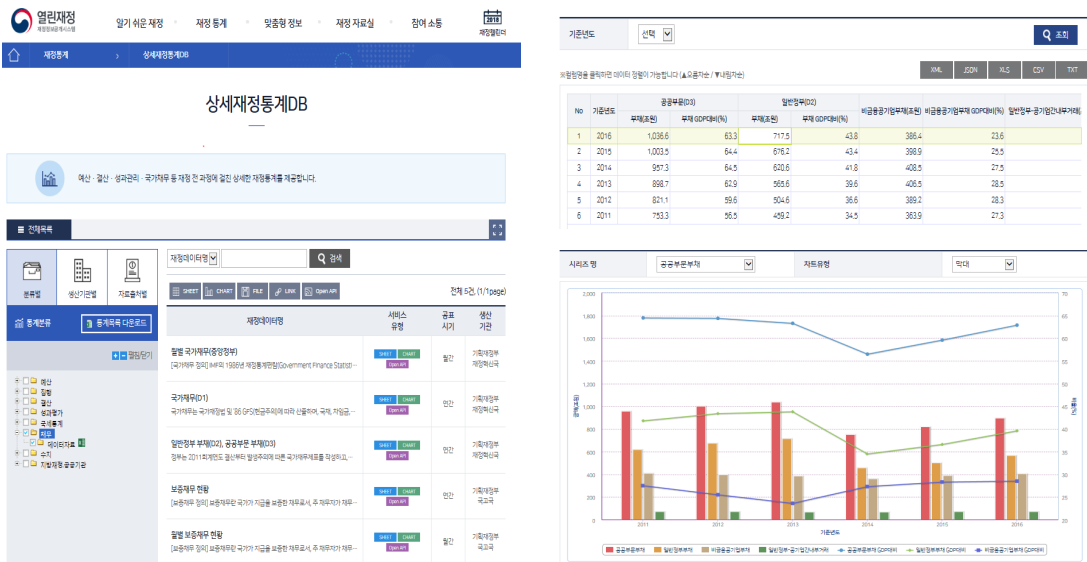
## (2) 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주체 및 공시

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도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공동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매년 다음 해 12월까지 산출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산출된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다.

PSDS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아직 많은 국가들이 산출하고 있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정착단계가 지나면 부채의 세부내역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SDS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에 공시된다.

그림 1-10 | 열린재정 공시현황



또한, OECD에 제출된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OECD 및 World Bank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11 | PSDS 공시현황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Stat**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

Customise Export Draw chart My Queries

Find in Themes Popular queries Reset

National Accounts

- National Accounts
  - Annual National Accounts
    - Main Aggregates
    - Detailed Tables and Simplified Accounts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 Detailed Non-Financial Sector Accounts
    - Supply and Use Tables
  -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Financial Accounts
  - Annual National Accounts, SNA93
  -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
    - Public sector debt by instrument coverage
  - Quarterly Sector Accounts (Financial and Non-financial)
  -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stics
  - Households'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 Financial Dashboard
  - Household Dashboard

Transaction		Total gross debt				
Sector		General government				
Measure		Current prices, annual levels				
Adjusted		Not seasonally adjusted				
Time		Q1-2014	Q2-2014	Q3-2014	Q4-2014	Q1-2015
Country	Unit					
Denmark	Danish Krone, Millions	976 460.4	993 767.1	1 028 367.3	1 028 195.4	1 025 059.7
Estonia	Euro, Millions	2 714.5	2 807.1	2 817.3	2 776.4	2 708.7
Finland	Euro, Millions	129 909.0	133 122.0	130 899.0	134 832.0	139 048.0
France	Euro, Millions	2 253 366.2	2 297 549.4	2 312 638.1	2 284 209.3	2 340 719.8
Germany	Euro, Millions	2 175 882.8	2 182 423.4	2 183 711.8	2 186 954.0	2 192 594.0
Greece	Euro, Millions	320 015.0	322 098.0	319 217.0	319 726.0	303 405.0
Hungary	Forint, Millions	25 231 666.0	25 780 156.0	25 487 112.0	24 994 214.0	25 498 229.0
Iceland	Iceland Krona, Millions	..	..	..	..	..
Ireland	Euro, Millions	223 203.7	217 703.4	216 449.4	212 201.4	212 536.3
Israel	New Israeli Sheqel, Millions	..	..	..	..	..
Italy	Euro, Millions	2 121 633.5	2 169 848.8	2 135 710.4	2 137 315.5	2 187 141.1
Japan	Yen, Millions	1 179 407 400.0	1 200 092 600.0	1 202 583 500.0	1 215 999 300.0	1 228 768 200.0
Korea	Won, Millions	..	..	..	620 571 000.0	..

<http://stats.oecd.org>

The World Bank Home Site Map Index

About Countries Data & Research Learning News Projects & Operations Publications

**PSD**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Search QPSD

Home > Data > Quarterly Public Sec... > Country Data > Data by Sector

**Country Data**

- Data Availability
- Data by Sector
- Cross Country Data
- Access to Database
- Methodology & Template
- Related Sites

**Site Tools**

- Contact Us
- FAQs

**Data by Sector**

<b>Table 1</b>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Position
<b>Table 1.1 (Required)</b>	Gross Central Government Debt Position
<b>Table 1.1.1</b>	Gross Budgetary Central Government Debt Position
<b>Table 2</b>	Gross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 Position
<b>Table 3</b>	Gross 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Debt Position
<b>Table 4</b>	Total Gross Public Sector Debt Position

<http://web.worldbank.org>

### 3. IMF의 통계 품질평가

IMF에서는 정책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IMF 자체 관리뿐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각국의 통계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통계 품질평가 프레임 워크(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 DQAF)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 (1) 통계 품질평가 프레임의 구성

DQAF에서는 통계시스템, 통계산출 과정, 통계산출물 관리 등 통계 전반에 걸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6가지 차원에서 통계 품질을 평가한다.

##### 1) 질적 측면에서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of Quality)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지원되어야 하며 자원은 통계프로그램의 필요에 비례·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자료는 실질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 2) 객관성(Assurances of Integrity)

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객관성의 원칙으로 법 또는 기타규정으로 전문적 독립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통계정책은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3) 방법론적 건전성(Methodological soundness)

통계의 방법론적 기초(개념 및 정의, 범위, 분류 및 기록)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좋은 관행을 따라야 한다.

##### 4) 정확성 및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

사용가능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시데이터와 통계산출물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5) 봉사성(Serviceability)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기와 적시성을 지닌 통계가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 6) 접근성(Accessibility)

자료와 메타데이터는 쉽게 사용가능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통계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되며 배포 형식이 적절하고 통계자료는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2) 우리나라 데이터 품질평가

우리나라는 2009년 IMF의 요구에 따라 한국 재정통계에 대한 통계 품질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1) 질적 측면에서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of Quality)

(법적·제도적 환경) 중앙정부 재정통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제9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재정수지(GFS),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에 의거 재정수지의 작성,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국가채무 관리 총괄 업무는 2017년 기준으로 재정혁신국이 담당하며 중앙정부 결산은 재정관리국에서,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 등 결산 및 관리업무는 국고국에서 담당한다.

한편 지방정부 재정통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재정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제21729호에 의거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업무를 지방재정세제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회계기금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 dBrain)을 사용하여 국가 결산을 하며, 지방정부는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GFS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dBrain에서 산출된 원천데이터를 GFS 계정과목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한다. 다만 비영리공공기관은 통일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템플릿을 배포 및 취합·검토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한다.

(자료의 보완 및 통계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사용) 통합재정수지, 국가채권, 국가채무 등 정부재정통계들은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청 승인자료로서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보호가 보장된다.

(통계프로그램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 존재) 정부재정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승인통계이므로 「통계법」 제9조~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통계 품질진단을 받아야 하며, 자체 통계 품질진단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객관성(Assurances of Integrity)

전문적 독립성을 지원하는 법이나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통계산출 담당자들은 매뉴얼에 근거하여 통계정보를 작성하고 공표하며 외부기관에 의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한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 유지와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OECD, IMF)나 국내에서 개최하는 재정통계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방법론적 건전성(Methodological soundness)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GFSM 2001에 따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최근 IMF 발표된 GFSM 2014의 경우 도입방안 및 도입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 4) 정확성 및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

보고단위들의 데이터 적시 제출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망을 통한 문자안내를 하고 있으며 제출된 데이터는 외부감사보고서 등 외부정보와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검토하고 있다.

## 5) 봉사성(Serviceability)

(주기성과 적시성) 중앙정부 운영 및 예산 운영에 관한 통계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매일 공표된다. 중앙정부 부채는 1년 주기로 다음해에 공표되며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및 채무전망을 수록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공표된다.

(일관성) 일관성 있는 시계열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나 통계기법상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례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재정통계를 공표할 때 동 자료는 잠정수치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하여 통계 이용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특히 국회에서 최종 결산수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자료가 잠정치이고 국회 확정 이후 최종수치가 확정된다는 수정주기가 확립되어 있다.

## 6) 접근성(Accessibility)

(자료 접근성) 국가채무통계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범위, 작성주체, 법적 근거, 향후 5년 중기계획 및 국가채무관련 위험분석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연간자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되므로 모든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표되며 엠바고데이트(제한날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조기 발표를 방지한다.

(메타데이터 접근성) GFS 및 국가채무 관련 개념 및 방법론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http://www.openfiscaldata.go.kr))에 수록되어 있으며 게시되는 통계자료에 담당자의 연락처가 함께 고지되어 통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절 포괄범위

#### 1. 포괄범위 분류

일반적으로 재정통계 작성대상을 포괄범위(coverage)라고 한다. SNA 2008은 가장 넓은 범위인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sup>5)</sup>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PSDS와 GFSM 2001은 그보다 작은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범위로 하고 있다. SNA 2008, PSDS 및 GFSM 2001에서 포괄범위를 다루는 기본개념은 동일하며, 다만 통계 작성대상을 기준별로 달리하고 있는 것에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SNA 2008에서 국민계정을 작성할 때 채택하고 있는 제도부문의 분류방식인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어 공공부문과 일반정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 2. 제도단위 및 제도부문

##### (1) 제도단위

SNA 2008에서는 경제주체와 관련하여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권리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며 다른 단위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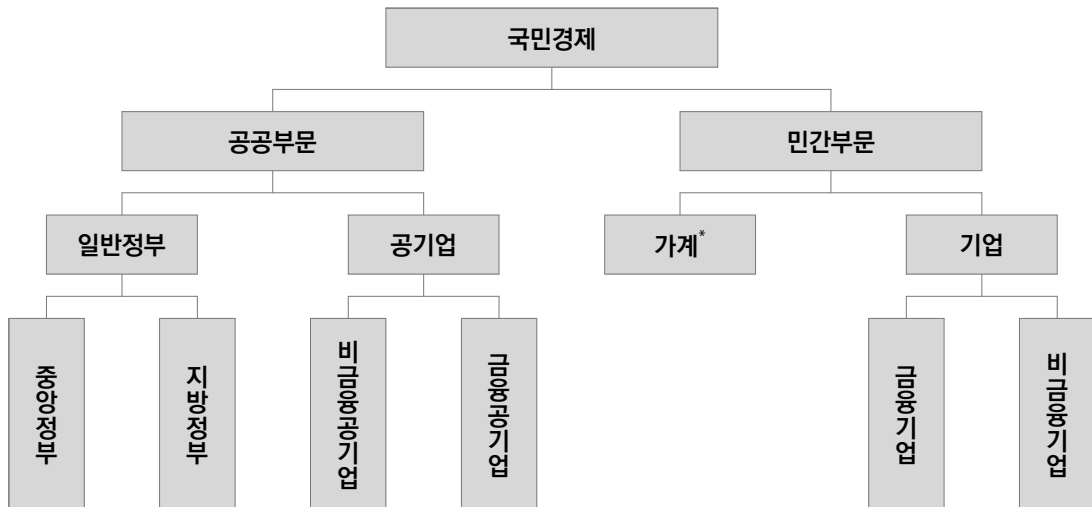
제도단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의 책임하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적(사회적) 실체이다. 국민계정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외부문으로 취급한다.

5) 기업(금융, 비금융), 일반정부, 가계, 가계지원 비영리단체로 구분

## (2) 제도부문

모든 거주 제도단위는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부문, 금융기업부문, 비금융기업부문, 가계부문, 가계지원 비영리단체부문 등 총 5가지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부문과 일반정부부문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해당 부문이 수행하는 생산활동의 목적에 있다. 제도단위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생산활동을 한다면 기업부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림 1-12 | 국민경제의 제도단위



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포함

### 1) 금융 및 비금융기업부문

법인기업은 시장에 생산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으로 판매하기 위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제도부문이다. 금융기업은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단위이고, 비금융기업은 주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단위이다.

### 2) 일반정부부문

정부는 가계부문과 사회 전체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소비지출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이들 재화 및 서비스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 3) 가계부문

가계는 1차적으로 소비자이지만 생산활동에도 종사할 수 있다. 가계의 생산활동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비공식적이며 주로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활동을 한다.

### 4) 가계지원 비영리단체

가계지원 비영리단체는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가 해당한다.

## 제2절 공공부문의 분류

### 1. 지배성 기준

앞에서 설명한 국민경제의 5개 제도부문은 다시 크게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금융기업과 금융기업 중 공기업은 공공부문으로 분류되고 민간기업은 민간부문으로 분류된다.

그림 1-13 | 공공부문과 다른 제도부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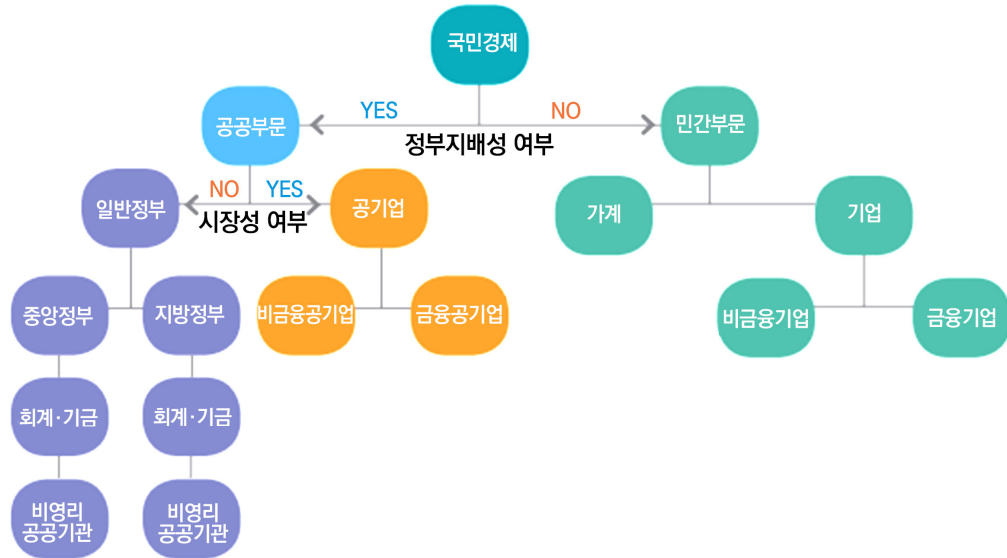


국민경제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배성'으로, 지배(control)란 일반적인 기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정부단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인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정부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재화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단위로 시장성 있는 기관이 포함되며,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4 |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특정 기업이 정부단위나 기타 공기업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는 다음의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①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보유 여부
- ② 이사회 혹은 주요 협의체 기구에 대한 지배 여부
- ③ 집행간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혹은 파면권 보유 여부
- ④ 주요 위원회 혹은 주요 지배기구에 대한 지배 여부
- ⑤ 황금주(golden shares)와 주식매입선택권(option) 보유 여부
- ⑥ 규정 및 규율 지배 여부
- ⑦ 지배적인 공공부문 고객 혹은 고객집단의 지배 여부
- ⑧ 정부 용자를 통한 지배 여부

## 2. 우리나라 공공부문 포괄범위

### (1) 현황

정부의 지배성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3가지 기준이 고려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정부 산하 공사·공단, 그리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에서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한 기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포괄범위의 설정 목적 자체가 ‘통계’ 목적이 아닌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배성 기준은 PSDS의 지배성 기준과 유사하나 공공기관 분류체계가 상이<sup>6)</sup>하였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의 공공기관은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의 공공기관으로 KBS, EBS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공공부문 포괄범위 산출방안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을 위해 ‘지배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실무적으로 일반정부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지분율 50% 미만인 출자·출연기관 제외)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서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상의 공기업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의 분류에서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BS, EBS, 서울대, 인천대의 6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 (3) 공공부문 산출시 고려사항

#### 1)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지침에서 중앙은행은 예금수취 공기업의 일부로 독립적인 제도단위인 경우 항상 금융기업부문에 속하는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지방공기업법」상 공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직접 경영), 지방공사·공단(간접 경영), 그 외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됨

경우에도 독립된 제도단위인 경우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공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발표 시에는 제외하고 있다.

## 2) 공영방송(KBS, EBS)

국제지침에 공영방송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 기준인 정부의 지배성 유무에 따라 공공부문 여부를 검토하였다. KBS, EBS 모두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임명권한을 정부에서 행사함에 따라 지배성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닌 국제비교를 위한 재정통계 산출목적이므로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관리목적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성의 기준에 따라 KBS와 EBS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다.

## 3)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법인화된 국립대학법인으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부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총장에 대한 최종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며, 또한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반수 이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부가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제3절 일반정부

### 1. 시장성 여부

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제도단위가 비시장생산자인지 시장생산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이후 설명할 원가보상률을 사용하게 된다.

즉 공기업이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재화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는 시장성 있는 기관이며,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배하면서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가보상을 판단 전에 정부판매비율이나 특수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원가보상을 등 판단기준

### (1)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SNA 2008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을 생산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을 ‘시장산출물’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라고 부른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을 ‘비시장산출물’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비시장생산자’라고 부르고 있다.

SNA 2008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지만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다년간 평균 생산원가의 절반수준인 경우 이를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sup>7)</sup>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럽국민계정체계(ESA95,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는 50% rule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매출액으로 보전되어야 산출물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7) SNA 2008 22.29 These conditions usually mean that prices are economically significant if sales cover the majority of the producer's costs and consumers are free to choose whether to buy and how much to buy on the basis of the prices charged. Although there is no prescriptive nume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output(excluding both taxes and subsidies on products) and the production costs, one would normally expect the value of goods and services sold (the sales) to average at least half of the production costs over a sustained multi-year period.

## (2) 원가보상률

원가보상률은 SNA 2008에 따라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누는 개념으로서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단하여 시장생산자로 분류한다. 이때 원가보상률의 측정기간은 다년간의 수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판매액: 일반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영업수익, 사업수익 등이 판매액에 해당되며 정부로부터 수취한 부담금, 대가성 없는 이전수입성격 등의 금액은 판매액에서 제외한다.
- ② 생산원가: 일반제조 및 서비스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이 생산원가에 해당한다. 대가성이 없는 이전지출 성격의 금액은 생산원가에서 제외한다.

## (3) 정부판매비율

SNA 2008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인 제도단위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한다면 이를 시장생산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기준<sup>8)</sup>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에 따라 생산자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제도단위를 일반정부에 포함해야 한다.

## (4) 특수기준(구조조정기구<sup>9)</sup>, 사회보장기구<sup>10)</sup>)

구조조정기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장기간 존속하는 공공기관으로 SNA 2008에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아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자산을 구입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정부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NA 2008에서는 사회보장기구의 경우 정부단위에 의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될 수

8) SNA 2008 4.123 In addition to providing non-market goods or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such units may include government producers supplying non-market goods or services to other government units for purposes of intermediate consumption or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9) SNA 2008 22.47~50

10) SNA 2008 22.21

있으며 제도단위의 역할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형태의 정부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 3.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 (1) GFSM 2001에 따른 포괄범위

GFSM 2001에서는 재정통계 작성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성범위를 포괄범위(coverage)라고 한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GFSM 1986에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포괄범위를 작성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을 포괄범위 대상으로 하여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하는 재정통계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포괄범위는 최신의 국제기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작성대상과 재정수지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재정통계 개편(GFSM 2001)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에서 설명한 SNA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단위와 시장성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산정하였다. 일반정부 포괄범위는 독립된 제도단위 여부, 특수기준, 원가보상률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포괄범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포괄범위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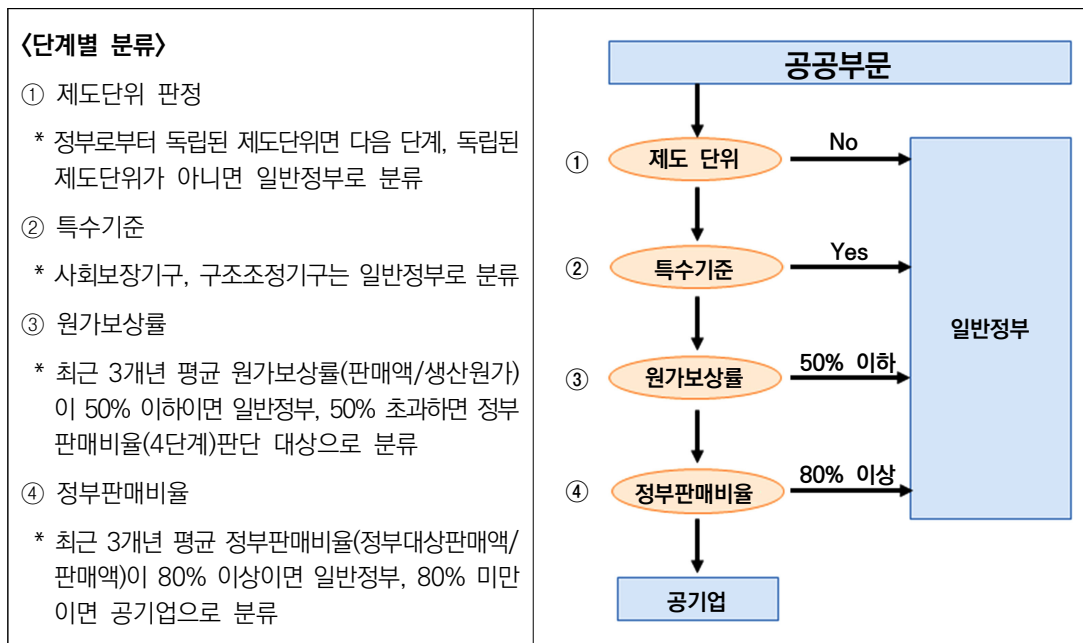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로 정부 제도단위와 독립적인 제도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독립적인 제도단위란 정부 제도단위와는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단위로, 정부와 독립된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정부와 독립된 제도단위가 아니므로 일반정부에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로 특수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특수기준에 따라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부가 유일한 고객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사회보장기구에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들 수 있고 구조조정기구에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들 수 있다.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정부판매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에 일반정부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직전 3개년 평균 원가보상률을 산정하여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원가보상률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비율로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성 기준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즉 매출을 통해 생산원가의 50%를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시장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간주하여 시장생산자(공기업)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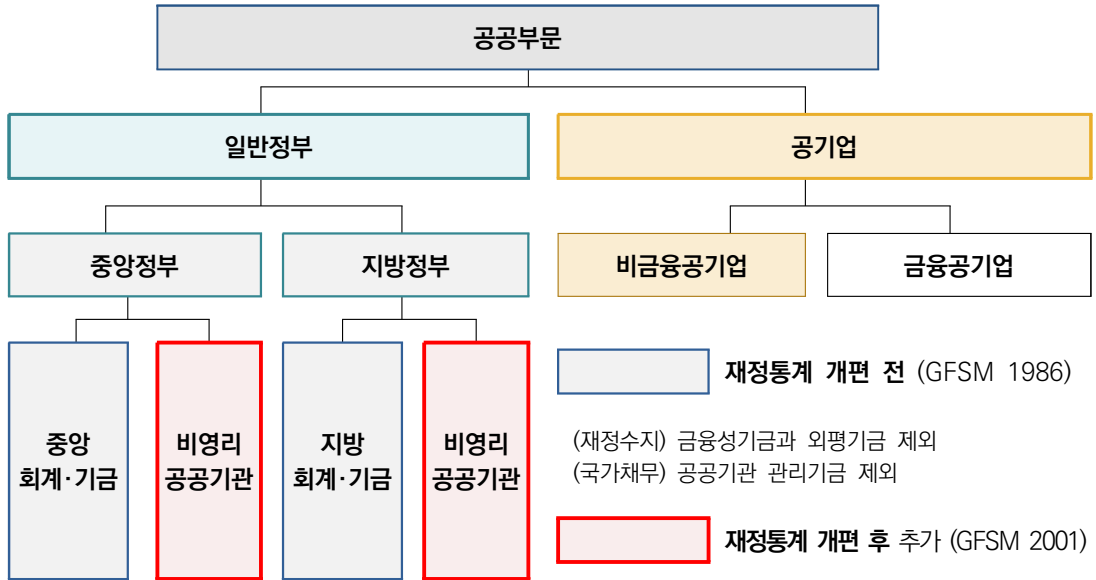
그림 1-15 | 일반정부 포괄범위 판단 과정



### (3) 포괄범위 판단 결과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산정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정통계 개편 전 일반정부 포괄범위인 중앙회계·기금과 지방회계·기금에 추가하여, 시장성기준인 원가보상률과 특수기준을 만족하는 공공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었다. 재정통계 개편에 따른 포괄범위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16>과 같다. 자세한 공공부문 작성대상기관은 <부록3>에 수록하였다.

그림 1-16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포괄범위



2016년 기준 GFS(일반정부) 및 PSDS(공공부문)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1-8 | 2016년 GFS 및 PSDS 포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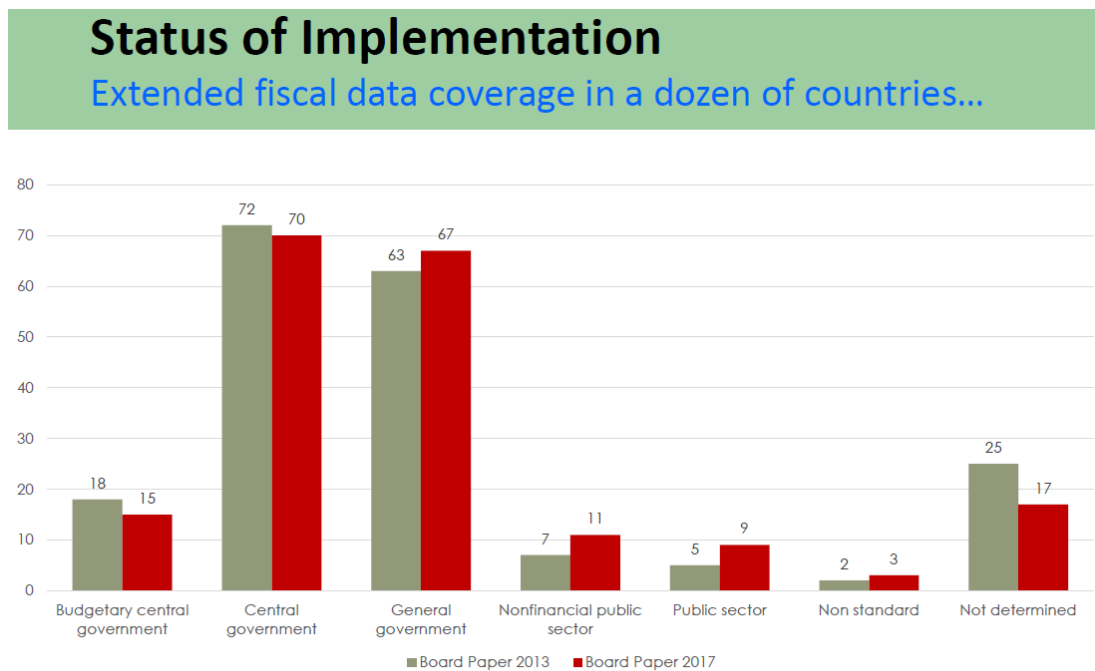
구 분		GFS	PSDS
중앙	회계	■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업특별회계 5개	■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업특별회계 5개
	기금	■ 사업성 기금 등 56개, 금융성-외평기금 9개	■ 사업성 기금 등 56개, 금융성-외평기금 9개
	비영리 공공기관	■ 공공기관 214개	■ 공공기관 214개
지방	회계	■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891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66개	■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891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66개
	기금	■ 「지방재정법」 대상 2,384개 전체	■ 「지방재정법」 대상 2,384개 전체
	비영리 공공기관	■ 공사·공단 93개	■ 공사·공단 93개
공기업	비금융공기업	제외	■ 비금융공기업(중앙) 111개, 비금융공기업(지방) 54개
	금융공기업	제외	제외

#### 4. 국가별 재정통계 포괄범위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국가의 포괄범위(정부범위)는 각각 다르며, 예산기관, 중앙정부, 일반정부, 비금융공공부문, 공공부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70개국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를 작성범위로 하며, 67개국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작성범위로 하고 있다.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을 작성범위로 하고 있는 국가는 각각 11개국 및 9개국에 달하며, 한국의 경우 일반정부를 작성범위로 하고 있다. 다만 PSDS에 따른 부채는 비금융공공부문을 작성범위로 하고 있다.

그림 1-17 | GFS 포괄범위 및 대륙별 balance sheet 작성현황



Sources: Latest staff reports for 192 members/economic areas.

출처: 2017년 GFSAC 발표자료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  
GFS 및 PSDS

•  
제  
2  
부  
•

# GFS 체계 및 구성항목

제1장 | GFS 체계와 회계규칙

제2장 | GFS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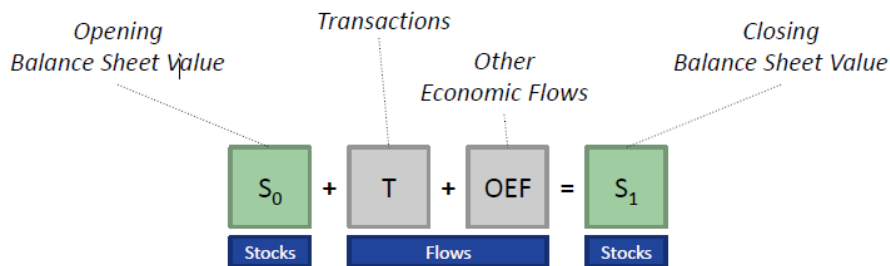
## 1. GFS 체계

### (1) 유량과 저량의 결합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며, 이러한 정부의 내부적 운영을 관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이러한 거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요약·분석되어야 한다.

GFS 재정통계는 정부재정의 거시경제적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저량과 유량을 결합한 상호 연관된 일련의 재무제표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유량과 저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1 | 유량과 저량의 결합



$S = \text{stock position}; T = \text{transactions}; OEF = \text{other economic flows}$

회계기간 초와 회계기간 말의 저량은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로 표시하며 회계기간 사이에 나타난 재정상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시점의 차이인 유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GFS 체계에서 유량은 '거래'와 '거래의 경제유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량을 '거래'와 '거래의 경제유량'으로 구분하는 주요 이유는 정부정책에 따른 통제가능성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거래'의 경우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시장가격의 변동 및 자연재해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의 경제유량'의 경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 (2) 유량

유량은 경제적 가치의 생성·변환·교환·이전·소멸을 의미하고 이는 제도단위가 보유하는 자산·부채·순자산의 내용·구성·가치변화를 초래한다.

### 1) 거래

거래란 두 제도단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교환이나 이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거래는 수익과 비용과 같이 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자산의 순취득, 부채의 순부담과 같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거래란 무엇인가요?

- **거래(Transactions)**란 재화나 용역의 판매 및 구입과 같이 제도단위들 간의 합의된 상호작용으로 유발된 저량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정자본소비와 같이 제도단위 간의 상호작용 없이 스스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거래는 교환이나 이전의 형태로 나타남
- **교환(Exchange)**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자산의 취득, 피용자보수, 배당금 등이 해당
- **이전(Transfer)**이란 한 당사자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령(제공)하지 않고 제공(수령)하는 것으로 세금, 채무면제, 교부금, 보조금 등이 해당

거래는 자산 및 부채의 저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거래들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 2) 거래외 경제유량

거래외 경제유량은 거래의 형태가 아닌 자산·부채·순자산의 변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거래외 경제유량은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를 변화시켜 순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키지만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외 경제유량도 존재한다. 두 개의 자산 또는 두 개의 부채의 가치를 동액만큼 반대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하나의 자산과 하나의 부채를 같은 액수만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거래외 경제유량은 다시 ‘보유손익’과 ‘기타 내용변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보유손익

보유손익이란 당해 자산이나 부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수준이나 가격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의 화폐가치가 변화하였을 때 그 변화분을 의미한다. 보유손익은 모든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데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의 경우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변화를 포함한다.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처분손익, 외화환산손익 등이 보유손익에 해당하며 보유손익은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기타 내용변화

자산과 부채의 기타 내용변화란 거래 또는 보유이익이 초래하지 아니한 자산과 부채의 모든 가치변화를 말한다. 자산의 기타 내용변화에는 기존 자산의 물량 또는 품질을 변화시키는 사건, 재정상태표에 신규자산을 포함시키거나 기존 자산을 삭제하는 사건, 기존 자산을 재분류하는 사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진보나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지하 광물자원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규모 지진, 화산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 등 자산의 물량 또는 품질의 기타변화가 있다.

셋째, 제도단위가 소유권이나 통제권의 변화 없이 일반정부부문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다른 부문에서 일반정부부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등 분류상의 변화가 해당된다.

## (3) 저량

저량은 특정 시점에서 평가한 자산과 부채 및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기초 저량에 유량을 더하면 기말 저량이 산출된다. 즉 GFS 체계에서는 저량을 변화시키는 모든 유량을 기록함으로써 각 자산 및 부채항목이 회계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였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 2. GFS 체계에 적용되는 회계규칙

GFS 체계에서 유량과 저량을 기록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회계제도의 유형 - 복식부기

유량을 기록하는 데 복식부기가 사용된다. 복식부기에서는 하나의 유량이 발생하면 동일 금액이 두 항목, 즉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된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 및 순자산의 감소는 차변항목이며 자산의 감소와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가는 대변항목이다. 순자산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익은 대변항목에 기록되고 순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은 차변항목으로 기록된다.

재정상태표는 한 부분의 자산·부채·순자산을 집계한 표로 자산의 총가치는 부채와 순자산의 합계와 항상 일치한다. 복식부기를 사용하면 이러한 항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비용(차변)과 부채, 즉 외상매입금(대변)의 증가로 기록되어 자산은 변하지 않고 부채가 증가한 만큼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30일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현금의 감소(대변)와 외상매입금의 감소(차변)로 기록되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동일하게 감소하므로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 (2) 저량과 유량의 기록시점 - 발생주의

GFS 체계에서는 저량과 유량의 기록시점으로 발생주의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발생주의에 의하면 기록시점과 실제 자원흐름의 발생시점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변환·이전·소멸시키는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며 특히 비화폐성 거래가 모두 통계로 집계되어 정부의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을 구체적인 항목들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와 기타 강제적 이전은 정부의 징수권을 창출하는 활동·거래·기타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일부 조세가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며 벌금·과태료·재산물수 같은 강제적 이전은 정부가 법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 기록된다.

출연과 기타 자발적 이전의 기록시점은 이전을 수취하는 단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법적 청구권을 얻게 되는 경우 모든 의무사항과 조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며, 의무사항과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된 시점에 이전을 기록한다.

재화 및 비금융자산의 거래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기록되며 용역과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기록된다.

재화와용역의사용은 재화와 용역이 생산공정에 투입된 시점에 기록하며 재화가 취득된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유가증권·융자금·현금·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는 금융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변경될 때 기록된다.

### (3) 가치평가

재화, 현금 이외의 자산, 용역, 노동, 자본 등 모든 유량과 저량의 가치는 그것을 현금과 교환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가치를 ‘현행시장가격’이라 부른다.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중에서 두 개의 거래로 분할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단위가 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러한 매매는 실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매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이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외화로 표시되는 유량은 유량 발생시점의 환율에 따라 그리고 저량은 재정상태표 작성시점의 환율에 따라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환율변화로 인한 차이는 별도로 보유이익 또는 보유손실로 기록하여야 한다.

물물교환의 경우와 같이 현행시장가치로 표시되지 않은 유량의 가치는 현행시장가치를 추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저량들은 그 현행가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이들의 현행시장가치를 추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4) 통합

통합이란 일련의 제도단위들이 마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처럼 간주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통합대상이 되는 두 단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채권채무관계는 제거된다. 예를 들어 한 정부단위가 발행한 채권을 다른 정부단위가 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도 상계되어 보고되지 않는다.

## (5) 기타 쟁점

### 1) 우발성

우발성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일반정부부문의 운영성과 또는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보증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손실발생 여부나 손실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GFSM 2001 기준에서는 우발성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취급하지 않는데, 이는 우발성이 무조건적인 청구권이나 부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문은 우발성, 특히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우발성에 대한 자료를 부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한다.



#### 더 알아보기 우발부채란 무엇인가?

-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여 운영성과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함**
- **국가회계에서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나 ②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GFSM 2001과 PSDS에서는 우발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2) 공적연금의 총당부채 처리

#### ① 국민연금

GFSM 2001 및 SNA에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총당부채는 정책 환경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규모가 불확정적이며 해외에서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사례를 참고하여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사회급여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한다.

## ② 직역연금

GFSM 2001에서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의 총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IMF GFS yearbook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총당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비교 가능성을 위해 일반정부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부기사항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1. GFSM 2001 연차보고서에 대한 이해

### (1) GFSM 2001 연차보고서의 종류

GFSM 2001에 따라서 IMF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보고서는 다음의 총 13종(주요 재무제표 2개, 명세 9개, 부속서류 2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1 | 13종의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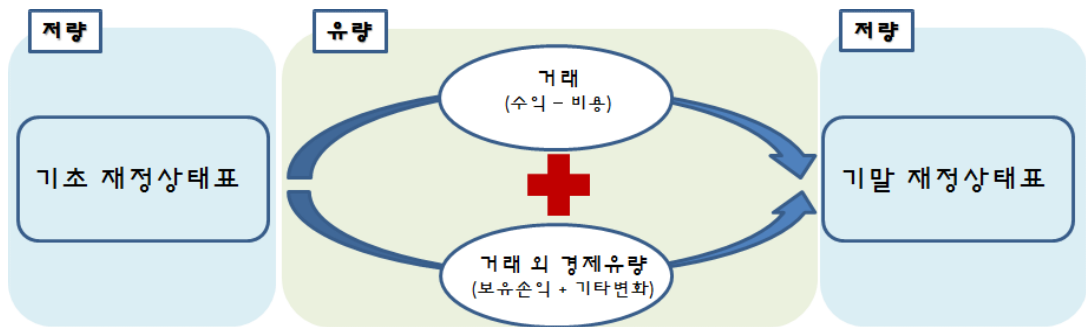
구 분	No	보고서식	내 용
Statement (주요 재무제표)	1	Statement of Government Operations 정부운영표	당해 기간에 나타난 모든 거래의 결과로 수익,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부채의 순부담과 관련된 거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서식
	2	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로서 경상적 운영, 비금융자산 거래, 현금이외의 금융자산 및 채무관련 거래로부터 유출되고 유입된 현금의 총량을 나타내는 서식
Table (명세)	1	Revenue 수익명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나타내는 서식으로 크게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으로 구성
	2	Expense 비용명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나타내는 서식으로 피용자보수, 재화 및 용역의 사용, 고정자본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으로 구성
	3	Transactions in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예. 취득, 처분 등)를 나타내는 서식
	4	Holding Gains and Losses in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	거래(예. 취득, 처분 등) 외에 가격수준과 가격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의 변화를 나타내는 서식
	5	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	거래 또는 보유손익을 제외한 재정상태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화를 나타내는 서식

구 분	No	보고서식	내 용
	6	Balance Sheet 재정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저량을 집계한 서식
	7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명세	일반정부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목표에 따라 비용을 분류한 서식
	8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by Sector 부문별 금융자산부채의 거래명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경제활동 부문별(예. 일반정부, 중앙은행, 기타예금취급법인, 비금융법인 등)로 나타내는 서식
	9	Total Other Economic Flows in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거래외 경제유량명세	거래 이외의 경제유량을 나타내는 서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과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의 합계로 구성
Annex (부속서류)	1	Consolidation Table 내부거래 명세	보고대상별 내부거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속문서
	2	Integrated Statement of Flows and Stocks in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명세	재정상태표의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기초금액, 기중 거래금액,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및 기말금액을 나타내는 부속문서

## (2) 연차보고서의 구조

GFS의 13종의 보고서는 회계기간 초의 저량과 회계기간 중의 '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 으로부터 회계기간 말의 저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2-2 | 연차보고서의 연계구조



		유량			
		거래		거래외	
		수익(T1)			
		-			
		비용(T2)			
		=			
저량		자산의 거래(T3)		자산의 보유손익 및 기타내용변화(T4)	
기초 자산	+	-	+	-	=
=		부채의 거래(T3)		부채의 보유손익 및 기타내용변화(T5)	
기초 부채					
+					
기초 순자산					기말 자산
					=
					기말 부채
					+
					기말 순자산
		(Table 1, 2, 3)		(Table 9=4+5)	(Table 6)

기말 저량과 기초 저량의 차이 중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유량은 '정부운영표'로 나타내고 정부의 정책목적과 관련 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유량은 '거래외 경제유량명세'로 나타낸다.

정부운영표는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비금융자산의 거래 및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항목은 수익명세, 비용명세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에 자세히 기술된다.

거래외 경제유량은 다시 가격변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가치변동을 표현한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와 가격변동 외의 기타변동을 표현하는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에는 환율변화에 따른 환산손익(환차손익),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자산의 처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처분 손익 및 폐기 등에 의한 손익이 포함되며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에는 재해손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GFSM 2001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기초 저량과 기말 저량의 변동분인 유량을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연차보고서를 설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 및 분석가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핵심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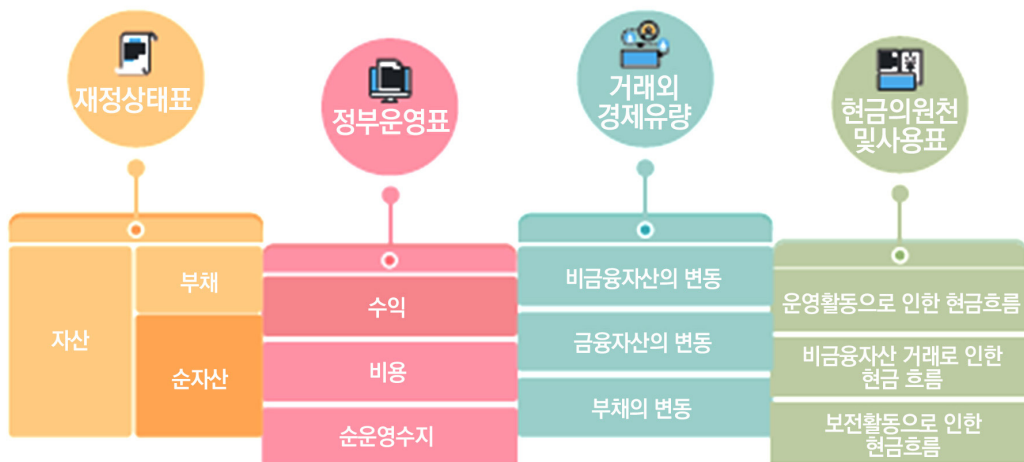
GFS 체계의 핵심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정부운영표, 거래외 경제유량표와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를 말하며 이 중 3가지 재무제표를 결합하면 모든 저량의 변화를 유량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3가지 재무제표란 1) 재정상태표, 2) 정부운영표, 3) 거래외 경제유량표를 말하며 그 외 4)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재정상태표**는 회계기간 말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저량(Stock)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순자산(Net worth)은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액으로 정의된다.
- **정부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는 주요 보고서이다.

-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가격변동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따른 가치변동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정부운영표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통해 나타내는 거래로 인한 변동을 제외한 거래외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보유손익 보고서과 기타내용변화 보고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기업회계의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운영표이다.

정부운영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거래외 경제유량은 GFS 체계상 유량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재정상태표는 저량을 나타내는 보고서에 해당한다.

그림 2-3 | GFS 주요 산출 보고서



### 1) 재정상태표(Balance Sheet: T6)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정부가 보유하는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정보이용자들은 재정상태표의 자산을 통해 비금융자산의 운영실태 및 금융자산의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부채 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순자산의 정보를 통해 정부의 재정활동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표 2-2 | 재정상태표

코드	구분	당기말	전기말
	순자산		
#1	비금융자산		
#11	고정자산		
#12	재고자산		
#13	가치저장자산		
#14	비생산자산		
#2	금융자산		
#202	현금및예금		
#2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204	융자		
#205	주식및기타지분		
#206	보험책임준비금		
#207	파생금융상품		
#208	기타미수계정		
#3	부채		
#301	특별인출권		
#302	현금및예금		
#3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304	융자		
#305	주식및기타지분		
#306	보험책임준비금		
#307	파생금융상품		
#308	기타미지급계정		

제2부

① 자산

일반정부부분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은 정부단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또 이들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부단위가 소유 및 통제하지 않는 자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산은 배제된다.

자산은 먼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되고, 비금융자산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은 금융수단의 유형에 따라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현금및예금,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융자, 주식및기타지분, 보험책임준비금, 파생금융상품, 기타미수계정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한다.

### i.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특정 제도단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과 달리 타 제도단위가 금융자산에 대응되는 부채를 갖는다. 금융자산은 금융청구권, 화폐용 금, IMF가 할당한 특별인출권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금융청구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자산소유자인 제도단위(채권자)가 다른 제도단위(채무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자산을 말한다.

금융청구권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소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된다. 금융청구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현금, 예금, 융자, 채권, 파생금융상품, 미수계정 등이 있다. 금융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당해 금융자산에 상응하여 채무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화폐용 금과 특별인출권은 금융청구권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단위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므로 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용 금과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일반정부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GFS 연차보고서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기구가 발행한 주식 및 기타지분은 비록 그 소유자가 기업에 대하여 고정된 또는 사전에 결정된 화폐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융청구권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를 발행한 단위의 부채가 된다.

#### 〈금융자산〉

##### ○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화폐용 금은 순도 99% 이상의 금화, 금괴이며 특별인출권은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IMF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IMF로부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금과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일반정부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GFS연차보고서상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

##### ○ 현금 및 예금

현금 및 예금은 기업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현금,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채무증권)

유가증권이란 금융청구권이 표시된 증서로,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은 이 중 주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공채, 여음, 채권, 양도가능 예금증서 등이 있다.

○ 용자

용자자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식되며, 용자부채는 반대의 경우에 발생한다. 용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외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각종 대여금(자산) 및 차입금(부채) 등이 용자에 해당한다.

○ 주식 및 기타지분

주식 및 기타지분은 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나 자본금 등의 출자지분으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주식 및 기타지분을 발행한 경우는 부채로 인식되며, 이는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 보험책임준비금

보험책임준비금은 보험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로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비생명보험의 선납보험료, 기존 청구원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선물과 옵션 등이 해당한다.

○ 기타 미수/미지급계정

발생주의로 거래를 인식함에 따른 미수/미지급계정으로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ii.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이외의 모든 경제적 자산으로 다른 단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지 않지만 금융자산처럼 가치를 저장하고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인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한다.

**〈비금융자산〉**

○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일년 이상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생산된 자산으로 건물 및 구조물, 기계 및 장비, 기타고정자산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과 그 구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생산자가 판매할 목적 또는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향후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양곡관리 특별 회계 등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저장품 등이 대표적인 재고자산이다.

- 가치저장자산

가치저장자산이란 상당한 가치를 가진 생산된 재화로서 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취득 및 보유되고 생산과 소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비화폐용 금, 백금, 그리고 예술작품 및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그림, 조각, 그리고 값진 광물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당한 가치의 보석, 수집품, 기타 여러 가지 저장자산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자연공원, 보호구역 등 정부가 역사적, 자연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유산자산이 가치저장자산에 해당한다.

- 비생산자산

비생산자산은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 유형 자연발생자산과 무형 사회적 형성물로 구성된다. 토지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무형비생산자산은 기업회계의 무형자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 ② 부채

부채는 다른 단위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분류방식이 부채에도 적용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먼저 부채를 국내와 국외로 분류하고 그다음 금융수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회계기준과 달리 GFSM과 PSDS에서는 다른 단위에 대한 실체의 채무만을 부채에 포함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발자산 및 부채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 및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향후 지출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충당부채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 2) 정부운영표(Statement of Government Operation: S1)

정부운영표는 일정기간 동안 일반정부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수익과 비용은 순자산을 변화시키는 거래이며 이러한 순자산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로 나타난다.

표 2-3 | 정부운영표

GFSM 2001 정부운영표	개별명세 연계
<b>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b>	
<b>수익</b>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입	←  <b>Table 1 수익명세</b>
<b>비용</b>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사용 고정자산소비 : :	←  <b>Table 2 비용명세</b>
<b>순운영수지/총운영수지</b>	
<b>비금융자산의 거래</b>	
<b>비금융자산의 순취득</b> 고정자산 재고자산 변화 : :	←  <b>Table 3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b>
<b>순융자/순차입</b>	
<b>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보전거래)</b>	
<b>금융자산의 순취득</b> 국내 해외 <b>부채의 순부담</b> 국내 해외	←  <b>Table 3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b>

제2부

정부운영표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유량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각각의 상세한 내역은 ‘수익명세’, ‘비용명세’,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로 설명된다. 실제로 ‘수익명세’에서 ‘비용명세’를 차감하여 계산된 순운영수지와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의 결과값은 동일하다. 이는 한 회계기간 동안의 유량 중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은 순운영수지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순운영수지를 수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 '수익명세'와 '비용명세'이며,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인 것이다.

정부운영표에서는 중요한 수지항목이 도출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는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이다.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금액을 차감하면 '순용자·순차입'이 산출되며 이는 금융자산의 순취득금액과 부채의 순발생 금액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순용자(net lending)의 경우 정부운영결과 흑자로서, 남는 금액을 활용해서 금융자산을 취득(용자)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순차입(net borrowing)의 경우 정부운영결과 적자로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 차입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미이다.

#### ① 수익명세(Revenue Table: T1)

수익명세는 정부운영표상의 수익을 크게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는 명세이다. 수익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자산 처분이나 자산·부채의 평가 등에 따른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사항은 비금융자산의 처분의 경우 하나의 비금융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현금 등 매각대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조세

조세수익은 일반정부가 수취하는 강제적이고 비대가적 성격의 이전으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주로 과세기반에 따라 분류한다.

#####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납부하거나 피용자·자영업자·비취업자가 자신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보험료금액으로, 보험료 납입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납부금액이 급여, 임금총액, 또는 근로자수를 기초로 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료와 기타사회보험료로 구분된다. 사회보장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기타사회보험료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다.

○ 출연

출연은 다른 일반정부나 국제기구, 외국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수취하는 자발적 이전으로 출연의 원천을 1차 분류기준으로 하고, 경상/자본출연 여부를 2차 분류기준으로 하여 세분화한다. 현물 또는 현금의 모든 형태로 발생가능하며, 자본출연 또는 경상출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정부의 통합 과정에서 정부내 출연은 내부거래로 모두 제거되므로 정부운영표에 나타나지 않으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의 출연만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



**더 알아보기** 내부거래 제거란 무엇인가요?

GFS 작성대상인 일반정부 범위에 해당하는 실체끼리의 출연거래가 발생한 경우 내부거래 제거대상이 됨.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금 50이 지급된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비용으로 50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수익으로 50을 인식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중복 계상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것임

○ 기타수익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을 제외한 수익으로 재산소득,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 기타미분류수익으로 분류된다.

- ㉠ 재산소득: 재산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유형에 따라 분류함. 이자, 배당, 지대가 대표적인
- ㉡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익
- ㉢ 벌금, 과태료, 몰수금: 법률 또는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발생하는 수익
- ㉣ 출연이외의 자발적 이전: 개인, 민간, 비영리기관, 비정부재단이나 기업 등 여타 일반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출연을 제외한 금액
- ㉤ 기타미분류수익: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익을 모두 포함

② 비용명세(Expense Table: T2)

비용명세는 정부운영표상의 비용을 유형별로 나타내는 것으로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사용, 고정자본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사용, 고정자본소비는 정부가 자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며, 보조, 출연, 사회급여 및 기타비용은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하거나 이전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항목이다.

-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피용자가 수행한 작업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피용자보수에는 급여 및 임금뿐 아니라 정부가 피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 재화와용역의사용

재화와용역의사용은 일반정부부문이 생산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또는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에서 이들의 재고변화를 공제한 값이다. 단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또는 출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와 용역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용자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가계정 자본형성에 사용된 재화와 용역은 비금융자산의 취득으로 기록된다.

- 고정자본소비

고정자본소비는 회계기간 동안의 물리적 감소, 정상적인 진부화, 정상적인 사고손실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하락 금액이다.

- 이자

이자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지급대상에 따라 비거주자, 일반정부 이외의 거주자, 일반정부에 대한 지급이자로 구분된다.

- 보조

보조는 정부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경상이전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보조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로 구분된다.

- 출연

출연은 정부단위가 다른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구에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비강제적인 이전이다. 출연수익과 동일하게 일반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부내 출연금액은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만이 남게 된다.

- 사회급여

사회급여는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경상이전으로 질병·실업·퇴직·주택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일반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한 현물 사회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된다.

-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이자이외의 재산비용, 배당과 같이 위의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수 없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함**

구입 또는 교환에 의한 비금융자산의 취득은 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이 아닌 비금융자산의 거래로 기록하여야 함에 주의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순자산 감소분은 비용, 즉 자본출연 등의 자본이전으로 기록됨

③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Transaction in Assets and Liabilities Table: T3)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유형에는 정부의 비금융자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른 거래가 기록된다.

**비금융자산의 거래**

- 1) 구입·물물교환·현물지급·이전
- 2) 기존 고정자산의 생산능력을 현저하게 제고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개조·재건축·확장 및 대규모 토지개발시설의 구축\*  
\* 단 기존 고정자산의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은 '재화와용역의사용'인 비용항목으로 처리됨에 주의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의 두 번째 유형에는 금융자산 및 부채를 변화시키는 거래가 기록된다.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 1) 구입·물물교환·현물지급·이전  
모든 유형의 기존 자산은 구입·물물교환·현물지급·이전을 통해 다른 단위로부터 취득될 수 있으며 다른 단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거래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함
- 2) 새로운 금융청구권의 창출 및 소멸  
새로운 금융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거래를 통해 주로 창출되며 이로써 채권자는 금융자산을 소유하게 되고 채무자는 부채를 부담하게 됨

3) 거래의 경제유량표(Holding Gains And Losses in Assets and Liabilities Table: T4, 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nd Liabilities Table: T5)

거래의 경제유량은 보유손익과 기타내용변화로 구분된다.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는 순자산의 증감 중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증감을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GFSM 2001의 보유손익은 실현이 된 경우와 미실현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환산손익 포함) 및 처분손익(환차손익 포함)이 모두 포함된다.

‘자산과 부채의 기타내용변화명세’는 각 자산과 부채의 기초와 기말 잔액의 차이에 대해 ‘거래에 의한 증감(Table3)’과 ‘가격변화에 따른 보유손익 발생으로 인한 증감(Table4)’ 이외의 차이를 설명하는 명세이다.

표 2-4 | 거래의 경제유량표

코드	구분	거래의 경제유량	
		보유손익	기타변화
	순자산과 순자산의 변동		
#1	비금융자산		
#11	고정자산		
#12	재고자산		
#13	가치저장자산		
#14	비생산자산		
#2	금융자산		
#202	현금및예금		
#2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204	융자		
#205	주식및기타지분		
#206	보험책임준비금		
#207	파생금융상품		
#208	기타미수계정		
#3	부채		
#301	특별인출권		
#302	현금및예금		
#3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304	융자		
#305	주식및기타지분		
#306	보험책임준비금		
#307	파생금융상품		
#308	기타미지급계정		

4)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Statement of Sources and Uses of Cash: S2)

GFSM 2001에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정부운영표’와 함께 주요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정부운영표의 의미를 가진다.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금융자산의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 및 ‘보전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상 현금이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한다.

표 2-5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코드	구분	금액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익	
11	조세	
12	사회보험료	
13	출연수익	
14	기타수익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	
21	피용자보수	
22	재화와용역의사용	
24	이자비용	
25	보조	
26	출연비용	
27	사회급여	
28	기타지출	
CIO	운영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	
	비금융자산의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	
31.1	비금융자산의 취득	
311.1	고정자산의 취득	
312.1	재고자산의 취득	
313.1	가치저장자산의 취득	
314.1	비생산자산의 취득	
31.2	비금융자산의 처분	
311.2	고정자산의 처분	
312.2	재고자산의 처분	

코드	구분	금액
313.2	가치저장자산의 처분	
314.2	비생산자산의 처분	
31	비금융자산이 거래로 인한 순현금유입액	
CSD	운영활동 및 비금융자산 거래로 인한 현금증감	
	보전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	현금 이외의 금융자산의 순취득	
321	국내	
322	해외	
323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33	부채의 순부담	
331	국내	
332	해외	
NFB	보전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	
NCB	현금의 순증감	

#### (4) 그 밖의 명세서

##### 1)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명세서(Integrated Statement of Flows and Stocks in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명세서’는 재정상태표의 주요 계정과목(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기초금액, 기중 거래금액, 거래의 경제유량 금액, 기말금액을 나타내며, 회계기간 중에 정부순자산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명세서이다.

표 2-6 ■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명세서

코드	구분	재정상태표 (전기말)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재정상태표 (당기말)
				보유손익	기타변화	
	순자산과 순자산의 변동					
#1	비금융자산					
#11	고정자산					
#12	재고자산					
#13	가치저장자산					
#14	비생산자산					
#2	금융자산					

코드	구분	재정상태표 (전기말)	거래	거래의 경제유량		재정상태표 (당기말)
				보유손익	기타변화	
#202	현금및예금					
#2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204	융자					
#205	주식및기타지분					
#206	보험책임준비금					
#207	파생금융상품					
#208	기타미수계정					
#3	부채					
#301	특별인출권					
#302	현금및예금					
#3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304	융자					
#305	주식및기타지분					
#306	보험책임준비금					
#307	파생금융상품					
#308	기타미지급계정					

2)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명세(Outlays by Function of Government: T7)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명세’는 일반정부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에 따라 비용을 분류한 보고서로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과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금액<sup>11)</sup>을 정부의 기능별로 분류한다.

보건·교육·사회보호·환경보호 등의 정부 기능에 따라 정부지출을 분류하여 각 분야의 정부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지출을 각 분야별 기능(10개)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현황뿐 아니라 관련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FSM 2001의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명세’를 산출하여 정책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11) GFSM 2001에서는 총지출(Total expenditure)을 비용과 비금융자산의 순취득(expense plus the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표 2-7 |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명세

코드	구분	금액
	총지출	
701	일반공공행정	
702	국방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경제사업	
705	환경보호	
70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07	보건	
708	휴양·문화·종교	
709	교육	
710	사회보호	

### (5) 연차보고서 작성 사례

다음은 GFS 연차보고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결산자료를 활용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 작성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 (1) 재무제표

- 1) 2015년 및 2016년 재정상태표  
 - 2015년 재정상태표

구분	2015년	구분	2015년
<b>자산</b>		<b>부채</b>	
현금	2,000	미지급금	2,500
미수채권	3,000		
건물	5,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토지	10,000	<b>자본</b>	
기계장치	3,000	기본순자산	18,50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000)	적립금및잉여금	-
<b>합 계</b>	<b>21,000</b>	<b>합 계</b>	<b>21,000</b>

- 2016년 재정상태표

구 분	2016년	구 분	2016년
<b>자산</b>		<b>부채</b>	
현금	37,000	미지급금	5,500
미수채권	4,000		
건물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토지	-	<b>자본</b>	
기계장치	3,000	기본순자산	18,50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500)	적립금및잉여금	18,500
<b>합 계</b>	<b>42,500</b>	<b>합 계</b>	<b>42,500</b>

2) 재정운영표(\*)

- 2016년 재정운영표

구 분	2016년	GFS 구분
조세수입	15,000	수익
용역비용	(3,000)	비용
감가상각비	(1,500)	비용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	보유손익
외화환산손실	(1,000)	보유손익
<b>재정운영결과</b>	<b>18,500</b>	

(\*) 국가회계기준상 재정운영표는 비용이 (+)고, 수익이 (-)로 계상되지만, 사례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회계기준과는 달리 수익을 (+)로, 비용을 (-)로 표기하였다.(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2) 2016년 당기 중 발생한 회계거래

1) 조세수입

당기 중 조세수입 15,000이 발생했으며, 이 중 14,000만큼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미회수금액은 미수채권으로 계상

차) 미수채권	1,000	대) 조세수입	15,000
현금	14,000		

2) 용역비용

당기 중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서비스(3,000)를 제공받았지만, 용역대가의 지급은 차기년도에 이루어짐

차) 용역비용	3,000	대) 미지급금	3,000
---------	-------	---------	-------

3) 감가상각비 인식

당기 중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1,000 및 500 계상

차) 감가상각비	1,500	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500

4) 건물 및 토지 처분

당기말 시점에 건물 및 토지 전부를 각각 7,000 및 15,000에 매각하였으며, 처분당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처분대가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처분이익
건 물	7,000	5,000	(2,000)	3,000	4,000
토 지	15,000	10,000	-	10,000	5,000
<b>합 계</b>	<b>22,000</b>	<b>15,000</b>	<b>(2,000)</b>	<b>13,000</b>	<b>9,000</b>

차) 현금	22,000	대) 건물	5,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00	토지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000

5) 외화환산손실 인식

당기말 외화환금에 대한 외화환산 결과 외화환산손실 1,000이 발생

차) 외화환산손실	1,000	대) 현금	1,000
-----------	-------	-------	-------

(3) 재정통계 작성

1) Table 6 (기초 및 기말 재정상태표) 작성

기초 및 기말 재정상태표 계정과목과 GFS 계정과목간의 연계를 통해서 Table 6을 작성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과 GFS 계정과목의 연계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GFS 계정과목
현금	현금
미수채권	기타미수계정
건물	건물및구조물
건물_감가상각누계액	건물및구조물
토지	비생산자산
기계장치	기계장비
기계장치_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비
미지급금	기타미지급계정

2) Table 3(거래), Table 4(보유손익), Table 5(기타변화) 작성

계정과목명	기초	거래명세 (Table 3)	보유손익명세 (Table 4)	기타변화 (Table 5)	기말 (Table 6)
<b>순자산변동</b>	<b>18,500</b>	<b>10,500</b>	<b>8,000</b>	<b>-</b>	<b>37,000</b>
<b>비금융자산의 순취득</b>	<b>16,000</b>	<b>(23,500)</b>	<b>9,000</b>	<b>-</b>	<b>1,500</b>
건물및구조물	4,000	(8,000)	4,000		-
취득					
처분		(*1) 7,000	(*8) 4,000		
고정자본소비		(*2) 1,000			
기계장비	2,000	(500)	-		1,500
취득		-			
처분		-	-		
고정자본소비		(*3) 500			
비생산자산	10,000	(15,000)	5,000		-
취득		-			
처분		(*4) 15,000	(*9) 5,000		
<b>금융자산의순취득</b>	<b>5,000</b>	<b>37,000</b>	<b>(1,000)</b>		<b>41,000</b>
현금	2,000	(*5) 36,000	(*10) (1,000)		37,000
기타미수계정	3,000	(*6) 1,000			4,000
<b>금융부채의순부담</b>	<b>2,500</b>	<b>3,000</b>	<b>-</b>	<b>-</b>	<b>5,500</b>
기타미지급계정	2,500	(*7) 3,000			5,500

① Table 3

자산과 부채의 거래명세의 경우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를 구분해서 작성

-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거래를 취득, 처분, 고정자본소비(감가상각비)로 구분해서 표시

(\*1) 당기 건물의 처분에 따라 수령한 처분대가(7,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은 산식을 이용하여 처분으로 인해서 감소한 건물 장부금액(3,000)에 건물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4,000)을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당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0

(\*3) 당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

(\*4) 당기 토지의 처분에 따라 수령한 처분대가(15,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은 산식을 이용하여 처분으로 인해서 감소한 토지 장부금액(10,000)에 토지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5,000)을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거래를 산식을 이용(기말잔액 - 기초잔액 - 보유손익 - 기타변화)해서 산출

(\*5) 36,000 = 37,000(기말) - 2,000(기초) - (-)1,000(보유손익)

(\*6) 1,000 = 4,000(기말) - 3,000(기초)

(\*7) 3,000 = 5,500(기말) - 2,500(기초)

② Table 4

자산과 부채의 보유손익명세의 경우 재정운영표상의 보유손익을 발생계정과목별로 구분

- (\*8) 건물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4,000)  
 (\*9) 토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5,000)  
 (\*10) 외화현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1,000)

### 3) 정부운영표 작성

구 분	금 액
수익 (A)	(*11) 15,000
비용 (B)	(*12) (4,500)
순운영수지 (A-B)	10,500
비금융자산의순취득 (C)	(*13) (23,500)
순융자/순차입 (A-B-C)	34,000
금융자산의순취득 (D)	(*14) 37,000
부채의순부담 (E)	(*15) 3,000
검 증 (A-B-C-D+E)	-

- (\*11) 수익 15,000은 재정운영표상 수익 항목 중 보유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조세수입으로 구성  
 (\*12) 비용 4,500은 재정운영표 상 비용 항목 중 보유손실(외화환산손실)을 제외한 용역비용(3,000) 및 감가상각비(1,500)로 구성  
 (\*13) Table 3에 있는 비금융자산의순취득에 해당하는 금액  
 (\*14) Table 3에 있는 금융자산의순취득에 해당하는 금액  
 (\*15) Table 3에 있는 부채의순부담에 해당하는 금액



#### Tip

재정통계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 금액(10,500)과 Table 3 거래명세서에서 순자산변동 금액(10,500)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우리나라 일반정부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GFSM 2001에 따라 IMF에 제출하는 일반정부 연차보고서는 앞서 일반정부의 포괄범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정부는 중앙회계·기금 및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sup>12)</sup>, 시장성 기준<sup>13)</sup>, 특수기준<sup>14)</sup>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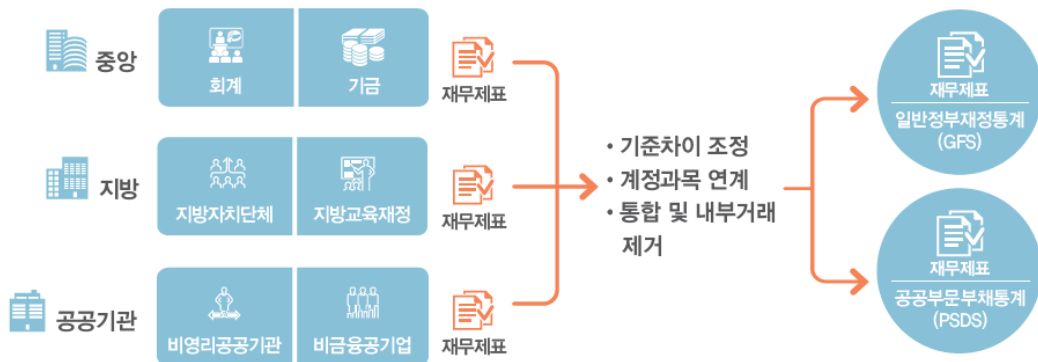
- 12)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13) 원가보상률이 시장성기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경우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인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14) 특수기준에는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판매비율 80% 이상)가 있으며, 특수기준에 해당되면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회계·기금(52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관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비영리공공기관 214개)을 포함하며, 중앙정부 기준의 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93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통계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각각의 재정통계 보고서를 취합해서 일반정부 단위로 재정통계를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2-4 | 재정통계 산출체계



중앙회계·기금의 경우 국가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GFS 재정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을 통해 재정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앙회계·기금의 재정통계와 중앙정부 산하 비영리공공기관의 기관별 재정통계를 합산한 후 중앙정부 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자산·부채, 수익·비용)를 상계 제거하여 중앙정부 재정통계 보고서를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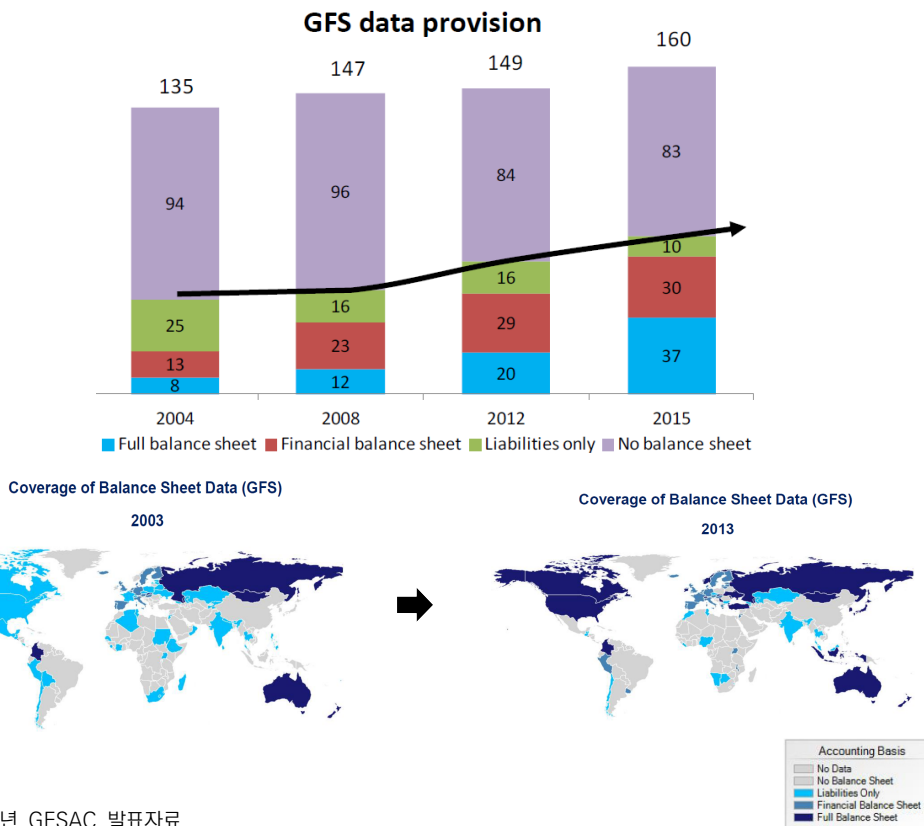
지방정부 재정통계는 행정안전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재정통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중앙정부 재정통계와 통합하고 내부거래(자산·부채, 수익·비용)를 제거하여 일반정부 단위의 연차보고서를 산출한다.

제2부

### 3. 국가별 GFS 재정통계 제출현황

GFS 재정통계의 국가별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10년간 GFS를 작성하는 국가는 2004년 135개국에서 2015년 16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Balance sheet<sup>15)</sup>를 작성하는 국가의 변화는 <그림2-5>와 같다.

그림 2-5 | Balance sheet<sup>16)</sup> 작성 변화



출처: 2017년 GFSAC 발표자료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는 Balance sheet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Full Balance sheet를 제출하는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37개국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Full balance sheet를 제출하고 있다.

15) 자산(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과 부채의 저량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의 한 형태

16) ■ No balance sheet: 자산, 부채 공시 없음    ■ Liabilities only: 부채만 공시  
 ■ Financial balance sheet: 부채와 금융자산 공시    ■ Full balance sheet: 부채,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 공시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 제 3 부 •

# PSDS 체계 및 구성항목

제1장 | PSDS 체계와 회계규칙

제2장 | PSDS 연차보고서



# 제1장 PSDS 체계와 회계규칙

## 1. PSDS 체계

PSDS(공공부문 부채통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만큼 부채상환능력 및 유동성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FS가 정부의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PSDS는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부채와 금융자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를 상품유형별,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율유형별, 채권자 거주지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3-1 | PSDS 부채의 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	소분류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현금 및 예금			외화 표시
	채무증권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융자			변동이자율
	보험·연금·표준화보증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
	기타미지급금			국외 채권자
만기별	원/잔존 만기별	단기	비망항목	우발부채
		장기		

## 2. PSDS 부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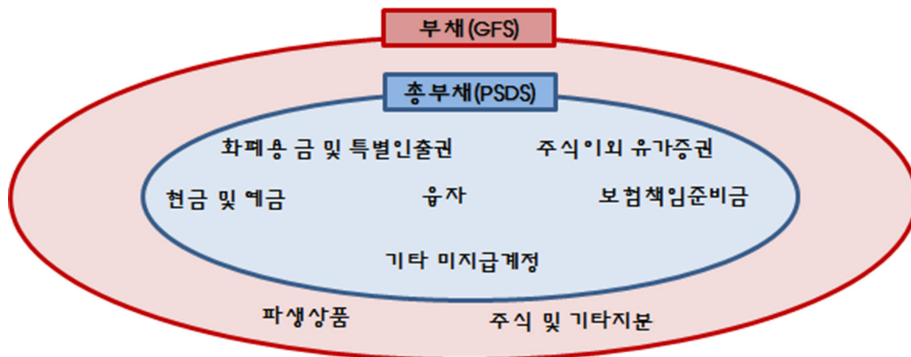
PSDS에서 다루는 부채는 정확히 표현하면 총채무(Total Gross Debt Liabilities)<sup>17)</sup>를 의미하며, GFS상의 부채와는 범위가 다르다. GFS상 부채(Liabilities)가 특정 상황에서

17) '총채무(total debt)' 혹은 '총확정부채(total debt liabilities)'로 지칭하기도 하며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구성됨.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총채무' 대신 '총부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이나 그 밖의 자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라면 채무(Debt)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GFS상 부채보다 다소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즉 PSDS 부채는 GFSM 2001의 개념체계상 모든 부채에서 원금 혹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주식 및 기타지분이나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이나 누적이자 없는 파생금융상품, 주식매입선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3-1 | GFS상 부채와 PSDS상 부채의 비교



또한 PSDS 부채에는 GFS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지급보증 등에 따른 명시적 우발부채, 미래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순지급채무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발사항 및 총당부채에 대한 처리방식**

- **우발자산**은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 및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
- 특정단위의 미래 부채 혹은 향후 지출을 위해 기업에서 별도로 적립한 **총당부채**는 재정통계에서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향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약정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음
- **신용여신, 신용장, 용자약정**은 미래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나, 용자형태의 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이 실제로 선지급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않음
- 향후 환경 정화, 폐쇄, 처리에 들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한 **환경부채**는 감안하지 않음

### 3. PSDS 회계규칙

#### (1) 포괄범위

PSDS에서는 정부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을 포괄범위로 한다. 다만, 정부의 지배를 받지만 해외자회사 등과 같이 다른 경제영역에 거주하는 기업은 일반정부 및 공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2) 발생주의

GFS와 마찬가지로 경제가치가 생성, 변형, 교환, 이동 및 소멸될 때 경제유량과 저량을 기록하며 경제유량을 기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발생주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3) 평가

GFS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과 부채는 재정상태표일(기준일)에 시장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처럼 보아 시장가치로 평가한다.

단, 채무증권을 제외한 채무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가치를 대응치로 사용하도록 한다.

채무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과 거래되는 채무상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거래되는 채무상품의 경우 관련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인 용자는 명목가치(당초 지급액에 이자발생분을 가산하고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로 기록하며, 예금과 기타 미지급금, 미수금은 명목가치로 계상하고 만일 명목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공정가치를 별도로 표기한다.

거래되는 채무상품은 체계적 금융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었거나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어음, 채권, 채무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명목가치와 시장가치<sup>18)</sup>를 모두 적용하여 평가한다.

18) 시장가치는 자발적 매입자가 자발적 매도자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기록의 일관성이 중요한 SNA와 GFS의 재정상태표에서도 시장가치를 선호하며, PSDS에서는 명목가치 역시 중요함

시장가치는 실현될 수 있는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명목가치는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척도로 어느 시점에서라도 명목가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 (4) 통합

PSDS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할 때에도 GFS와 같이 일련의 단위가 마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처럼 통합하여 부채통계를 산출한다. 따라서 통합되는 단위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와 채권·채무를 제거하여야 한다.

#### (5) 통화

다른 통화로 표시된 부채(또는 채무상품 형태의 금융자산)를 국내통화로 전환 시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배적인 시장환율을 적용한다.

### 4. PSDS 부채의 분류

PSDS상 부채는 채무상품 유형에 따라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기타미지급 계정으로 구성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채무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정보와 함께 표시한다.

그림 3-2 | 총부채와 순부채

	총부채(A)	채무상품 대응 금융자산(B)	순부채(A-B)
<b>총부채 합계</b>			
<b>상품 유형별</b>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용자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기타미지급/미수계정			

① 화폐용 금

화폐용 금은 순도 995/1000 이상의 금화, 금괴로서 통화당국\*에서 소유하며, 공적준비자산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 통화당국이란 통상 각 국가의 중앙은행을 지칭함

②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SDRs))

특별인출권이란 IMF가 도입하여 각 회원국에 할당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통화당국(중앙은행 등)에서 보유하며 회원국에 할당된 특별인출권은 회원국의 부채가 되고 특별인출권을 보유한 국가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외환 등을 조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금융청구권을 소유하게 된다.

③ 현금 및 예금(Currency and deposits)

현금은 명목가치가 고정된 지폐와 주화로 구성되며, 이를 발행하는 제도단위(중앙은행 등)의 부채로 인식된다. 한국은행 이외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는 현금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예금은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금융청구권(예금, 적금 등)으로 요구불예금, 수표, 정기예금 등이 있다.

④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채무증권은 양도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의 일정이 명시되며 단기증권, 은행인수어음, 신종기업어음, 양도가능예금증서, 전환사채를 비롯한 채권 및 차입증명서, 양도가능유자, 비참가적우선주, 자산담보부증권 등이 있다.

⑤ 융자(Loans)

융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직접 빌려주고 해당 자금이 자신의 자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 불가능한 문서를 수령할 때 창출되는 금융상품으로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주택담보유자, 무역신용과 선금을 충당하기 위한 융자, 환매조건부 매매, 금융리스로 창출되는 금융자산(금융리스채권) 및 금융부채(금융리스부채) 등이 있다.

단, 무역신용 및 선금과 이와 유사한 미지급금미수금은 융자가 아닌 기타미지급금미수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융자상품은 채무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 ⑥ 보험·연금·표준화보증 상품(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 상품은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수급권, 연금수급권, 연금관리기관에 대한 연기금 청구권, 표준화보증 충당부채로 구성된다.

보험사, 연기금, 표준화보증상품의 발행기관은 준비금, 수급권,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고, 보험 및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자가 고용주에 대해 갖는 금융청구권이며, 고용주가 고용인과 체결한 보수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정한 자금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연금수급권은 사전에 합의한 공식에 따라 결정되며,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부채는 약정된 급여의 현재가치와 같다.

확정기여형 연금의 연금수급권은 미래 연금 수급자의 부담금으로 획득한 금융자산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확정기여형 연금의 채무는 기금 자산의 현재 시장가치와 동일하다.

표준화보증은 유사한 성격의 소액용자에 대해 대량 발행되는 보증을 총칭하며, 수출(무역) 신용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증(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보험 등), 농어촌용자, 주택담보용자, 예치보증, 학자금용자보증 등을 포함한다.

표준화보증충당부채는 미지급보증에 대해 예상되는 지급요청액의 현재가치로,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수금액을 차감해서 평가한다.

### ⑦ 기타미수/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receivable)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거래인식에 따른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무역신용, 선금, 미지급금 및 미수금이 포함된다.

먼저 무역신용과 선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신용,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선금이나 착수금, 건설기간 동안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미지급금 및 미수금은 발생은 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세금, 배당금, 유가증권의 매입/매도대금, 임차료, 임금 및 보수, 사회보험료, 사회급여 등이 포함되며, 선납세금 등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급된 경우도 포함된다.

## 5. 주요 쟁점 사항

### (1)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산출방안

#### 1) 연금총당부채

##### ① 국제지침

연금제도는 그 적용대상에 따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와 **고용관련제도(employment-related scheme)**로 분류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고용관련제도는 부채로 인식한다.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의 지급약정에 대해 재정통계 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므로 순계규모를 비망항목으로 부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용관련제도의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s)을 비롯한 연금 지급의무는 각 제도 단위의 부채로 계상되며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항목으로 분류된다.

총당부채(provisions)는 확정적이냐 우발적이냐에 관계없이 거시통계에서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현황 및 산출방안

우리나라는 2011년 결산부터 국가재무제표에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총당부채를 산출 공표하였으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총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국제지침 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고용관련제도에 해당하므로 부채에 포함해야 하지만 해외사례를 비취볼 때 국가별로 연금부채(공무원, 군인연금 등) 운용방식 및 제도 등이 매우 상이하고, 부채의 산출방식과 통계 발표 방식 등도 서로 달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총당부채를 GFS 및 PSDS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연금총당부채를 PSDS상 부채로 계상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정도이다.

연금 관련 총당부채의 구체적 산출방식이나 공표방식은 국제적으로 아직 논의 중인 이슈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Eurostat과 OECD 공동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EU 국가의 경우 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잠재적인 부채 규모를 2018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2) 보증채무

### ① 국제지침

보증(guarantee)은 명시적 우발부채(explicit contingent liabilities)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일부 보증은 우발부채가 아닌 부채(liabilities)로 처리하고 있다.

보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 표준화보증(standardized guarantee scheme), 일회성보증(one-off guarantees)이 있다.

첫째 ‘파생상품형태의 보증’은 금융자산이나 부채(liabilities)에는 포함되지만 PSDS상 부채(debt liabilitie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표준화보증’은 유사한 성격의 소액용자에 대해 대량 발생하는 보증을 총칭하는 것으로 명시적 우발부채에 포함되며, 통계적으로 개별계약과 상관없이 부채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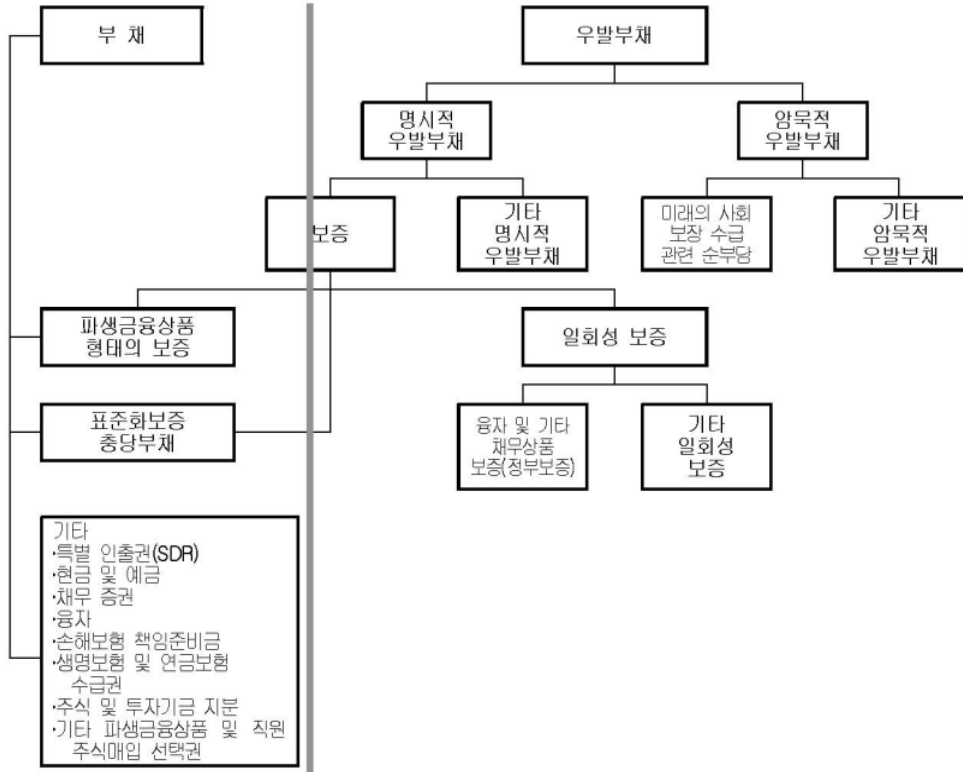
#### 표준화보증

회계기준과 달리 GFS 및 PSDS에서는 우발부채를 미래 특정한 별도의 우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표준화보증의 경우에는 각 개별 계약이 우발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화보증 부채계상을 유보하고 보증내역만 부기사항으로 공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일회성보증’은 채무상품이 매우 특징적이어서 이와 관련된 위험수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보증이다. 표준화 보증과 달리 일회성 보증은 개별적이며, 보증인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PSDS에서는 일회성 보증 중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에 대한 보증의 저장(stock)을 명목가치로 비망항목에 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일회성 보증은 여타 명시적 우발부채와 함께 ‘명시적 우발부채와 미래 사회보장급여 순부채표’에 적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3-3 | 거시경제 통계상 부채 및 우발부채



② 우리나라 현황 및 산출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보증채무 이외에도 29개 공공기관(LH, 수자원공사 등)이 개별 근거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 시 정부보증채무, 공기업 지급보증 등 대부분의 보증채무가 자동적으로 부채에 포함되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보증은 우발부채로서 다른 부채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부기(보증대상 기관과 규모를 별도의 양식으로 명기)를 통해 표시하고 있다.

표 3-2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지급보증 규모

(단위: 조원)

	2015년(A)	2016년(B)	증감(B-A)
■ 중앙 회계·기금	144.2	159.4	15.2
■ 지방자치단체	1.1	1.0	(0.1)
■ 비영리공공기관	11.7	11.1	(0.6)
■ 비금융공기업	2.4	1.7	(0.7)
합 계	159.4	173.3	13.9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주요내용」

## (2) 중앙·지방·공공기관 회계기준 차이조정

### 1) 회계기준 차이 현황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각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 부채 통합 시 회계기준으로 인한 차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3-3 | 회계기준 차이(예시)

구 분	국제기준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K-IFRS
	GFSM 2001	PSDS			
세입세출외현금	인식	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파생상품	포함	제외	인식	NA	인식
주식및기타지분	포함	제외	NA	NA	자본
연금충당부채	인식	인식	인식	NA	인식
충당부채	미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인식
사회보장의무	미인식	미인식	일부 인식	NA	NA

### 2) 회계기준 차이 조정

각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유형의 중요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표준템플릿을 규정하여 기관들이 계정 코드매핑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 제2장 PSDS 연차보고서

### 1. PSDS 연차보고서에 대한 이해

#### (1) PSDS 연차보고서

PSDS에서는 공공부문 부채를 표시하기 위해 상품유형별 총부채 및 순부채의 명목가치와 시장가치 요약표와 함께 만기별(원만기, 잔존만기), 표시통화별(원화, 외화), 이자율 유형별(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채권자거주지 유형별(국내, 해외)로 분류한 세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부채의 정보를 상품유형별로 제시한 뒤, 만기, 표시통화, 이자율유형, 채권자거주지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며 부채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도 함께 보여준다.

잔존 만기 기준 통계는 공공부문의 채무상환일이 언제 도래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만기가 임박한 상환일 관련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 잔존 만기 기준 통계는 부채관리에도 사용된다. 원 만기 기준 통계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차입 시장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채무상품을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분류한 정보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변동이자율 채무상품은 이자율이 LIBOR, 가격지수, 특정 상품가격, 특정 금융상품 가격 등 시장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준지수에 연계된 상품이다. 그 밖의 모든 채무상품은 고정이자율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자율이 1년 이상의 주기로 조정된다면 고정이자율로 간주한다.

그림 3-4 |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부채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부채의 시장가치 <sup>19)</sup>		
	Gross debt (liabilities in the form of debt instruments) (a) 총부채(채무 상품 형태의 부채) (a)	Financial assets correspondi ng to debt instruments (b)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b)	Net debt (c) =(a)-(b)  순부채 (c) = (a)-(b)	Gross debt (liabilities in the form of debt instruments) (a) 총부채(채무 상품 형태의 부채) (a)	Financial assets correspondi ng to debt instruments (b)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 (b)	Net debt (c) = (a)-(b)  순부채 (c) = (a)-(b)
<b>Total 총계</b>						
<b>By type of debt instrument 상품 유형별</b> Monetary gold 화폐용 금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receivable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b>By original maturity 원 만기별</b> Short-term, original maturity 단기 Long-term, original maturity 장기 <b>By remaining maturity 잔존 만기별</b> Short-term, remaining maturity 단기 Long-term, remaining maturity 장기						
<b>By currency of denomination 표시 통화별</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b>By interest rate 이자율 유형별</b> Fixed-rate instruments 고정이자율 Variable-rate instruments 변동이자율						
<b>By residence of the creditor 채권자 거주지별</b> 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 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						

19) '시장가치'란 시장가격으로 산정되는 채무증권을 의미하며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함. 그 밖의 모든 채무상품은 명목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됨

## (2) PSDS 부기사항

PSDS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국가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보증규모

공공부문의 보증현황은 보증을 제공받는 기관이 어느 제도부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공, 민간, 국외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2)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 현황

파생상품은 GFS와 달리 PSDS상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의 시장가격(평가금액) 등을 부기로 표시한다.

###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수당충당부채

PSDS에서는 고용관련제도의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 등의 연금지급의무는 각 제도단위의 부채로 계상하며 '보험·연금·표준화보증'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도 GFS 2001 및 PSDS 기준과 달리 직역연금 관련 충당부채를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IMF GFS year book, OECD)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국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시 부채에서는 제외하지만,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기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다.

### 4) 사회보장기금 우발부채

PSDS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등)의 운용에 따른 잠재적인 우발부채 규모를 산정해서 부기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유예되는 상황(EU 국가의 경우 '18년 3월 발표 계획)이다.

### 5) 표준화보증충당부채

PSDS에서의 표준화보증은 유사한 성격의 소액용자에 대해 대량으로 발행되는 보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유사한 특징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며,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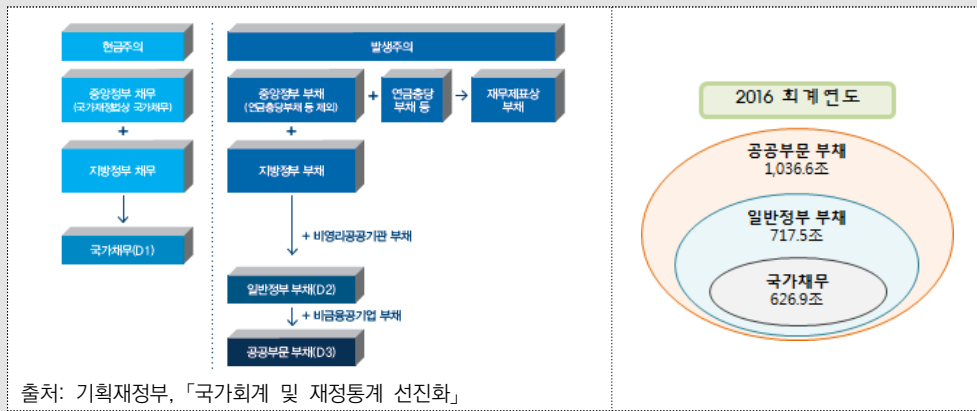
PSDS에서는 보증에 따라 예상되는 청구액에서 예상되는 회수액을 차감하여 재정상태표상 '보험·연금·표준화보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화보증과 관련한 부채인식 여부는 국제추세 검토 후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는 보증내역만 지급보증규모에 포함하여 부기표시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D1, D2, D3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의 3가지 유형으로 관리함

- 국가채무(D1)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니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함.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됨
-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함.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 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 주로 사용됨
- 공공부문 부채(D3)는 PSDS에 따른 부채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의미함



## 2. 우리나라 PSDS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PSDS에 따라 OECD에 제출하는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포괄범위는 GFS 재정통계 작성대상인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다. 따라서 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산출되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통계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중앙비금융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부채통계 보고서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방비금융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부채통계 보고서를 담당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단위로 작성된 각각의 부채통계 보고서를 취합하여 공공부문으로 부채통계를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회계·기금의 경우 국가결산자료와 별도의 부채통계 템플릿을 활용하여 부채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부채통계 템플릿 작성을 통해 부채통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각 부문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중앙공공부문 부채통계 보고서를 산출한다.

지방공공부문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로부터 수령한 부채통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중앙공공부문 부채통계와 내부거래 제거 및 통합과정을 거쳐 PSDS 연차보고서를 산출한다.

### 3. 국가별 PSDS 부채통계 제출현황

2015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국가 중 27개국이 일반정부기준 부채통계(D2)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포르투갈,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7개국이 공공부문 부채통계(D3)를 제출하고 있다.

그림 3-5 | OECD 제출현황 2015 General government debt



제3부



201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 제 4 부 •

#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

제1장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제2장 | 공공부문 부채통계 분석



# 제1장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1. GFSM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

\*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

### (1)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GFSM 2001에 따른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정부운영표는 다음과 같음

표 4-1 |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14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증감률(%)
□ 총수입(A)	504.9	534.6	568.0	33.5	6.3
(GDP대비, %)	(34.0)	(34.2)	(34.7)	(0.5)	(1.5)
○ 조세	270.5	291.2	320.7	29.5	10.1
○ 사회보험료	102.6	109.4	117.7	8.3	7.6
○ 출연	0.0	0.0	0.0	△0.0	△70.7
○ 기타수익	131.8	134.0	129.6	△4.4	△3.2
□ 총지출 [(1)+(2)]	484.1	515.1	525.2	10.1	2.0
(GDP대비, %)	(32.6)	(32.9)	(32.1)	(△0.9)	(△2.6)
(1) 비용(B)*	442.8	470.2	482.9	12.7	2.7
(GDP대비, %)	(29.8)	(30.1)	(29.5)	(△0.6)	(△1.9)
○ 피용자보수	90.4	94.9	99.6	4.7	5.0
○ 재화와용역의사용	92.2	99.1	106.4	7.4	7.4
○ 고정자본소비	24.7	26.6	27.5	0.9	3.6
○ 이자	22.6	22.2	21.0	△1.2	△5.4
○ 보조	70.0	76.6	74.3	△2.3	△2.9
○ 출연	0.6	0.7	0.1	△0.5	△78.8
○ 사회급여	92.6	100.1	108.9	8.8	8.8
○ 기타비용	49.7	50.1	44.9	△5.2	△10.4
(2) 비금융자산순취득(C)*	41.3	44.9	42.3	△2.6	△5.8
(GDP대비, %)	(2.8)	(2.9)	(2.6)	(△0.3)	(△10.0)
□ 순운영수지(A-B)	62.1	64.4	85.1	20.8	32.2
(GDP대비, %)	(4.2)	(4.1)	(5.2)	(1.1)	(26.3)
□ 순융자차입(A-B-C)	20.8	19.5	42.9	23.4	119.8
(GDP대비, %)	(1.4)	(1.2)	(2.6)	(1.4)	(109.9)

주: \*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1) 총수입

① (총수입 구성) 2016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568.0조원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453.4조원, 지방정부 250.7조원, 내부거래 △136.1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됨

표 4-2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총수입

(단위: 조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 수입	453.4	205.4	59.6	△14.3	250.7	△136.1	568.0
(GDP대비, %)	(27.7)	(12.5)	(3.6)	(△0.9)	(15.3)	(△8.3)	(34.7)
○ 조세	243.4	77.3	-	-	77.3	-	320.7
○ 사회보험료	117.7	-	-	-	-	-	117.7
○ 출연	5.0	86.3	55.9	△14.3	128.0	△133.0	0.0
○ 기타수익	87.2	41.8	3.7	-	45.5	△3.1	129.6

② (총수입 증감)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33.5조원(6.3%) 증가한 568.0조원이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임

- i. 2016년 조세수입은 320.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5조원(10.1%)이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수입은 117.7조원으로 전년 대비 8.3조원(7.6%)이 증가함
- ii. 조세수입의 주요 증감을 보면, 중앙은 25.2조원(11.6%), 지방에서는 4.3조원(5.9%) 증가하였는데, 중앙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주로 증가하였고, 지방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함

그림 4-1 | 중앙정부 조세수입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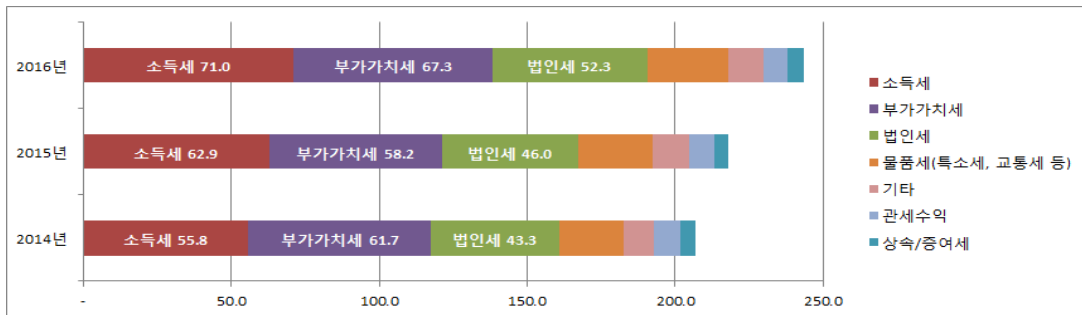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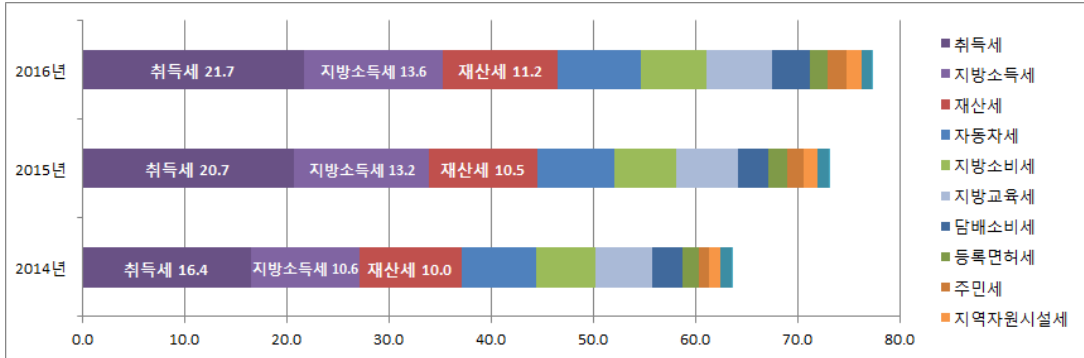


그림 4-2 | 지방정부 조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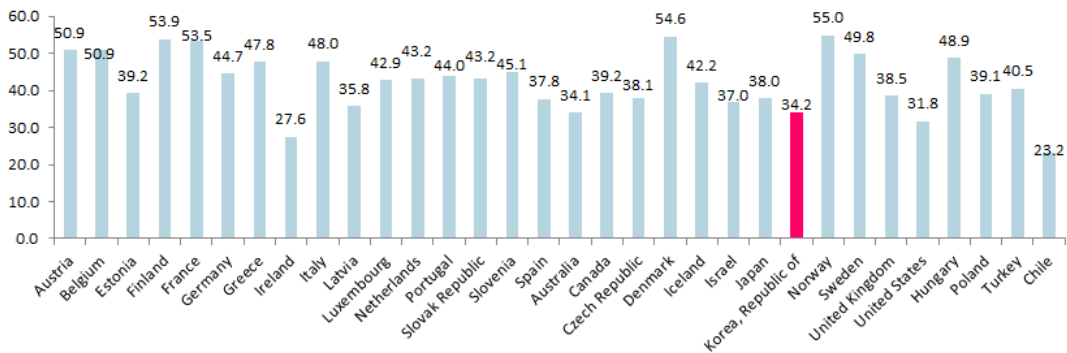
(단위: 조원)



③ (총수입의 국제비교) 2015회계연도의 국가별 일반정부 총수입을 비교해보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 2015년 총수입의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출처: IMF GFS Year Book, 2015

## 2) 총지출

① (총지출 구성) 총규모는 525.2조원(비용 482.9조 + 비금융자산순취득 42.3조)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420.7조원, 지방정부 240.6조원, 내부거래 △136.1조원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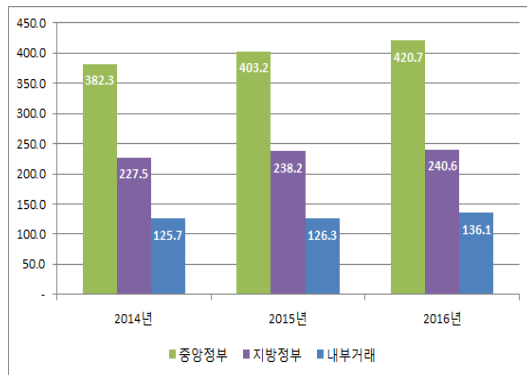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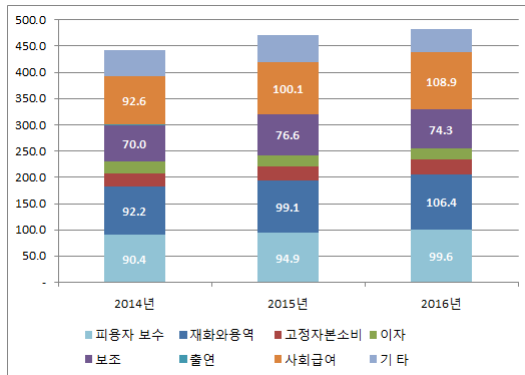
i. 총지출을 계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재화와용역의사용 106.4조원(비중 20.3%), 사회급여 108.9조원(비중 20.7%), 피용자보수 99.6조원(비중 19.0%), 보조 74.3조원(비중 14.2%), 비금융자산순취득 42.3조원(비중 8.1%) 등으로 구성

표 4-3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총지출

(단위: 조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 재정	내부거래	합계		
□ 지출(A+B)	420.7	193.8	61.1	△14.3	240.6	△136.1	525.2
(GDP대비, %)	(25.7)	(11.8)	(3.7)	(△0.9)	(14.7)	(△8.3)	(32.1)
A. 비용	409.2	165.6	58.5	△14.3	209.8	△136.1	482.9
○ 피용자보수	43.0	27.0	29.6	-	56.6	-	99.6
○ 재화와용역	60.6	46.2	2.7	-	48.9	△3.1	106.4
○ 이자	19.6	0.9	0.5	-	1.4	△0.1	21.0
○ 보조	17.5	48.5	8.3	-	56.8	-	74.3
○ 출연	128.1	17.1	2.2	△14.3	5.0	△133.0	0.1
○ 사회급여	108.9	0.0	-	-	0.0	-	108.9
○ 기 타	31.4	25.9	15.1	-	41.0	-	72.4
B. 비금융자산 순취득	11.5	28.2	2.6	-	30.8	-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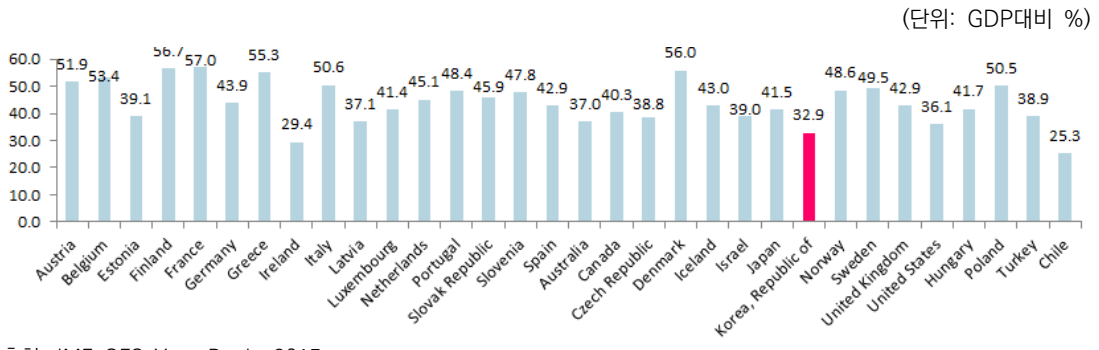
(단위: 조원)



② (총지출 증감) 전년 대비 총 10.1조원(2.0%) 증가했으며, 주요 계정별 증감을 보면, 재화와용역의사용 7.4조원(7.4%), 피용자보수 4.7조원(5.0%), 사회급여 8.8조원(8.8%)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

③ (총지출의 국제비교) 2015회계연도의 국가별 일반정부 총지출을 비교해보면 <그림 4-4>와 같음

그림 4-4 | 2015년 총지출의 국제비교



출처: IMF GFS Year Book, 2015

### 3) 재정수지

① (재정수지) '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2.9조원 흑자(GDP 대비 2.6%)로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32.7조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10.2조원 흑자를 기록

표 4-4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조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합계	
□ 재정수지	32.7	11.6	△1.4	10.2	42.9
(GDP대비, %)	(2.0)	(0.7)	(△0.1)	(0.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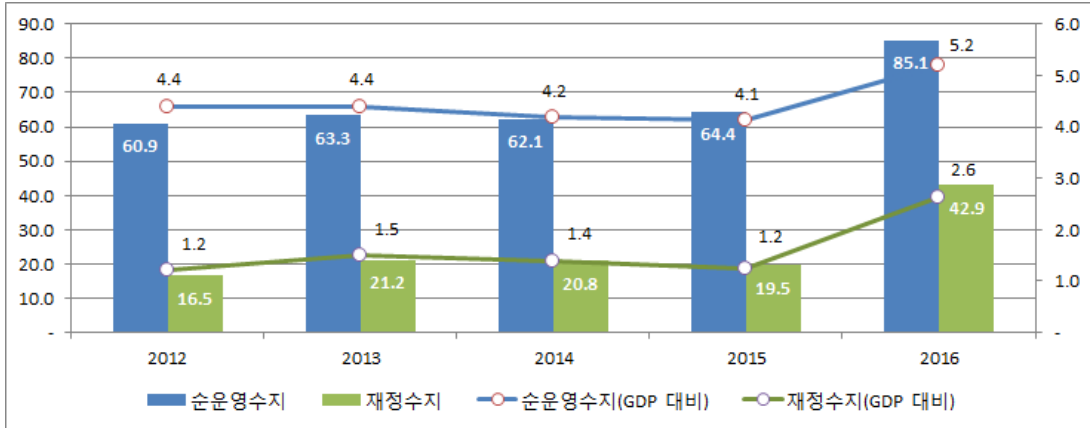
주: '16년 GDP 규모: 1,637.4조원(한국은행, 잠정)

정부운영에 따른 결과인 재정수지는 크게 '순운영수지'와 '순용자차입'으로 구분

- i. **순운영수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6년 우리나라의 순운영수지는 85.1조원 흑자(GDP 대비 5.2%)를 기록하여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ii. **순용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6년 우리나라의 '순용자차입'은 42.9조원 흑자(GDP 대비 2.6%)를 기록함

그림 4-5 |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순유자·차입)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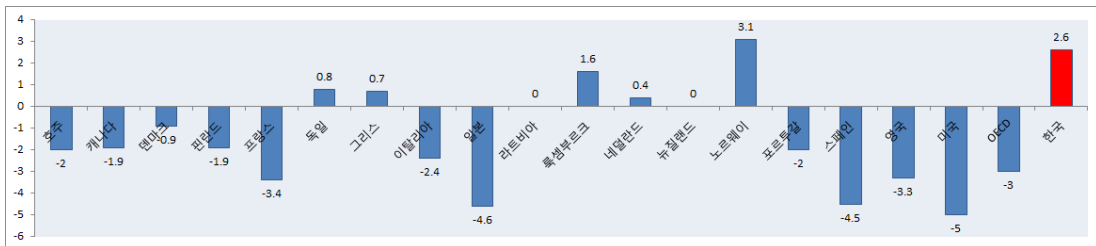
(단위: 조원, %)



② (국제비교) 국가 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는 ‘순유자·차입’으로,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평균 △3.0% 대비 양호한 편임

그림 4-6 | OECD 국가별 재정수지

(단위: GDP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01 database('17.06)

정책분석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매우 큰 편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순유자·순차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일반정부의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해서 관리하게 되면 정책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GFSM 2001에 따른 3개년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및 2016회계연도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음

표 4-5 |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 %p)

	2014년	2015년(A)	2016년(B)	증감(B-A)	증감률(%)
□ 자산	<b>3,015.2</b>	<b>3,168.7</b>	<b>3,335.8</b>	<b>167.1</b>	<b>5.3</b>
(GDP대비, %)	(202.9)	(202.6)	(203.7)	(1.1)	(0.6)
○ 비금융자산	<b>1,912.8</b>	<b>1,965.4</b>	<b>2,036.5</b>	<b>71.2</b>	<b>3.6</b>
(GDP대비, %)	(128.7)	(125.7)	(124.4)	(△1.3)	(△1.0)
고정자산	1,070.1	1,093.1	1,129.0	35.9	3.3
재고자산	14.6	15.0	15.3	0.3	2.1
비생산자산	828.1	857.2	892.2	34.9	4.1
○ 금융자산	<b>1,102.4</b>	<b>1,203.3</b>	<b>1,299.3</b>	<b>96.0</b>	<b>8.0</b>
(GDP대비, %)	(74.2)	(76.9)	(79.4)	(2.4)	(3.1)
현금및예금	198.4	216.2	232.3	16.1	7.5
채무증권	143.2	139.7	148.2	8.5	6.1
융자	161.6	162.9	167.5	4.5	2.8
주식및기타지분	435.9	506.1	566.5	60.3	11.9
파생금융상품	2.9	1.7	2.2	0.5	26.9
기타미수계정	160.5	176.6	182.6	6.0	3.4
□ 부채	<b>621.7</b>	<b>677.3</b>	<b>718.9</b>	<b>41.6</b>	<b>6.1</b>
(GDP대비, %)	(41.8)	(43.3)	(43.9)	(0.6)	(1.4)
현금및예금	-	-	-	-	-
채무증권	484.8	524.8	554.7	29.9	5.7
융자	69.7	93.5	100.2	6.8	7.2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0.0	5.4
보험책임준비금	-	0.0	0.0	0.0	16.6
파생금융상품	0.7	0.8	1.0	0.3	32.8
기타미지급계정	66.1	57.9	62.6	4.7	8.1

제4부

표 4-6 | 2016회계연도 일반정부 자산과 부채

(단위: 조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 자산	<b>2,090.9</b>	<b>1,159.9</b>	<b>97.1</b>	<b>△1.6</b>	<b>1,255.4</b>	<b>3,335.8</b>
(GDP대비, %)	(127.7)	(70.8)	(5.9)	(△0.1)	(76.7)	(203.7)
○ 비금융자산	911.5	1,037.8	87.2	-	1,125.1	2,036.5
○ 금융자산	1,179.5	122.1	9.9	△1.6	130.4	1,299.3
□ 부채	<b>662.6</b>	<b>48.5</b>	<b>19.9</b>	<b>△1.6</b>	<b>66.8</b>	<b>718.9*</b>
(GDP대비, %)	(40.5)	(3.0)	(1.2)	(△0.1)	(4.1)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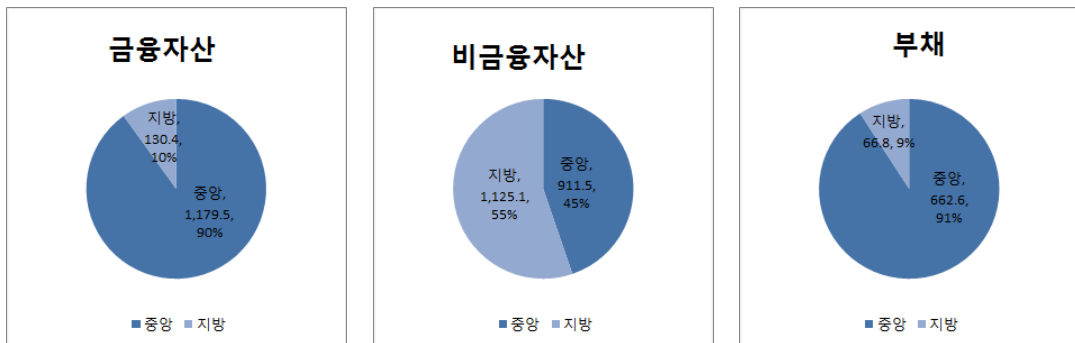
주: 일반정부 부채(D2)와 '파생상품', '주식및기타지분'에 따라 1.4조원 차이 발생

일반정부 자산(비금융자산+금융자산)은 3,335.8조원(GDP 대비 203.7%)으로, 비금융자산은 2,036.5조원(비중 61.0%), 금융자산은 1,299.3조원(비중 39.0%)이며, 일반정부 부채는 718.9조원(GDP 대비 43.9%)임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2016년 부채는 전기 대비 41.6조원(6.1%)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96.0조원(8.0%) 및 71.2조원(3.6%) 증가함

그림 4-7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별 자산·부채

(단위: 조원, %)



- ① (비금융자산) 총 2,036.5조원(GDP 대비 124.4%)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911.5조원 (GDP 대비 55.7%), 지방정부 1,125.1조원(GDP 대비 68.7%)으로 구성
- ② (금융자산) 총 1,299.3조원(GDP 대비 79.4%)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1,179.5조원 (GDP 대비 72.0%), 지방정부 130.4조원(GDP 대비 8.0%)으로 구분
- ③ (부채) 총 718.9조원(GDP 대비 43.9%)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662.6조원(GDP 대비 40.5%), 지방정부 66.8조원(GDP 대비 4.1%)으로 구분

## 제2장 공공부문 부채통계 분석

### 1. PSDS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통계

#### (1)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1)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6조원, GDP 대비 63.3%임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717.5조원, GDP 대비 43.8%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4조원, GDP 대비 23.6%임

\* 공공부문 부채(D3, 1,036.6조) = 일반정부 부채(D2, 717.5조) + 비금융공기업 부채(386.4조) - 내부거래(67.4조)

표 4-7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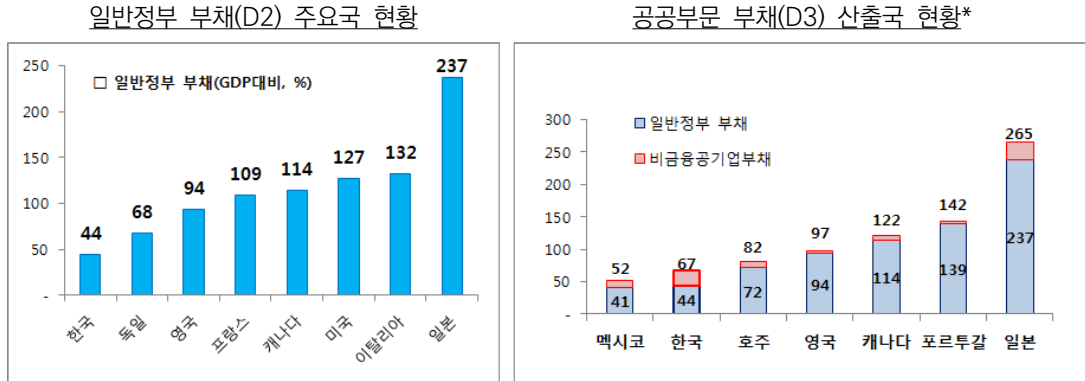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규모	GDP대비
공공부문 부채(A+B-C)	1,003.5	64.2	1,036.6	63.3	33.0	△0.9
A. 일반정부 부채(a+b-c)	676.2	43.2	717.5	43.8	41.3	0.6
a. 중앙정부	620.5	39.7	661.2	40.4	40.7	0.7
b. 지방정부	65.0	4.2	66.8	4.1	1.8	△0.1
c. 내부거래	9.3	0.6	10.5	0.6	1.2	0.1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398.9	25.5	386.4	23.6	△12.5	△1.9
a. 중앙 공기업	358.2	22.9	350.9	21.4	△7.3	△1.5
b. 지방 공기업	47.7	3.1	43.6	2.7	△4.1	△0.4
c. 내부거래	7.0	0.4	8.1	0.5	1.1	0.1
C. 내부거래	71.6	4.6	67.4	4.1	△4.2	△0.5

2) OECD 주요국 대비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편임

① (일반정부)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43.8%로 해외 주요국(OECD 평균은 115.5%) 대비 낮은 편임

② (공공부문)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

그림 4-8 |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주요국 현황



주: \*D3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통계(OECD)로, 한국의 경우 내부거래 제거 시 63.3%

## (2) 부채 항목별 현황

### 1) 공공부문 부채 계정별 현황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53.8조원, 차입금 113.2조원, 기타 미지급금 169.6조원으로 구성되며, 채무증권이 72.6%를 차지함

표 4-8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계정별 현황

(단위: 조원, %, %p)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채무증권	733.1	(73.0)	753.8	(72.6)	20.7	(△0.4)
■ 차입금	109.5	(11.0)	113.2	(11.0)	3.7	(0.0)
■ 기타미지급금	161.0	(16.0)	169.6	(16.4)	8.6	(0.4)
합 계	1,003.5	(100.0)	1,036.6	(100.0)	33.0	-

주요 증감을 보면, 채무증권이 전년 대비 20.7조원 증가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33.9조원)에 기인함

2) 공공부문부채 성질별 현황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의 성질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9 |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2015년(A)		2016년(B)		증감(B-A)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 원 만기별						
단기	147.0	(14.6)	157.3	(15.2)	10.3	(0.6)
장기	856.5	(85.4)	879.3	(84.8)	22.7	(△0.6)
■ 잔존 만기별						
단기	248.3	(24.7)	271.6	(26.2)	23.3	(1.5)
장기	755.3	(75.3)	764.9	(73.8)	9.7	(△1.5)
■ 표시 통화별						
원화	950.6	(94.7)	983.2	(94.8)	32.5	(0.1)
외화	52.9	(5.3)	53.4	(5.2)	0.5	(△0.1)
■ 이자율 유형별						
고정	953.0	(95.0)	984.8	(95.0)	31.8	(0.0)
변동	50.5	(5.0)	51.8	(5.0)	1.2	(0.0)
■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896.3	(89.3)	921.3	(88.9)	24.9	(△0.4)
국외	107.2	(10.7)	115.3	(11.1)	8.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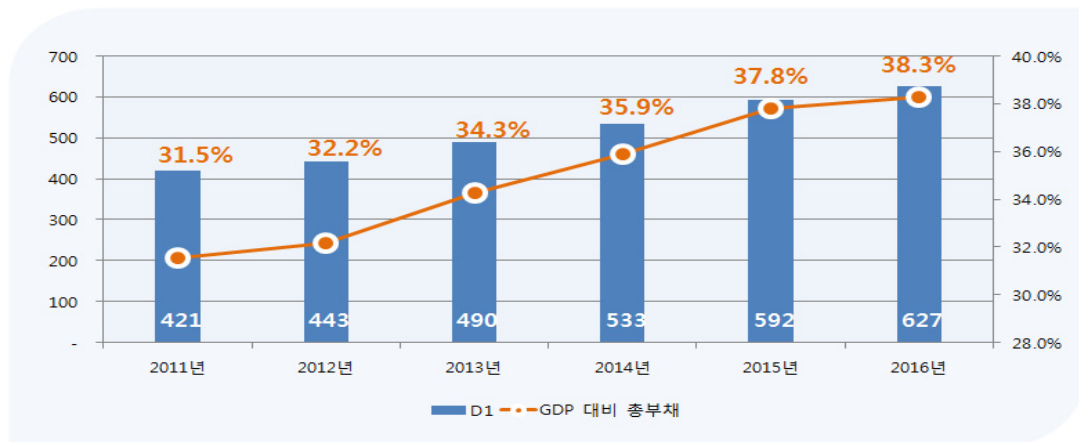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추세분석

1) D1의 현황 및 추세분석

그림 4-9 | D1의 현황 및 추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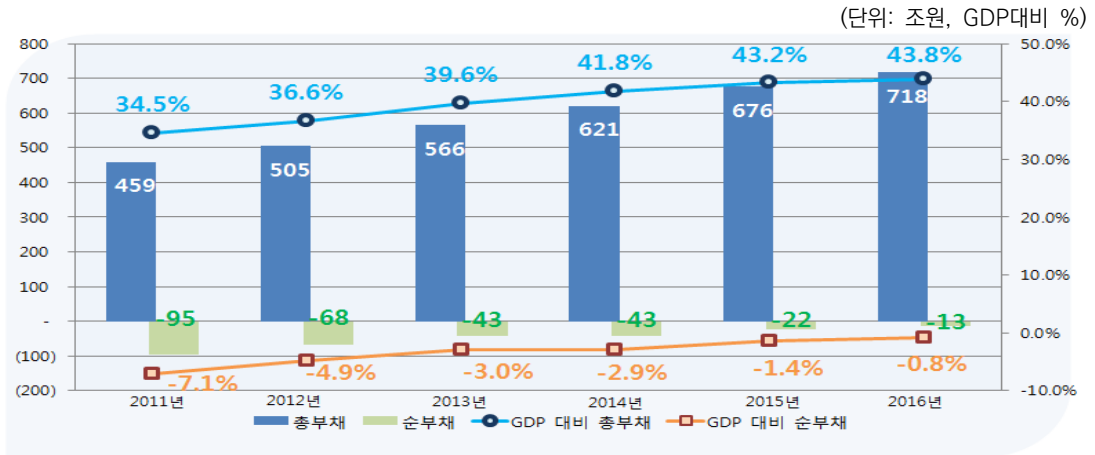
(단위: 조원, GDP대비 %)



국가채무(D1)의 연도별 GDP 대비 비율 증감은 다음과 같음  
 ('13년) 2.1%p → ('14년) 1.6%p → ('15년) 2%p → ('16년) 0.5%p

2) D2의 현황 및 추세분석

그림 4-10 | D2의 현황 및 추세분석



일반정부 부채(D2)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연도별 GDP 대비 비율 증감은 다음과 같음

('13년) 3.0%p → ('14년) 2.2%p → ('15년) 1.4%p → ('16년) 0.6%p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로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중앙정부 부채

i. (중앙회계·기금) 전년(579.2조원) 대비 41.5조원 증가한 620.7조원

\*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인한 국고채 증가(33.9조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6.8조원) 증가 등

ii. (비영리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1.6조원) 부채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

표 4-10 | 중앙정부 부문별 부채

(단위: 조원)

	2015년(A)	2016년(B)	증감(B-A)
◆ 중앙정부 부채	620.5	661.2	40.7
■ 중앙회계·기금	579.2	620.7	41.5
■ 비영리공공기관	52.8	52.6	△0.2
■ 내부거래	△11.5	△12.1	△0.6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지방정부 부채

i. (자치단체) 전년(47.5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한 47.8조원

\* 자치단체별로는 서울(1.0조원), 부산(0.3조원) 등은 증가하였으며, 경남(△0.5조원), 전북(△0.2조원), 제주도(△0.1조원) 등은 감소

ii. (교육자치단체) 전년(17.9조원) 대비 2.0조원 증가한 19.9조원

\* 공자기금 차입금 1.4조원 증가

iii.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대비 거의 변동 없음

표 4-11 | 지방정부 부문별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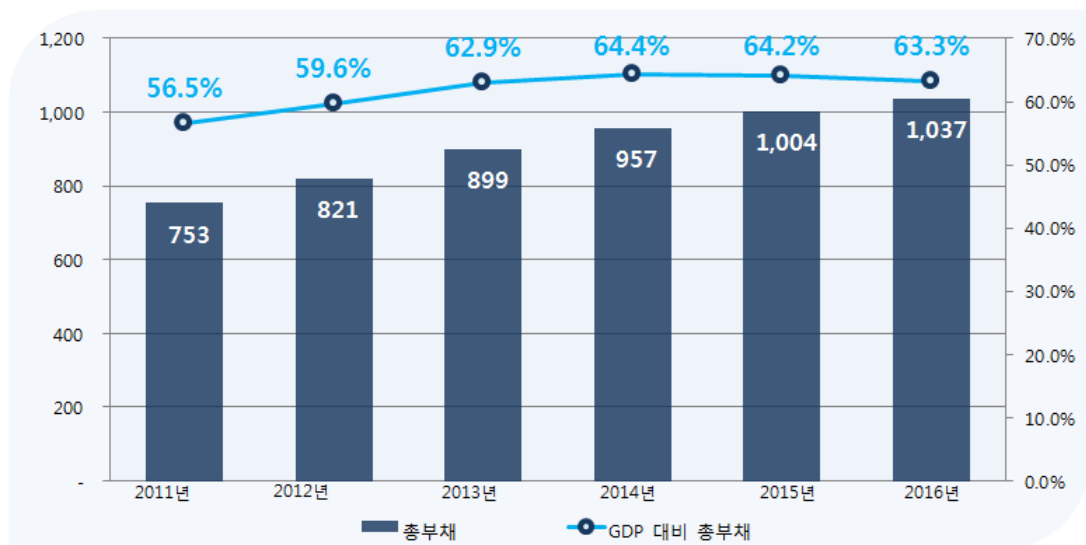
	2015년(A)	2016년(B)	증감(B-A)
◆ 지방정부 부채	65.0	66.8	1.8
■ 지방자치단체	47.5	47.8	0.3
■ 교육자치단체	17.9	19.9	2.0
■ 비영리공공기관	1.0	1.0	0.0
■ 내부거래	△1.4	△2.0	△0.6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D3의 현황 및 추세분석

그림 4-11 | D3의 현황 및 추세분석

(단위: 조원, GDP대비 %)



공공부문 부채(D3)는 2016회계연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GDP 대비 비율 증감은 다음과 같음

(‘13년) 3.3%p → (‘14년) 1.5%p → (‘15년) △0.2%p → (‘16년) △0.9%p

일반정부 외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주요 증감원인은 다음과 같이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음

① (중앙) 주요 공기업\*의 부채 감축으로 전년 대비 7.3조원 감소

\* 한전 및 발전자회사(△3.7조원), 토지주택공사(△2.4조원), 한국가스공사(△1.6조원) 등

② (지방)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 등에 따른 부채감축 이행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함에 따라 전년 대비 4.1조원 감소함

\* 경기도시공사(△1.4조원), SH공사(△0.8조원), 인천도시공사(△0.4조원) 등

표 4-12 | 비금융공기업 부문별 부채

(단위: 조원)

	2015년(A)	2016년(B)	증감(B-A)
◆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9	386.4	△12.5
▪ 중앙 공기업	358.2	350.9	△7.3
▪ 지방 공기업	47.7	43.6	△4.1
▪ 내부거래	△7.0	△8.1	△1.1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017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 부록

부록1 | 계정과목 해설

부록2 | 재정통계 Q&A

부록3 | 2016년 공공부문 포괄범위 산정 결과

부록4 | GFSM 1986과 GFSM 2001 비교

부록5 | 공공부문 부채통계 보고서



## I 수익

### 1. 수익의 정의

수익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크게 정부단위가 부과하는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 2. 수익의 분류

조세는 주로 과세기반에 따라, 출연은 출연의 원천에 따라, 기타소득은 그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 (1) 조세

일반정부가 수취하는 강제적이고 비대가적 성격의 이전으로, 일반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과세기반에 따라 ‘소득, 이익 및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급여 및 임금에 대한 조세’, ‘재산에 대한 조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국제무역과 거래에 대한 조세’, ‘기타조세’로 구분된다.

##### 1) 소득, 이익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개인(1111) 또는 기업 및 기타사업체(1112)의 납부로 인해 발생되며,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미분류항목(1113)으로 분류된다.

〈GFS 계정과 국가회계 계정의 맵핑(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국가회계 계정명
111	소득, 이익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1111	개인납부	소득세수입 및 관련 계정
1112	기업 및 기타사업체 납부	법인세수입 및 관련 계정

## 2) 급여 및 임금에 대한 조세

지급된 임금과 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피용자당 고정액으로 부과되어 사업체가 납부하는 조세로, 우리나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성격의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 3) 재산에 대한 조세

부(재산)의 사용, 소유 또는 이전에 대해 납부하는 조세로 정기적이나 일회성으로, 또는 소유권 변경 시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반복적 조세(1131), 순부에 대한 반복적 조세(1132), 유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1133), 자본과세(1135), 재산에 대한 기타 반복적 조세(1136)로 구분된다.

〈GFS 계정과 국가회계 계정의 맵핑(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국가회계 계정명
113	재산에 대한 조세	
1131	부동산에 대한 반복적 조세	종합부동산세수익 및 관련계정, 토지초과이득세수익 및 관련 계정
1133	유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수익 및 관련계정, 증여세수익 및 관련 계정
1135	자본과세	재평가세수익 및 관련 계정

## 4)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재화의 생산·판매·이전·임대·인도와 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또는 자체 소비나 자본 형성을 위해 이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되는 조세이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 조세(1141), 물품세(1142), 재정 독점기업의 이익(1143), 특정 서비스에 대한 조세(1144), 재화의 사용 및 재화 사용이나 활동 수행의 허가에 대한 조세(1145),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기타 조세(1146)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GFS 계정과 국가회계 계정의 맵핑(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국가회계 계정명
114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1141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 조세	부가가치세수익 및 관련 계정
1142	물품세	특별소비세수익/주세수익/교통·에너지·환경세수익/ 개별소비세수익 및 관련 계정
1144	특정 서비스에 대한 조세	전화세수익 및 관련 계정

5) 국제무역과 거래에 대한 조세

국가 간의 무역거래 발생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관세 및 기타 수입세(1151), 수출세(1152), 수출 또는 수입 독점기업의 이익(1153), 환차익(1154), 외환거래세(1155), 국제무역과 거래에 대한 기타 조세(1156)로 분류된다.

〈GFS 계정과 국가회계 계정의 맵핑(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국가회계 계정명
115	국제무역과 거래에 대한 조세	
1151	수입관세	관세수익 및 관련 계정

6) 기타조세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과세기준 또는 기준들에 따라 주로 부과되는 조세와 미확인 조세를 총칭하며, ‘기업 납부 기타조세(1161)’와 ‘기업외 납부 기타조세’ 또는 ‘미확인 조세(1162)’로 세분화된다.

〈GFS 계정과 국가회계 계정의 맵핑(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국가회계 계정명
116	기타조세	
116	기타조세*	부당이득세수익/ 인지세수익/ 방위세수익/ 교육세수익/ 농어촌특별세수익/ 기타내국세수익 및 관련 계정

주: \*1161, 1162 하위계정으로 구분할 수 없어 116 상위계정으로 집계

(2)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명시적·암묵적으로 납입하거나 피용자·자영업자·비취업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제도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장보험료와 기타사회보험료로 구분한다.

1) 사회보장보험료

급여, 임금 총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납부자에 따라 피용자보험료와 고용주보험료 등으로 구분한다.

○ 고용주보험료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직접 납부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피용자보험료

피용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피용자의 월급 및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 자영업자 또는 비취업자의 보험료

피용자의 신분을 갖지 않는 가입자에 의해 납부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sup>20)</sup>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211	피용자보험료	사회보험료수익(피용자부담)	사회보험료수익(피용자부담)
1212	고용주보험료	사회보험료수익(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수익(고용주부담)
1213	자영업자또는 비취업자의보험료	사회보험료수익(자영업자부담)	사회보험료수익(자영업자부담)
1214	미분류보험료	사회보험료수익(기타부담)	사회보험료수익(기타부담)

2) 기타사회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정부피용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퇴직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보험제도에 납입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험료를 말한다.

○ 피용자보험료

피용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과 고용주가 피용자를 대신하여 임금·급여·기타 보상에서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다.

○ 고용주보험료

고용주가 그 피용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의미한다.

20) 표준계정과목이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정(결산계정과목)과 GFS 및 PSDS 계정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계정과목으로 기관에서 여러 이름으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을 표준계정과목으로 먼저 매핑시킴

○ 암묵적 보험료

정부고용주가 보험회사나 자립형·비자립형 연기금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반재원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그 피용자, 퇴직자 또는 그 피부양인들에게 직접 사회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어느 누구도 명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피용자들이 암묵적인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료를 고용주가 암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한다.

**(3) 출연**

출연은 다른 정부단위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수취하는 경상 및 자본이전을 의미한다. 출연수익은 어떤 단위가 출연을 제공하였는지 원천에 따라 1차로 분류하고, 경상/자본출연 여부를 2차 분류기준으로 하여 세분화한다. 출연은 현물 또는 현금의 모든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1) 경상출연

경상출연은 수혜자의 경상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자산취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자본출연

자본출연은 수혜자의 자산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취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현금의 이전, 자산(재고자산 및 현금 이외)의 이전,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있다. 만약 출연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경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311	외국정부의 출연/경상	외국정부출연지원수익 (경상지원)	출연수익 (국외정부경상지원)
1312	외국정부의 출연/자본	외국정부출연지원수익 (자본지원)	출연수익 (국외정부자본지원)
1321	국제기구의 출연/경상	국제기구출연지원수익 (경상지원)	출연수익 (국제기구경상지원)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322	국제기구의 출연/자본	국제기구출연지원수익 (자본지원)	출연수익 (국제기구자본지원)
1331	여타일반정부의 출연/경상	정부출연지원수익 (경상지원)	출연수익 (일반정부경상지원)
1332	여타일반정부의 출연/자본	정부출연지원수익 (자본지원)	출연수익 (일반정부자본지원)

#### (4) 기타수익

조세·사회보험료·출연 이외의 수익으로 재산소득,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벌금·과태료·몰수금,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 기타미분류수익 등으로 구분한다.

##### 1)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정부가 소유하는 금융자산 또는 비생산자산을 다른 기관에 대여 및 임대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주요 구성요소는 이자, 배당, 지대 등이다.

##### ○ 이자

이자란 일반정부단위가 특정 유형의 금융자산 즉 예금, 주식이외의 유가증권, 융자금, 미수계정 등을 소유함에 따라 수취가 약속된 수익을 의미한다.

##### ○ 배당

배당은 정부단위가 기업의 주주 및 소유자로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이다. 배당은 고정된 금액 또는 사전에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자소득과 구분된다.

##### ○ 지대

지대는 토지·지하자산·기타 자연발생자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재산소득이다. 정부단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물 또는 화석연료 등의 지하자산을 다른 제도단위가 일정기간 동안 추출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다.

지대는 생산자산의 임대수익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건물임대 등 생산자산의 임대소득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산의 임대인은 생산활동을

수행하므로 수요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임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를 유지하고 임대자산을 보수·관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반면 토지, 지하자산 등의 경우에는 정부 단위가 이러한 자산을 다른 단위의 처분에 맡길 뿐이며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411	이자	대여사업이자수익	대여사업이자수익
1411	이자	이자수익	이자수익
1412	배당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
1415	지대	임대료수익(토지임대)	임대료수익(토지임대)

## 2)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익으로 시장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행정수수료,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재화와 용역의 암묵적 판매수익으로 구분한다.

### ○ 시장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정부단위 내의 시장기관이란 그 산출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장기관에 의한 판매수익을 의미한다. 생산자산의 임대수익도 서비스의 판매수익으로 간주되어 본 항목에 포함된다.

### ○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는 강제적 면허에 의한 수수료와 그 외 용역의 대가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행정수수료가 포함된다. 용역의 대가로 행정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정한 규제기능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법원수수료, 공영방송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료 등이 있다.

### ○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정부단위 중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행정수수료 제외)을 말하며 통상적인 사회·지역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판매수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업학교에서 만든 생산물의 판매, 시험농장의 종자판매, 박물관의 그림엽서 및 복제품 판매, 정부병원의 진료비, 정부학교의 수업료, 공기업이 아닌 정부박물관·공원·문화여가시설의 입장료 등이 있다.

대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수익 및 기타기관에서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은 시장외적 기관에 의한 판매수익에 해당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423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재화 및 용역 매출	재화판매용역제공수익
1423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임대료수익(토지제외)	임대료수익(토지제외)
1423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수탁사업수익(정부외)	수탁사업수익
1423	시장외적기관에 의한 판매수익	토지외 임대료수익(영업외)	임대료수익(토지제외) (영업외)

### 3) 벌금·과태료·몰수금

법률 또는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법원 또는 준사법기구가 이에 대해 부과하는 강제적 경상이전으로 법원 밖에서 합의된 합의금도 포함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43	벌금·과태료·몰수금	벌금·과태료·몰수금	벌금·과태료·몰수금

### 4)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

개인, 민간 비영리기관, 비정부재단, 기업, 그리고 정부 및 국제기구 외의 기타 단위들로부터 수취한 선물과 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취한 구호용 식량·담요·의약품 등은 출연 이외의 자발적 경상이전에 포함되고 병원·학교·박물관·극장·문화센터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한 이전 그리고 토지·건물·무형자산(특허권, 저작권 등)의 증여는 출연 이외의 자발적 자본이전에 포함된다. 당해 이전이 경상인지 자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경상으로 분류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441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경상	출연이외 이전수익	기부금수익
1442	출연 이외의 자발적 이전/자본	출연이외 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5) 기타미분류수익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못한 모든 수익이 포함된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균수품 및 기타 물품의 매각, 폐품의 매각, 보험회사에 대한 비생명보험 청구권,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외의 정부재산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145	기타미분류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대손충당금환입
		기타영업외수익	잡이익 등

## II 비용

### 1. 비용의 정의

비용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시장외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전지출에 의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비용거래를 통해 수행되고 GFS 체제에서는 이러한 비용거래를 경제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 2. 비용의 분류

시장외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들을 생산하여 분배할 수도 있고 제3자로부터 이들을 구입하여 분배할 수도 있으며 가계에 현금을 이전하여 가계가 직접 구입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경제적 분류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유형별로 구분한다.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사용, 고정자본소비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항목이며, 보조, 출연, 사회급여 그리고 기타비용은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하거나 다른 단위로 이전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항목이다.

기능적 분류는 보건·교육·사회보호·환경보호 등 정부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3. 비용의 경제적 분류

#### (1)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피용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형태로 피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보상을 말하며 급여 및 임금과 사회보험료로 구분된다. 단 외주계약자, 자영 외부노동자, 정부피용자가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용자보수가 아닌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1) 급여 및 임금

급여 및 임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상여, 성과급, 포상비, 퇴직급여 등의 현금 및 현물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고용주가 피용자들을 위해 피용자의 급여 및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도 포함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11	급여및임금	급여및임금(사업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급여및임금(판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급여및임금(영업외)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 2)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정부의 피용자가 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용주인 당해 기관이 사회보험제도에 대하여 명시적·암묵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이다.

###### ○ 명시적 사회보험료

보험회사,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행정·경영을 담당하는 여타의 제도단위에 납입되는 보험료로 구성된다. 비자립형 연기금을 운영하는 일반정부도 이러한 제도단위의

일부이므로 기관이 피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암목적 사회보험료

정부고용주가 보험회사나 자립형·비자립형 연기금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반재원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피용자나 퇴직자 또는 피부양인들에게 직접 사회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암목적 사회보험료로 구분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121	명시적 사회보험료	회사부담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

## (2) 재화와용역의사용

시장 및 시장외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재화로 구성된다. 다만 일반정부가 수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 가운데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 정부가 고정자산 또는 가치저장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의 경우 ‘고정자산 또는 가치저장자산’으로 분류함. 단 소도구 등 값싼 내구재의 취득이나 그 지출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기계장비에 대한 지출에 비하여 금액이 적은 경우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기록
- 현물형태의 피용자보수로 지급된 재화와 용역은 ‘피용자보수’로 분류
- 일반정부가 취득한 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현물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 목적에 따라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 등으로 분류됨
- 가계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후 정부가 사회보호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사후보상하는 경우 ‘사회급여’로 분류
- 고정자산의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은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하지만 기존 고정자산의 대규모 개조, 재건축 또는 확장의 경우 ‘비금융자산의 취득’으로 분류
- 연구개발·직원훈련·시장조사 등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은 비록 이들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편익을 제공할지라도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이 아닌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분류

‘재화와용역의사용’에는 특히 건물·운송수단·기계 등의 생산자산의 임대료가 포함된다. 하지만 토지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비생산자산에 대한 사용료는 ‘재화와용역의사용’이 아닌 ‘지대’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2	재화와용역의사용	외주계약자인건비(원가)	급여
		복리후생비(원가)	복리후생비
		기타원가	교육훈련비
		기타원가	소모품비
		기타원가	임차료(토지제외)
		기타원가	재료비
		기타원가	연구개발비
		기타원가	제작비
		기타원가	업무추진비
		기타원가	외주가공비
		기타원가	외주용역비
		기타원가	차량유지비
		기타원가	연료비
		기타원가	통신비
		기타원가	공공요금
		기타원가	국내외여비
		기타원가	기타매출원가
		복리후생비(판관)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판관)	피복비
		기타 판관비(판관)	교육훈련비
		기타 판관비(판관)	소모품비
		기타 판관비(판관)	인쇄비
		기타 판관비(판관)	수선유지비
		기타 판관비(판관)	여비교통비
		기타 판관비(판관)	차량유지비
		기타 판관비(판관)	광고선전비
		기타 판관비(판관)	통신비
		기타 판관비(판관)	지급임차료(토지외)
		기타 판관비(판관)	지급보험료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기타 판관비(판관)	지급수수료
		기타 판관비(판관)	수도광열비
		기타 판관비(판관)	유류비
		기타 판관비(판관)	연료비
		기타 판관비(판관)	연구개발비
		기타 판관비(판관)	조사분석비
		기타 판관비(판관)	업무추진비
		기타 판관비(판관)	외주가공비
		기타 판관비(판관)	외주용역비
		기타 판관비(판관)	판매부대비
		기타 판관비(판관)	포장비
		기타 판관비(판관)	선물구입비
		기타 판관비(판관)	회의비
		기타 판관비(판관)	잡비
		기타 판관비(판관)	기타판관비
		재화및용역의사용(영업외)	재화및용역의사용(영업외)

### (3) 고정자본소비

고정자본소비는 회계기간 동안 마모, 정상적 진부화, 정상적 사고손실로 나타나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산가격의 변화는 고정자본소비가 아닌 보유이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GFSM 2001에서는 고정자본소비를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계상하도록 하는 반면, 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와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어 고정자본소비와 감가상각비는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3	고정자본소비	감가상각비(원가)	감가상각비
23	고정자본소비	감가상각비(판관)	감가상각비

#### (4) 이자

이자란 채무자가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 일반정부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 여타 일반정부에 대한 지급이자로 구분한다.

#### (5) 보조

보조는 정부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기관 및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무상의 경상지급으로서, 수혜자가 공공생산자인지 아니면 민간생산자인지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보조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로 분류한다.

보조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만 제공되며, 자본이전이 아닌 경상이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인 가계에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이전은 제공목적에 따라 ‘사회급여’ 또는 ‘기타미분류비용’으로 처리된다. 다른 정부단위에 대한 이전은 대부분 ‘출연’에 포함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51	공기업에 대한 보조	공기업 이전 수탁사업비	수탁사업비(이전지출)
252	민간기업에대한보조	민간기업 이전 수탁사업비	수탁사업비(이전지출)

#### (6) 출연

출연은 정부 사이 또는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의 비강제적 경상 또는 자본이전이다. 출연은 출연을 수취하는 단위에 따라 먼저 분류하고 그다음 출연이 경상출연인지 자본출연인지로 구분한다.

경상출연은 수혜자의 경상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수혜자의 자산취득과 어떤 형태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본출연은 수혜자의 자산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자산(재고자산 제외)의 취득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현금의 이전,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채무의 탕감, 그리고 다른 제도단위의 부채인수 등이 있다. 출연의 성격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경상으로 분류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611	외국정부에 대한 출연/경상	해외원조(외국정부)	해외원조(외국정부)
2621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경상	해외원조(국제기구)	해외원조(국제기구)
2631	여타 일반정부에 대한 출연/경상	일반정부이전 수탁사업비(경상)	수탁사업비(이전지출) _일반정부(경상)
2632	여타 일반정부에 대한 출연/자본	일반정부이전 수탁사업비(자본)	수탁사업비(이전지출) _일반정부(자본)

## (7) 사회급여

사회급여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말한다. 사회급여의 예로 의료서비스, 실업급여, 사회보장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급여는 해당 제도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고용주 사회보험제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정부가 생산하여 가계에 이전한 사회급여는 사회급여로 분류되지 않고 이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사용 그리고 고정자본소비로 각각 기록된다.

모든 사회급여는 경상이전에 해당하며 자본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 1) 사회보장급여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가계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사회급여를 의미한다. 현금형태의 사회보장급여로는 질병 또는 장애급여, 출산수당, 자녀 또는 가족수당, 실업급여, 퇴직 및 유족연금, 사망급여 등이 있다.

### 2) 사회부조급여

사회보장급여와 동일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에 제공되는 이전이지만,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사회부조급여는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부 가계들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사회보험제도가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부적절할 때 제공된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같이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또는 상황에 제공되는 이전은 사회부조급여가 아닌 '기타 미분류비용'으로 구분한다.

### 3) 고용주 사회급여

비적립식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정부단위가 그의 피용자 또는 동 제도에 가입된 여타 정부단위의 피용자(상속인과 피부양인)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를 말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71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건강보험급여비
271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장기요양보험급여비
271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건강증진사업비
271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	연금급여

## (8) 기타비용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등 앞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 1)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재산비용은 일반정부가 금융자산이나 무형의 비생산자산을 사용한 대가로 그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자도 재산비용의 일종이지만 이자비용은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으로 배당,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재산비용, 지대 등이 해당된다.

#### ○ 지대

지대는 토지·지하자산·기타 자연발생자산의 임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물 등 생산자산의 임대비용은 '재화와용역의사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81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기타원가	임차료(토지)

### 2) 기타미분류비용

기타미분류비용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금, 장학금 및 기타 교육관련 급여, 비금융자산 취득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 채무를 탕감하거나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시장생산단위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자본이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가 시장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의 최종소비를 위해 가계에 직접 배분한 재화와 용역으로서 사회급여가 아닌 것은 기타미분류비용에 해당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2821	기타 미분류비용/경상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기부금	기부금
		보험차손	보험차손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잡손실	잡손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4.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COFOG)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이하 ‘COFOG’)는 OECD에서 개발하였으며, 정부의 총지출(비용 +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분류에 사용한다.

COFOG은 정부의 기능, 즉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를 분류한 것이다.

정부의 기능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경제사업, 보건, 사회보호 등 정부서비스 제공목적에 따라 10개의 대분류로 구분된다.

〈참고〉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대분류)

GFSM 1986(개정전)	GFSM 2001(개정후)
1. 일반공공행정	70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70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703 공공질서및안전
4. 교육	704 경제사업
5. 보건	705 환경보호
6. 사회보장및복지	706 주택및지역사회시설
7.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707 보건
8. 오락·문화·종교	
9. 연료및에너지	
10. 농림·수산·수렵	

GFSM 1986(개정전)	GFSM 2001(개정후)
11. 광업·제조업·건설업	708 휴양·문화·종교
12. 수송및통신	709 교육
13. 기타경제사업	
14. 구분류외지출	710 사회보호

### (1) 일반공공행정

특정 기능과 연관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들이 주로 담당하는 행정업무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행정운영지원, 금융 및 재정업무 대외업무 등이 해당한다.

### (2) 국방

육군·해군·공군 등의 지원이나 민방위 관련 운영 및 지원비용, 해외군사원조나 국방관련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한다.

### (3)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소방, 법원 관련 업무와 기타 공공질서 안전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비용이 해당된다.

### (4) 경제사업

일반경제·상업·노동 업무, 농림수산업·수렵, 연료 및 에너지, 전기, 제조업, 수송, 통신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한다.

### (5) 환경보호

폐기물이나 폐수관리, 공해방지와 관련된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 (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개발, 지역사회개발, 상수도, 가로등 등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7) 보건**

의료품·의료용구나 전문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공공보건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8) 휴양·문화·종교**

스포츠·휴양·문화·종교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기타 전반적인 정책·예산의 수립, 관련 법률의 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9) 교육**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지출과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유아나 초등 등 교육관련 비용과 교육시설의 규제·허가·감독이나 학교의 행정 또는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간접경비 등이 포함된다.

**(10) 사회보호**

사회보호에 대한 정부지출에는 개인과 가계에 제공되는 이전지출과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지출이 있다. 질병이나 장애, 실업 등의 이유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사회보호급여나 사회보호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III 자산과 부채****1. 자산과 부채의 정의**

GFS 체계에 기록되는 모든 자산은 경제적 자산으로서 제도단위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을 보유·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한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한다.

PSDS에서는 총부채를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상품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권리로 정의된다. 따라서 PSDS상 총부채는 GFS상 부채에서 주식및기타지분(부채)과 파생상품(부채)을 제외한 더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2. 자산과 부채의 분류

###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청구권, 화폐용 금, IMF가 할당한 특별인출권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금융청구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자산소유자인 제도단위(채권자)가 다른 제도단위(채무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자산을 말한다.

금융청구권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소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된다. 금융청구권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현금, 예금, 용자, 채권, 파생금융상품, 미수계정 등이 있다. 금융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당해 금융자산에 상응하여 채무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화폐용 금과 특별인출권은 금융청구권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단위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므로 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용 금과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일반정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GFS 연차보고서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기구가 발행한 주식 및 기타지분은 비록 그 소유자가 기업에 대하여 고정된 또는 사전에 결정된 화폐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융청구권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를 발행한 단위의 채무가 된다. 하지만 일반정부단위는 다른 단위에 의해 소유되지 않으므로 일반정부단위에 대해서는 주식 또는 다른 형태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화폐용 금은 순도 99% 이상의 금화, 금괴이며 특별인출권은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IMF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IMF로부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다. 특별인출권은 이를

할당받은 회원국이 이를 상환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는 부채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된다.

## 2) 현금 및 예금

현금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통 중인 지폐와 주화를 말하며 이를 발행하는 제도단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는 부채로 인식한다. 예금은 고정된 명목가치를 가지며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융자산으로 가치저장수단이다.

예금은 이전가능예금과 이전이 불가능한 이전불능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양도불능예금증서를 포함한 저축 및 정기예금.(단 양도가능 예금증서는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으로 분류)
- 국가에서 설정한 광의의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환매채.(단 이것 이외의 환매채는 '융자'로 분류)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과목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2/6302	현금및예금	현금및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 3)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채무증권)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은 양도가능한 금융수단으로서 이를 발행한 단위가 이를 보유한 단위에 현금·금융수단·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이다.

- 어음
- 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
- 양도가능 예금증서
- 거래가능 수취예금
- 증권화된 주택저당융자 및 미수 신용카드 대금
- 사실상 유통가능하게 된 융자
- 은행인수어음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자산)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매도가능증권(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만기보유증권(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6303	주식이외의 유가증권(부채)	채무증권(부채)	단기사채	단기사채
			장기사채	장기사채

#### 4) 용자

금융자산으로서의 용자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거래의 증거로서 양도불가능한 증서를 받을 때 창출된다. 장·단기 차입금, 주택저당용자, 할부용자, 할부신용, 거래신용과 선급금을 위한 용자, 환매채, 금융리스로 창출된 암묵적인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이 포함된다. 단 무역신용 및 선금과 이와 유사한 미지급금/미수금은 용자가 아니며,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용자상품은 채무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4	용자(자산)	용자(자산)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6304	용자(부채)	용자(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비유동성금융리스부채	비유동성금융리스부채

#### 5) 주식 및 기타지분

주식 및 기타지분은 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나 자본금 등의 출자지분으로 비영리공공기관이 주식 및 기타지분을 발행한 경우 부채로 인식한다. 기업의 보통주 외에도 다음 유형의 유가증권이 주식 및 기타지분으로 분류된다.

- 준기업에 대한 정부단위의 소유권
- 기업 청산 시 잔여가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는 우선주 또는 지분
- 뮤추얼 펀드의 지분

단 PSDS에서는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만 포함하기 때문에 주식 및 기타지분은 제외된다.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5	주식 및 기타지분	대상제외	단기매매증권(지분증권)	주식, 지분법투자주식 등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	주식, 지분법투자주식 등
6305	주식 및 기타지분	대상제외	기관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서 계상	

#### 6) 보험책임준비금(보험·연금·표준화보증)

보험책임준비금은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비생명보험의 선납보험료, 그리고 기존 청구권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316	보험책임 준비금	보험·연금· 표준화보증 (부채)	보험책임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보험책임준비금	선수보험료

#### 7)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특정 금융수단·지표·상품 등의 기초자산에 연계되는 금융수단으로 이를 통해 특정한 금융위험이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크게 선물과 옵션 등이 있다.

단 PSDS에서는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만 포함하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파생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7	파생금융상품	대상제외	단기파생상품자산	단기파생상품자산
			장기파생상품자산	장기파생상품자산
6307	파생금융상품	대상제외	단기파생상품부채	단기파생상품부채
			장기파생상품부채	장기파생상품부채

8) 기타 미수/미지급계정

발생주의로 거래를 인식함에 따른 미수/미지급계정으로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비용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재화와 용역의 구입자에게 직접 제공된 거래신용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작업에 대한 선급금, 기타 여러 가지 미수/미지급계정으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조세, 배당, 유가증권의 구입 및 매각대금, 지대, 임금 및 급여, 사회보험료, 사회급여, 기타 유사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GFS 및 PSD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208	기타 미수계정	기타 미수계정	매출채권	매출채권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금, 연구비미수금 등
			미수금대손충당금	미수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익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비용
			유동이연법인세자산	유동이연법인세자산
			기타의당좌자산	기타의당좌자산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금대손충당금)
			(장기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수수익	장기미수수익
			(장기미수수익대손충당금)	(장기미수수익대손충당금)
			장기선급금	장기선급금

GFS COA		PSDS 계정명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비용
			보증금	보증금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기타의비유동자산	기타의비유동자산
6308	기타 미지급 계정	기타 미지급 계정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선수수익
			예수금	예수금
			유동이연법인세부채	유동이연법인세부채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수익
			장기예수금	장기예수금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예수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2) 비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이외의 모든 경제적 자산을 말하며 다른 단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자산처럼 비금융자산도 가치를 저장하고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인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한다.

### 1)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일년 이상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생산된 자산을 의미한다. 고정자산의 핵심적 특징은 물리적 의미에서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장기간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석탄연료와 같은 일부 재화는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크지만 오직 한번만 사용되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정자산은 건물 및 구조물, 기계 및 장비 그리고 기타고정자산으로 세분화된다.

### ① 건물 및 구조물

건물 및 구조물은 주택, 비주거용 건물, 기타 구조물로 구성된다. 건물 및 구조물의 가치에는 부지 정비 및 기반 구축 비용뿐 아니라 건축물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모든 부착물·시설·장비의 원가도 포함된다.

#### ○ 주택

주택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차고 및 기타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다.

#### ○ 비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은 주택 이외의 모든 건물이다. 사무용건물, 학교, 병원, 대중 오락시설, 창고 및 산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호텔 식당 등이 있다.

#### ○ 기타 구조물

건물 이외의 모든 구조물을 말하며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활주로, 하수도, 수로, 항만, 댐, 갯도, 터널, 기타 지하자산의 채굴과 관련된 구조물, 통신망, 송전망, 수송관, 야외 스포츠 및 여가시설물을 포함한다.

### ②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는 운송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로 구성된다. 단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기계 및 장비는 건물 및 구조물에 포함된다.

#### ○ 운송장비

운송장비는 차량, 트레일러, 선박, 기관차와 차량, 비행기, 오토바이, 자전거와 같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 ○ 기타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를 제외한 모든 기계 및 장비를 말하며 일반용·특수목적용 기계, 사무용·회계용 컴퓨터 장비, 전기기계,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장비, 의료장비, 정밀·광학기계, 가구, 시계, 악기, 스포츠용품 등이 있다. 또한 그림·조각·기타 예술작품이나 골동품, 그 외 정부 박물관이나 유사기관에서 시장외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하고 있는 고가의 수집품 일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단 이러한 성질을 가졌으나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가치저장자산으로 분류된다.

### ③ 기타고정자산

기타고정자산은 배양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성된다.

○ 배양자산

배양자산은 다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일년 이상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및 식물로 구성된다. 번식용 가축, 젖소, 견인용 동물과 과일·견과·수액·송진 등을 수확하기 위해 재배되는 나무 등이 있다.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동물과 식물 등은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정부단위의 직접적인 통제·책임·관리하에 배양되는 자산만이 고정자산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동물과 식물은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거나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은 광물탐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문화·예술적 창조물, 기타 여러 가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구성된다.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년 이상 생산과정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소유하는 단위 또는 소유자가 사용을 허가한 단위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 직원훈련, 시장조사 그리고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한 지출은 비록 이로 인해 향후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111	건물및구조물	건물	건물
		건설중인자산_건물	건설중인자산_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구축물
		건설중인자산_구축물	건설중인자산_구축물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6112	기계및장비	기계장치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_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_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113	기타고정자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기타무형자산

##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생산자가 판매,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기타 향후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전략적 비축과 기타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 ① 전략적 비축

전략적 비축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비축하는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 ② 기타 재고자산

기타 재고자산은 자재 및 부품, 재공품, 최종품, 재판매용 재화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12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미착품
			기타의저장품
			저장품

## 3) 가치저장자산

가치저장자산이란 상당한 가치를 가진 생산된 재화로서 주로 가치저장수단으로 취득 및 보유되고 생산과 소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 비화폐용 금, 백금, 그리고 예술작품 및 골동품으로 인정되는 그림, 조각, 그리고 값진 광물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당한 가치의 보석, 수집품, 기타 여러 가지 저장자산 등이 있다.

## 4) 비생산자산

비생산자산은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등 유형 자연발생자산과 무형 사회적 형성물로 구성된다.

① 토지

토지는 땅 자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땅을 덮고 있는 흙, 지표수, 그리고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대규모 개량시설이 포함된다. 하지만 도로, 사무용 건물, 터널과 같이 토지 위에 또는 이를 관통하여 건설된 건물 및 구조물은 토지로 보지 않으며, 포도원·과수원, 동식물, 지하자원 등도 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무형비생산자산

무형비생산자산은 법적 또는 회계적 행위로 창출되는 사회적 형성물이다. 배타적 권리를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자산으로 특허권, 리스 및 기타 계약, 구입된 영업권 등이 있다.

〈참고〉 GFS 계정과목 & 표준계정과목 & 결산계정과목(예시)의 맵핑

GFS COA		표준계정과목	결산계정과목(예시)
GFS code	GFS 계정명		
6141	토지	토지	토지
		건설중인자산_토지	건설중인자산_토지
6144	무형비생산자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특허권
		영업권	영업권

### 공공부문 포괄범위

#### 1 정부의 지배성 기준

PSDS 작성 범위인 '공공부문' 판단 시 '정부의 지배성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정부의 지배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부지배 여부는 정부단위가 통제하고 자금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할 능력이거나 공공기관의 관리자를 임명할 권리를 갖거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배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공공부문으로 분류합니다.

〈국제통계기준(SNA 2008)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지배성 판단기준〉

- ①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보유 여부
- ② 이사회 혹은 주요 협의체 기구에 대한 지배 여부
- ③ 집행간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혹은 파면권 보유 여부
- ④ 주요 위원회 혹은 주요 지배기구에 대한 지배 여부
- ⑤ 황금주(golden shares)와 주식매입선택권(option) 보유 여부
- ⑥ 규정 및 규율 지배 여부
- ⑦ 지배적인 공공부문 고객 혹은 고객집단의 지배 여부
- ⑧ 정부 용자를 통한 지배 여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vs. 재정통계상 공공부문

KBS, EBS, 서울대학교(국립대학법인)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도 재정통계 산출범위인 공공부문으로 보아야 하나요?

- ❖ 통계작성 목적과 공공기관 관리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관이라면 통계 포괄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재정통계상 공공부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기업특별회계 및 공공기관관리기금 포함여부

기업특별회계 및 공공기관관리기금을 별도의 독립된 제도단위로 보아야 하나요?

- ❖ GFSM 2001 2.22 및 SNA 2008 4.136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처·청, 기관, 위원회,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은 독립적 제도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통제하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기관들은 하나의 제도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나 공공기관관리기금의 경우 독립된 제도단위로 보지 않고 중앙정부(제도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가보상률 등 시장성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정부에 포함하였습니다.

### 4 일반정부 판단 시 원가보상률 이외 적용기준- 구조조정기구, 사회보장성기금

구조조정기구나 사회보장성기금이 무조건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구조조정기구는 정부에서 법인의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며 통상적인 기준의 산출물이 없어 산출물의 시장성 여부를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정부단위에 의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으며 제도단위 전체의 역할이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정부단위의 특별한 형태로 보아 일반정부로 구분합니다.

### 5 금융공기업 포함여부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할 때 금융공기업은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금융공기업의 경우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업의 특성상 규모에 비해 총부채액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순부채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거나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공공부문의 부채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에서만 금융공기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연금충당부채 등

### 1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부채 인식 여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GFS 재정통계 부채로 포함되나요?

- ❖ 공무원,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GFSM 2001에서도 고용관계에 따른 직역연금에 해당(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하는 연금충당부채를 부채(보험·연금·표준화보증)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GFS year book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충당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재무제표에 있는 연금충당부채의 GFS 재정통계 부채 인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 등을 보험·연금·표준화보증으로 계상하고 있는 국가는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정도입니다.

### 2 국민연금의 부채 인식 여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충당부채를 GFS 재정통계에서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 ❖ GFSM 2001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충당부채는 정책 환경에 따라 급여가 변화될 수 있어 급여수준 등이 불확실하고 정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2001년 9월)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계약적 교환거래(contractual exchange transactions)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급여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으므로 미래급여의 현재가치를 부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회계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산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및 향후 추이를 보면서 부기 표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기준차이 조정사항

### 1 세입·세출 외 현금

국가회계처럼 GFS에서도 세입·세출외 현금(공탁금, 보관금, 입찰보증금 등)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나요?

❖ 국가회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의 주식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GFSM 2001에서는 일반정부의 법원 또는 세무서가 분쟁심리 중에 예치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하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가회계에서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GFS상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 2 총당부채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소송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등 총당부채를 GFS에서도 부채로 인식하나요?

❖ GFSM 2001에서는 우발부채의 인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재무회계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재무회계에서는 자산이 손상되었거나 부채가 발생하였음을 확인시켜 줄 미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에 대한 적절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총당부채를 인식하지만 GFS에서는 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상황은 관련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금융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등에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등)으로 계상한 부분도 GFS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보증 등에 따른 우발사항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부기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10 -

### 3 표준화보증충당부채

우발부채 중 '표준화보증충당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 표준화보증이란 유사한 성격의 소액 용자에 대해 대량으로 발행되는 보증으로 PSDS에서는 표준화보증에 한해서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보증내역에 대해서만 부기로 표시하고 있으며 부채 포함 여부는 국제 추이 검토 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준비금(기타부채)

사회보험사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수행하는 기금이 보험지급액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립한 부분(부채계상)은 GFS에서도 부채로 인정하나요?

- ❖ 국가회계에서는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준비금을 기타부채로 인식하지만, GFS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정부가 미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및 기타 급여 등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로 표시합니다.



#### 더 알아보기 항목별 일반정부 부채 포함여부

- **통화안정증권 등 한국은행 부채:**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별도 구분되며, 일반정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 고려대상에서 제외
- **BTL 및 BTO관련 부채:** BTL지급금은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시키되, BTO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우발사항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충당부채:**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국제기준에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보증채무:**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국제통계기준에서는 지급보증 등에 따른 우발사항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출처: 재정통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재정통계개편안 2011.1.26.>

## 기타사항

### 1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처럼 시장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계산출 시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나요?

- ❖ 국제기준은 정부 내부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금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내부거래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이 시장을 통해 매입한 국채도 내부거래로 제거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채무(D1)통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가 부채에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거래로 제외시키는 금액을 부기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및 공채 규모를 공개하였습니다.

### 2 보유손익 및 기타내용변화

국가회계와 달리 GFS 재정통계에서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초 기말 저량의 변동을 '거래'와 '거래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회계 계정과목 중 '거래외'로 분류되는 계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국가회계기준과 GFSM 2001 기준의 수익에 대한 정의가 상이함에 따라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자산평가 등에 따른 평가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하지만 GFSM 2001기준에서는 수익이 아닌 '거래외 경제유량'인 보유손익이나 기타내용변화로 구분하는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손익에는 일반유형자산처분손익, 장단기투자증권처분손익, 투자증권감액손실 및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실,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 재평가손실, 보험차익, 외화평가손익, 외환차익 등의 계정이 해당합니다.

기타내용변화에는 자산폐기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재해손실,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의 계정이 해당합니다.

## 부채 개념 차이

### 1 D1 vs D3

국가채무(D1)와 PSDS에서 공시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어떻게 다른가요?

- ❖ 국가채무(D1)란 「국가재정법」 제91조와 GFSM 1986에 근거한 채무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하며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로 국가채무(D1)에는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순채무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문 부채(D3)란 PSDS(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부채로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발생주의를 작성기준으로 함에 따라 현금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등이 부채항목에 추가되었고, 포괄범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2 D2 vs D3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어떻게 다른가요?

- ❖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모두 PSDS 국제통계지침에 근거한 부채로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한 부채로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에 최초로 GFSM 2001 기준에 따른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의 재정건전성 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공공부문 부채란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부채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로 발표하였습니다.

### ▣ 중앙공공부문 포괄범위(2016년)

구 분	내 용
일반 회계	54개 중앙관서 중 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 특허청 제외(52개)
특별 회계 (18개)	1.농어촌구조개선, 2.교통시설, 3.등기, 4.교도작업, 5.에너지및자원사업, 6.환경개선, 7.우체국보험, 8.주한미군기지이전,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국방·군사시설이전, 11.혁신도시건설,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광역지역발전, 14.양곡관리, 15.책임운영기관, 16.조달, 17.우편사업, 18.우체국예금
기금 (65개)	1.고용보험, 2.공공자금관리, 3.공무원연금, 4.공적자금상환, 5.과학기술진흥, 6.관광진흥개발, 7.국민건강증진, 8.국민연금, 9.국민체육진흥, 10.국유재산관리기금 11.국제교류, 12.군인복지, 13.군인연금, 14.근로복지진흥, 15.금강수계관리, 16.기술신용보증, 17.낙동강수계관리, 18.남북협력, 19.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20.농산물가격안정, 21.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22.농어업재해재보험, 23.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 24.농지관리, 25.대외경제협력, 26.무역보험, 27.문화예술진흥, 28.문화재보호, 29.방사성폐기물관리, 30.방송통신발전, 31.범죄피해자보호, 32.보훈, 33.복권, 34.사립학교교직원연금, 35.사법서비스진흥 36.사학진흥, 37.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38.산업기반신용보증, 39.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40.석면피해구제, 41.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2.수산발전, 43.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44.신용보증, 45.양곡증권관리, 46.양성평등, 47.언론진흥, 48.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9.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50.영화발전, 51.외국환평형, 52.원자력, 53.응급의료, 54.임금채권보장, 55.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5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57.전력산업기반, 58.정보통신진흥, 59.중소기업창업및진흥, 60.주택금융신용보증 61.주택도시, 62.지역신문발전, 63.청소년육성, 64.축산발전, 65.한강수계관리
비영리 공공 기관 (214개)	1.공무원연금공단, 2.예금보험공사, 3.기술보증기금, 4.국민연금공단, 5.한국언론진흥재단, 6.한국문화예술위원회, 7.한국무역보험공사, 8.한국자산관리공사, 9.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신용보증기금, 11.영화진흥위원회, 12.중소기업진흥공단, 1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국립공원관리공단, 15.국민건강보험공단, 16.국제방송교류재단, 17.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도로교통공단, 20.농업기술실용화재단, 21.한국과학창의재단, 2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한국산업단지공단, 25.한국산업인력공단, 26.한국소비자원, 27.한국장애인고용공단, 28.한국농어촌공사, 29.한국광해관리공단, 30.한국세라믹기술원, 31.한국교육학술정보원, 32.독립기념관, 33.여수광양항만공사, 3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5.한국인터넷진흥원, 36.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7.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8.한국고용정보원, 39.(재)우체국물류지원단, 40.한국노인인력개발원, 41.한국연구재단, 42.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3.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정보통신산업진흥원, 46.한국콘텐츠진흥원, 47.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한국환경공단, 49.한국장학재단, 50.한국디자인진흥원, 5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2.한국정보화진흥원, 5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4.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5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56.사회보장정보원,

구분	내용
	<p>5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9. 국토연구원, 6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2. 대한법률구조공단, 63. 한국고전번역원,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6. 국방과학연구소, 6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0. 한국교육개발원, 71. 한국교통연구원, 72. 한국국방연구원, 73. 한국국제교류재단, 74. 한국기계연구원, 7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6. 한국노동연구원, 77.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78. 한국문학번역원, 7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0. 한국법제연구원, 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한국사학진흥재단, 8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4. 한국식품연구원, 8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7. 한국영상자료원, 8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8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2. 산업연구원, 93. 영상물등급위원회, 94. 재외동포재단, 9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6. (재)정동극장, 97. 통일연구원, 98. 한국국제협력단, 99. 한국개발연구원, 1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5. 국방기술품질원, 1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8. 한국천문연구원, 1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1. 한국학중앙연구원, 112. 한국한의학연구원, 1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4. 한국행정연구원, 115. 한국화학연구원, 116.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17. 대한장애인체육회, 1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9. 한국특허정보원, 120. 동북아역사재단, 121. 향로표지기술협회, 122. 정부법무공단, 123. 한국저작권위원회, 124. 게임물관리위원회, 125. 전략물자관리원, 126. 태권도진흥재단, 127. 학교법인국폴리텍, 1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3.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1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5. 노사발전재단, 136. 한국장애인개발원, 137.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38. 재단법인 국악방송, 13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4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3. 창업진흥원, 14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4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46. 한국임업진흥원, 147. 기초과학연구원, 148.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50. 세종학당재단, 15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53. 한국보육진흥원, 15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6. 한국약품안전관리원, 157. 한국문화정보원, 158. 서울대학교, 159. 국립생태원, 160. (주)위터웨이플러스, 161. 항공안전기술원, 16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65. (재)APEC기후센터, 166.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67. (재)한식재단, 16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6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70. 국립광주과학관, 171. 국립대구과학관, 172. IOM이민정책연구원, 17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74.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75.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7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77.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7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79. (재)중소기업연구원, 180. 한국해양조사협회, 181. 아시아문화원, 18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83. 시청자미디어재단, 184. 울산과학기술원, 185. 한국나노기술원, 186. 국방전직교육원, 187. 국립해양박물관, 18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8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90. 식품안전정보원, 191.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192. 한국인체조직기증원, 193. 근로복지공단, 19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96. 한국에너지공단, 197. 축산물품질평가원.</p>

구분	내용
	19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4. 한국재정정보원, 205. 한국저작권보호원, 20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7. 한약진흥재단, 208. 국립부산과학관, 209.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10. 환경보전협회, 211.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12.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13.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14.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비금융 공기업 (111개)	<p><b>〈비금융공기업〉</b></p> 1. 부산항만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인천항만공사, 4. 한국지역난방공사, 5. 한국공항공사, 6. 한국석유공사, 7. 한국전력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중부발전(주),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한국서부발전(주), 12. 한국동서발전(주), 13. 한국남부발전(주), 14. 한국남동발전(주),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대한석탄공사, 18. 한국철도공사,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한국감정원, 21. 한국관광공사, 22. 한국도로공사, 23. 한국마사회, 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조폐공사, 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9. 한국석유관리원, 30. 한국시설안전공단, 31. 한국전기안전공사, 32. 한국전력거래소, 33. 교통안전공단, 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5. 선박안전기술공단, 36. 한국가스안전공사, 3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8.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39. 한국국토정보공사, 4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1. 한국철도시설공단, 4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43. 강원대학교병원, 44. (주)강원랜드, 45. 경북대학교병원, 46. 경상대학교병원, 47. 광주과학기술원, 48. 대한적십자사, 49. 대한체육회, 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1. 중소기업유통센터, 52. 국립중앙의료원, 5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5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56.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57. 88관광개발(주), 58. 울산항만공사, 59. 부산대학교병원,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2. 에너지경제연구원, 63. 예술의전당, 64. 한국원자력의학원, 65. 전남대학교병원, 66. 전쟁기념사업회, 67. 주택관리공단(주), 6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9. 충북대학교병원, 70. 코레일로지스(주), 71. 국립암센터, 7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3. 서울대학교병원, 74. 충남대학교병원, 75. 한국문화재단, 7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7. 한국원자력연구원, 7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9. 한국체육산업개발(주), 8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1. 한전KPS(주), 82. 한전KDN, 83. 코레일네트웍스(주), 8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5. 한국발명진흥회, 86. (재)우체국시설관리단, 8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8. 코레일테크(주), 89.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9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1. 전북대학교병원, 92. 제주대학교병원, 93. 한국과학기술원, 94. 한국전기연구원, 95. 코레일유통(주), 96. 한국어촌여항협회, 97.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98. 코레일관광개발(주), 9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00. 해양환경관리공단, 10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03. 한국잡월드, 104. KBS, 105. EBS, 106. 인천대학교, 107.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08. 한국데이터진흥원, 109. 한국상하수도협회, 11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11.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주: 밑줄 친 기관은 '17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13개) 및 분류변경(비금융공기업 → 비영리공공기관)된 기관(11개)임.

111

## ▣ 지방공공부문 포괄범위(2016년)

구 분	내 용
일반회계 (243개)	광역시·도 17개, 기초 시·군·구 226개(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기타 특별회계 (1,891개)	자치단체별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
직영공기업 특별회계 (266개)	상수도 119개, 하수도 96개, 공영개발 33개, 지역개발기금 18개
기금 (2,384개)	노인, 청소년,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특정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
교육비특별 회계(17개)	광역시·도 17개 교육비 특별회계
비영리 공공기관 (93개)	(공단) 1.달성군시설관리공단 2.종로구시설관리공단 3.중구시설관리공단 4.용산구시설관리공단 5.성동구도시관리공단 6.광진구시설관리공단 7.동도시관리공단 11.도봉구시설관리공단 12.노원구시설관리공단 13.은평구시설관리공단 14.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5.마포구시설관리공단 16.양천구시설관리공단 17.강서구시설관리공단 18.구로구시설관리공단 19.금천구시설관리공단 20.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1.동작구시설관리공단 22.관악구시설관리공단 23.강남구도시관리공단 24.송파구시설관리공단 25.강동구도시관리공단 26.부산시설공단 27.부산환경공단 28.부산지방공단스포원 29.기장군도시관리공단 30.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1.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32.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33.인천환경공단 34.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35.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36.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37.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38.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39.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40.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41.광주광역시환경공단 42.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3.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44.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45.울주군시설관리공단 46.수원시시설관리공단 47.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48.부천시시설관리공단 49.안양시시설관리공단 50.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51.시흥시시설관리공단 52.파주시시설관리공단 53.군포시시설관리공단 54.양주시시설관리공단 55.안성시시설관리공단 56.포천시시설관리공단 57.오산시시설관리공단 58.과천시시설관리공단 59.여주시시설관리공단 60.가평군시설관리공단 61.연천군시설관리공단 62.동해시시설관리공단 63.속초시시설관리공단 64.영월군시설관리공단 65.정선군시설관리공단 66.청주시시설관리공단 67.단양관광관리공단 68.보령시시설관리공단 69.전주시시설관리공단 70.포항시시설관리공단 71.안동시시설관리공단 72.구미시설공단 73.문경관광진흥공단 74.창원시시설관리공단 75.창원경륜공단 76.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77.양산시시설관리공단 78.천안시시설관리공단 79.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80.이천시시설관리공단 81.부여군시설관리공단 82.아산시시설관리공단 83.광명시시설관리공단

구 분	내 용
	8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사) 1.대구, 2.광주, 3.대전 도시철도공사, 4.인천교통공사, 5.양평지방공사, 6.청도공영사업공사 7.의왕도시공사 8.구리도시공사 9.경상북도관광공사
<b>비금융 공기업 (54개)</b>	1.서울메트로 2.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부산교통공사 4.SH공사 5.부산도시공사 6.대구도시공사 7.인천도시공사 8.광주광역시도시공사 9.대전도시공사 10.울산도시공사 11.경기도시공사 12.강원도개발공사 13.충북개발공사 14.충청남도개발공사 15.전북개발공사 16.전남개발공사 17.경상북도개발공사 18.경상남도개발공사 19.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서울농수산식품공사 21.김대중컨벤션센터 22.대전마케팅공사 23.경기관광공사 24.경기평택항만공사 25.고양도시관리공사 26.용인도시공사 27.안산도시공사 28.남양주도시공사 29.평택도시공사 30.화성도시공사 31.광주지방공사 32.김포도시공사 33.구리농수산물공사 34.하남시도시개발공사 35.춘천도시공사 36.강릉관광개발공사 37.태백관광개발공사 38.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39.당진항만관광공사 40.여수시도시공사 41.청송사과유통공사 42.영양고추유통공사 43.통영관광개발공사 44.함안지방공사 45.창녕군개발공사 46.제주관광공사 47.부산관광공사 48.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49.제주에너지공사 50.성남도시개발공사 51.장수한우지방공사 52.김해시도시개발공사 53.인천관광공사 54.서울에너지공사

주: 당해 폐지기관 포함(태백관광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IMF의 GFSM 1986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로의 전환인 GFSM 2001로의 개정은 통계의 전면적 개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재정통계 개편으로 인한 주요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포괄범위(Coverage)

GFSM 2001의 포괄범위는 SNA 1993에서 제시한 5개의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권리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실체를 의미하며 일반정부부문,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가계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부문으로 구분된다. GFSM 2001은 기본적으로 일반정부부문을 포괄범위로 하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GFSM 1986의 경우에는 모든 단위가 포함되지만, 이들의 거래 가운데 정부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만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통화당국과 기타 예금금융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거래 등 재정정책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거래는 제외되었다.

## 2. 발생주의(Accrual basis)

GFSM 2001 개정 전 지침인 GFSM 1986은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분석체계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정부회계가 현금주의 기준의 예산회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재정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기존 재정분석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재정통계에도 발생주의 도입 등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3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정부회계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SNA 1993(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발간하였다<sup>21)</sup>. SNA 1993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저량과 유량이 결합된 통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IMF에서도 GFSM 1986의 재정분석 프레임워크의 한계 및 지침에서

21) 옥동석·하윤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9년 6월

제시한 방법론의 결함을 인식하고 SNA 1993과 조화를 이루는 통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GFSM 2001로 개정하였다. 세계의 주요국<sup>22)</sup>들은 상기의 최신 기준을 채택하여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GFSM 2001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며, 이는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GFSM 1986과 비교할 때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은 기록 시점의 차이뿐 아니라 통계작성의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도 유발하였다. 발생주의에서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모두 경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도 경제적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현금성 거래를 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상태표의 기초와 기말의 변화를 자산과 부채의 거래로 인한 변화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인한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 3. 가치평가(Valuation)

GFSM 2001에서는 자산·부채·순자산뿐 아니라 거래 및 거래외 경제유량을 현행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s)으로 평가한다. 현행시장가격은 시장에서 자산, 노동, 자본 등을 제공하고 수취할 수 있는 현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GFSM 2001에서는 채무증권의 명목 가격<sup>23)</sup>을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GFSM 1986에서는 저량 통계 중 채무(debt)통계만을 포함함에 따라서 채무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채무증권은 정부가 만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저량과 유량의 결합(Integration of flows and stocks)

GFSM 2001에서는 저량과 유량이 결합되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재정상태표상의 금융자산·비금융자산·부채 등 기말 저량(stock)에서 기초 저량(stock)을 차감한 변동분을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되는 유량(flow) 정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22) 2017년 9월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8개 국가만이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음

2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의무를 지는 금액으로 미래 원리금 지급액을 계약상의 금리로 할인한 금액과 같음

반면, GFSM 1986에서는 확정채무만을 저량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정채무의 변동분을 유량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었다.



#### 더 알아보기 저량과 유량(stock & flow)

저량(Stock)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 또는 비축량을 말하며 유량(Flow)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으로 흐르는 양을 의미함. 예를 들어 국민소득은 일정기간(보통 1년)의 재화와 용역의 순생산물의 합이므로 유량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국부(國富)는 특정 시점에서의 한 국가의 경제재의 총량이므로 저량이라 할 수 있음.

## 5. 정의와 분류(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GFSM 2001에서 수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일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출연금은 수익에 포함되지만 비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제외된다.

반면, GFSM 1986에서는 수익을 출연을 제외한 비상환성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은 제외되고 비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GFSM 2001에서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금융자산의 구입은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지출(expenditure)이라는 용어 대신 비용(expen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금융자산의 거래를 제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GFSM 2001에서는 고정자산소비를 비용으로 분류하지만 GFSM 1986에서는 비현금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제외한다.

반면, GFSM 1986에서는 지출을 모든 비상환성 지출로 정의하므로 비금융자산의 구입과 자본이전이 지출에 포함된다.

## 6. 수지항목(Balancing items)

GFSM 2001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지항목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운영표에서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순차입 2가지 수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변화로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냄
-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borrowing(-))**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금융자산의 순취득에서 부채의 순부담을 차감한 값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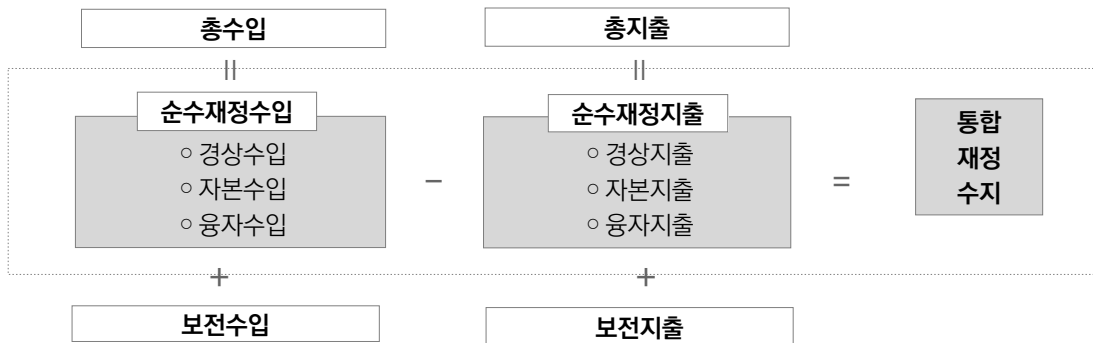
순운영수지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을 초과하여 양(+)의 금액인 순융자(net lending)가 발생하였다면 초과금액으로 금융자산을 취득(융자)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순운영수지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에 미치지 못해 음(-)의 금액인 순차입(net borrowing)이 산출되었다면 적자보전을 위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의 차입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이다.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에서는 현금흐름/적자가 제시되며 이는 정부운영과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수지를 나타낸다.

다른 재정지표 항목으로는 순자산, 순금융자산, 순자산의 변화, 순금융자산의 변화, 거래외 경제 유량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화, 기초수지, 저축 등이 있다.

GFSM 1986의 경우 단일 재정지표 항목인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였다. 다음과 같이 순수재정수입에서 순수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그 결과가 양(+)의 값을 가지면 재정 흑자를 의미하고 음(-)의 값을 가지면 재정 적자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 산출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통합재정수지} &= \text{순수재정수입} - \text{순수재정지출} \\
 &= (\text{세입} + \text{융자회수}) - (\text{세출} + \text{융자지출}) \\
 &= \text{세입(경상수입} + \text{자본수입)} - \text{세출 및 순융자}
 \end{aligned}$$



GFSM 1986은 수입과 지출을 모든 비상환성 수입과 지출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입과 비용에는 비금융자산의 거래가 포함된다. 그리고 정책적 목적의 금융자산 순취득(정책용자 등)도 순용자로 분류되어 통합재정수지에서 지출로 간주된다.

부록 4-1 | GFSM 1986 vs GFSM 2001 포괄범위와 회계원칙의 차이

구 분	GFSM 2001	GFSM 1986
단위의 포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단위(제도 단위) 개념에 기초</li> <li>•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정부단위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재정지원되는 국내거주 모든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 작성</li> <li>※ 정부전체(일반정부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 재무제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적 개념에 기초</li> <li>•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단위의 거래만 포함</li> <li>※ 재정정책의 수행이 아닌 거래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통화당국 및 기타 예금금융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제외됨</li> </ul>
경제적 사건 기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주의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주의 원칙</li> </ul>
원칙 간 주요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유량이 기록</li> <li>• 지불일이 도래한 의무(미지급 채무원리금, 미지급금 등) 파악</li> <li>※ 연체금액이 기록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이 수취 또는 지급될 때 기록</li> <li>※ 연체금액이 기록되지 않음</li> </ul>
사건 포괄범위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흐름으로 표시되는 거래뿐 아니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적 사건이 포함</li> <li>• 재화와 용역의 물물교환 및 출연과 같은 현물거래도 경제적 사건에 포함</li> <li>• 비현금적 사건인 '거래외 경제유량'을 포함시킴으로써 회계기간 초와 말 사이의 재정상태표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현물거래만을 부기사항으로 기록하기를 권장</li> <li>• 비현금적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li> </ul>
유량과 저량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기간 초의 저량과 회계기간 중의 유량으로부터 회계기간 말의 저량 계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함되는 저량이 확정채무에 한정</li> <li>• 확정부채의 변화를 유량기록과 결합시킬 수가 없음</li> <li>※ 유량과 저량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추가자료가 부속표에 제시됨</li> </ul>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채무를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평가</li> <li>※ 확정채무증권의 명목가치를 부기사항으로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정부가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확정채무를 평가</li> <li>※ 명목가치 및 현행시장가치와 다를 수 있음</li> </ul>
시장기관 (기업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기관의 매출액과 생산원가는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서 총액으로 제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기관의 매출액에서 생산원가를 공제한 순가치가 양(+ )이면 수입으로, 음(-)이면 지출로 기록됨</li> </ul>

부록 4-2 | GFSM 1986 vs GFSM 2001 계정분류의 차이

구분	GFSM 2001	GFSM 1986
수익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일체로 정의되며, 수익에는 출연금이 포함되지만 비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은 출연을 제외한 모든 비상환성 수입 일체로 정의되며, 수입에는 비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포함됨</li> </ul>
수익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익은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으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은 조세, 세외수입, 자본수입으로 분류되고 출연은 수입과는 다른 별도 항목으로 분류</li> </ul>
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보험료가 조세에서 제외</li> <li>사회보험료에는 사회보장보험료와 정부피고용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험료(기타사회보험료)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보험료가 조세에 포함</li> <li>사회보장보험료를 조세로, 기타사회보험료를 세외수입으로 분류</li> </ul>
기타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FSM 1986의 '세외수입' 대부분과 자본이전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이전은 자본수입으로 분류</li> </ul>
자본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 판매대금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이전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금융자산의 판매대금과 자본이전의 수취금액을 포함</li> </ul>
비용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expense)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일체로 정의되며,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금융자산의 구입은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expenditure)은 모든 비상환성 지급 일체로 정의되며, 비금융자산의 구입과 자본이전을 포함함</li> </ul>
<p>※ GFSM 2001에서는 지출(expenditure)이란 용어 대신 발생주의 회계기초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비용(expense)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비금융자산의 거래가 제외됨을 내포함</p>		
경제적 성격에 따른 비용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금융자산의 취득은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금융자산의 취득은 지출에 포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자본소비가 비용으로 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자본소비는 비현금 비용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제외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지급을 '지급의 유형'에 따라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지급의 유형을 '수취하는 부문'에 따라 분류</li> </ul>
비금융자산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FSM 2001에서 '비금융자산의 거래'는 수익 또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별도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금융자산의 거래는 자본 수입 또는 지출로 처리</li> </ul>
정책적 목적의 금융자산 순취득 (순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적 목적의 금융자산 순취득을 여타의 금융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용자는 거래의 한 항목으로서 정책적 목적의 금융자산 순취득을 나타내며,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지출과 마찬가지로 취급</li> </ul>

국  
가  
비

## 1. 요약표(Summary presentation tables)

## 1) 총부채 요약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계</b>		
<b>Gross debt by type of debt instrument 상품 유형별 총부채</b> Special drawing rights(SDRs) 특별인출권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b>Gross debt by original maturity 원 만기별 총부채</b> Short-term, original maturity 단기 Long-term, original maturity 장기 <b>Gross debt by remaining maturity 잔존 만기별 총부채</b> Short-term, remaining maturity 단기 Long-term, remaining maturity 장기		
<b>Gross debt by currency of Denomination 표시 통화별 총부채</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b>Gross debt by type of interest rate 이자율 유형별 총부채</b> Fixed-rate instruments 고정이자율 Variable-rate instruments 변동이자율		
<b>Gross debt by residence of the creditor 채권자의 거주지별 총부채</b> 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 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		
<b>Memorandum items 비망항목</b> Publicly guaranteed debt 정부 보증 채무 Arrears 연체금		

## 2)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Gross debt (liabilities in the form of debt instruments) (a) 총부채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 (a)	Financial assets corresponding to debt instruments (b)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b)	Net debt (c) =(a)-(b) 순부채 (c) = (a)-(b)	Gross debt (liabilities in the form of debt instruments) (a) 총부채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 (a)	Financial assets corresponding to debt instruments (b) 채무상품에 대응되는 금융 자산 (b)	Net debt (c) = (a)-(b) 순부채 (c) = (a)-(b)
<b>Total 총계</b>						
<b>By type of debt instrument 상품 유형별</b> Monetary gold 화폐용 금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receivable 기타 미지급/미수 계정						
<b>By original maturity 원 만기별</b> Short-term, original maturity 단기 Long-term, original maturity 장기 <b>By remaining maturity 잔존 만기별</b> Short-term, remaining maturity 단기 Long-term, remaining maturity 장기						

10  
11

<b>By currency of denomination 표시 통화별</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b>By interest rate 이자율 유형별</b> Fixed-rate instruments 고정이자율 Variable-rate instruments 변동이자율		
<b>By residence of the creditor 채권자 거주지별</b> 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 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		

## 2. 세부표(Detailed presentation tables)

### 1)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 계</b>		
<b>By type of debt instrument 채무상품 유형별</b>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b>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b>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p><b>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b>  <b>With payment due in one year or less 만기 1년 이하</b>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p> <p><b>With payment due in more than one year 만기 1년 초과</b>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p>		
---	--	--

2) 표시 통화 및 만기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 계</b>		
<p><b>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b>                  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                  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                  With payment due in one year or less 만기 1년 이하                  With payment due in more than one year 만기 1년 초과</p> <p><b>Foreign currency dominated 외화 표시</b>                  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                  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                  With payment due in one year or less 만기 1년 이하                  With payment due in more than one year 만기 1년 초과</p>		

국  
가  
채  
무

## 3) 이자율 유형 및 표시 통화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계</b>		
<b>Fixed-rate instruments 고정이자율 상품</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b>Variable-rate instruments 변동이자율 상품</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 4a) 채권자 거주지 및 채무상품 유형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계</b>		
<b>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b>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b>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b>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 인출권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 4b) 채권자의 거주지 및 제도부문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 계</b>		
<b>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b> General government <sup>1)</sup> 일반정부 <sup>1)</sup> Central bank <sup>1)</sup> 중앙은행 <sup>1)</sup> Deposit-taking corporations except the central bank <sup>1)</sup> 중앙은행 외 예금수취 기관 <sup>1)</sup> Other financial corporations <sup>1)</sup> 기타 금융 기관 <sup>1)</sup> Nonfinancial corporations <sup>1)</sup> 비금융 기업 <sup>1)</sup> Households and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b>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b> General government 일반정부 Central banks 중앙은행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 Financial corporations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금융기업 Other nonresidents 기타 비거주자		

주: 1) 통합 부채 통계에서 이들 공공부문 단위의 부문 단위 간, 부문 단위 내 저량은 제거됨

#### 4c) 채권자의 거주지 및 표시 통화별 총부채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계</b>		
<b>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b>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 표시		

가  
가

### 5) 미상환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일정

	One year or less (months) 1년 이하(개월)				More than one year to two years (months) 1년 초과~2년(개월)		More than two years to five years 2년 초과~5년	More than five years 5년 초과
	Immediate <sup>1)</sup> 도래 임박 <sup>1)</sup>	More than 0 to 3 0~3개월	More than 3 to 6 3개월 초과~6개월	More than 6 to 9 6개월 초과~9개월	More than 9 to 12 9개월 초과~12개월	More than 12 to 18 12개월 초과~18개월		
<b>By instrument 상품별</b> Special drawing rights(SDRs) 특별인출권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b>By currency of Denomination 표시 통화별</b> Domestic currency Denominated 자국 통화 표시 Principal <sup>2)</sup> 원금 <sup>2)</sup> Interest <sup>3)</sup> 이자 <sup>3)</sup>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국 통화 표시 Principal <sup>2)</sup> 원금 <sup>2)</sup> Interest <sup>3)</sup> 이자 <sup>3)</sup>								
<b>Memorandum items 비망항목</b> Debt securities with embedded options <sup>4)</sup> 옵션부 채무증권 <sup>4)</sup> Guaranteed public sector debt <sup>5)</sup> 보증 공공부문 채무 <sup>5)</sup> Principal <sup>2)</sup> 원금 <sup>2)</sup> Interest <sup>3)</sup> 이자 <sup>3)</sup> Publicly guaranteed private sector debt 공공 보증 민간부문 채무 Principal <sup>2)</sup> 원금 <sup>2)</sup> Interest <sup>3)</sup> 이자 <sup>3)</sup>								

주: 1) 요구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만기가 임박한 부채를 의미하며, 연체금, 연체이자, 일부 예금 등이 포함됨  
 2) 당초 원금을 의미함  
 3) 연체이자, 연체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자로 구성됨  
 4) 특정 시점 혹은 그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되팔 수 있는 옵션이 내재된 증권만 포함함  
 5) 총 부채 통계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채무는 0임. 이는 보증채무가 이미 채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반대로 통계가 공공부문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의 보증채무에는 보증인이 자신의 총부채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공공부문 단위에 보증을 제공한 부채 금액이 반영됨

### 3. 비망향목표(Memorandum tables)

#### 1a)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정부 보증 채무(명목가치)

---

**Total publicly guaranteed debt 정부 보증 채무 총계**

**Total guaranteed public sector debt 공공부문의 보증 채무 총계**

**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

**With payment due in one year or less 만기 1년 이하**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With payment due in more than one year 만기 1년 초과**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

**Total publicly guaranteed private sector debt 민간부문의 정부 보증 채무 총계**

**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

**With payment due in one year or less 만기 1년 이하**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With payment due in more than one year 만기 1년 초과**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

**Total publicly guaranteed debt of nonresidents 비거주자에 대한 정부 보증 채무 총계**

---

## 1b) 정부 보증 채무의 개시 및 결산 시점 저량 조정(명목가치)

---

### Total publicly guaranteed debt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정부 보증 채무 총계(개시 시점)

---

Plus:	Accrued interest
(+): 발생 이자	
Minus:	Debt-service payments <sup>1)</sup>
(-): 채무 상환 <sup>1)</sup>	
Plus:	New guarantees provided during the period
(+):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신규 보증	
Minus:	Guarantees terminated by contractual agreements during the period
(-): 해당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종료된 보증	
Minus:	Explicit debt assumption during the period
(-): 해당 기간 동안의 명시적 채무 인수	
Without acquisition of an effective claim on the original debtor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미획득	
With acquisition of an effective claim on the original debtor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 획득	
Plus/minus:	Other changes
(+)/(-):	그 밖의 변화

---

### Total publicly guaranteed debt at the end of the period 정부 보증 채무 총계(결산 시점)

---

#### Memorandum items

##### 비망항목

Fees paid by debtor to guarantor for the guarantee

채무자가 보증인에 지급한 보증 수수료

Outstanding stock of guaranteed debt explicitly assumed as at the end of the period:

결산 시점 기준 명시적으로 인수된 보증 채무의 미상환 저량

Without acquisition of an effective financial claim on the original debtor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금융 청구권 미획득

With acquisition of an effective financial claim on the original debtor

원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금융 청구권 획득

---

주: 1)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상황

## 2) 연체금 유형 및 채무상품별 연체금

### Total arrears 연체금 총계

#### By type of arrears 연체금 유형별

Principal 원금

Interest 이자

Interest on arrears 연체금에 대한 이자

#### By type of debt instrument 채무상품 유형별

Special drawing rights (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 3) 채권자의 거주지별, 제도부문 유형별 채무증권 - 시장가치 및 명목가치 조정

	Market value 시장가치	Difference with nominal value 명목가치와의 차이	Nominal value 명목가치
<b>Total gross debt securities by residence and type of institutional sector of the creditor 거주지 및 채권자의 제도부문 유형별 총부채 총계</b> <b>Domestic creditors 국내 채권자</b> General government 일반정부 Central bank 중앙은행 Deposit-taking corporations except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 외 예금수취 기관 Other financial corporations 기타 금융기관 Nonfinancial corporations 비금융기업 Households and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 및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b>External creditors 국외 채권자</b> General government 일반정부 Central banks 중앙은행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 Financial corporations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금융기업 Other nonresidents 기타 비거주자			

## 4) 금융 파생상품 포지션

	At market value 시장가치	At notional value 개념적 가치
<b>Net financial derivatives position</b> <b>순 금융 파생상품 포지션</b> Options 옵션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Forward-type contracts 선도 유형 계약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b>Financial derivative assets</b> <b>금융 파생상품 자산</b> Options 옵션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Forward-type contracts 선도 유형 계약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b>Financial derivative liabilities</b> <b>금융 파생상품 부채</b> Options 옵션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Forward-type contracts 선도 유형 계약 By market risk categories <sup>1)</sup> 시장 위험 범주별 <sup>1)</sup>		

주: 1) 시장위험 범주에는 외환, 단일 통화 환율, 주식, 상품, 신용 등이 있음

## 5) 명시적 우발부채 및 미래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순지급채무

---

### Total explicit contingent liabilities

#### 명시적 우발부채 총계

One-off guarantees

일회성 보증

Loan and other debt instrument guarantees<sup>1)</sup>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sup>1)</sup>

Other one-off guarantees<sup>2)</sup>

기타 일회성 보증<sup>2)</sup>

Other explicit contingent liabilities 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명시적 우발채무

Legal claims

법정청구권

Indemnities

배상금

Uncalled share capital

미불입 자본금

---

### Net obligations fo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

#### 미래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순지급채무

Present value of obligations fo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

미래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지급채무의 현재 가치

Minus: Present value of future contributions to social security schemes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미래 납입금의 현재 가치

- 
- 주: 1) PSDS에서는 용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즉 정부 보증채무)의 세부 내역을 1a), 1b)와 같이 기재할 것을 권고함  
 2) 신용보증 및 기타 유사한 우발채무(용자한도, 용자약정), 우발 '신용한도'보증, 우발 신용지원 등이 있음

## 6) 원 만기 및 채무상품 유형별 평균 이자율

	With debt securities at nominal value 채무증권의 명목가치	With debt securities at market value 채무증권의 시장가치
<b>Total gross debt 총부채 총계</b>		
<b>Short-term, by original maturity 단기(원 만기)</b>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b>Long-term, by original Maturity 장기(원 만기)</b>		
Special drawing rights(SDRs) 특별인출권(SDRs)		
Currency and deposits 현금 및 예금		
Debt securities 채무증권		
Loans 융자		
Insurance, pension, and		
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보험·연금·표준화보증상품		
Other accounts payable 기타 미지급 계정		

## 참고문헌

1.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2. IMF,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 and Users」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쉬운 GFS, 2016」, 2016.1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통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 「재정통계개편안」, 2011.1.26.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에 관한 공청회, 2013.7
6. 옥동석·하윤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9.6
7.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공공기관 재정통계작성 설명회」, 2012.3
9. 고영선,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한국개발연구원, 2002
10. 기획재정부, 「정부재정통계편람」, 2001



## | 참여연구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수진** 전문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지영** 공인회계사

2017

#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이해

GFS 및 PSDS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인 | 박형수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

전 화 | (044)414-2114(대)

웹사이트 | [www.kipf.re.kr](http://www.kipf.re.kr)

디자인 기획 인쇄 | 경성문화사 044-868-3537

